

대부금융 백서

2013년/2014년

발/행/의/글



2009년 5월 우리 협회가 설립되고 올해로 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불법사금융과의 차별화를 위해 대부업 명칭 변경 공모전을 실시하는가 하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사채 추방 캠페인과 불법사채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협회의 업무와 대부업권 현황 자료를 정리한 대부금융백서를 2013년 9월 협회 설립 이래 처음으로 발행하여 회원사 여러분과 공유하였습니다.

올해 발행되는 대부금융백서는 2013년과 2014년 동안 협회에서 추진했던 주요 사업 내용과 대부업 관련 현황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대부업이 신뢰받는 건전한 서민금융으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 걸쳐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에 발행하는 대부금융백서가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우리 대부업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협회의 사업에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임승보

대부금융 백서 (2013년/2014년)

발 행 일	2015년 11월 1일
발 행 처	한국대부금융협회
편 지	한국대부금융협회
전 화	02)3487-5800
팩 스	02)3487-5757
홈페이지	www.clfa.or.kr
주 소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13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디자인 02)585-8321
파본은 바뀌드립니다.

(2) 운영 현황	32
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시행	35
(1) 서비스 운영 개요	35
(2) 운영 현황	35
5) 불법사채 척결,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개최	35
6) 개인정보 보호 다짐 결기대회 개최	36
(1) 불법대부광고물 신고포상제	37
(2)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이용 중개업자 신고 포상제	37
3. 홍보·계몽 활동	38
1) 업무개요	38
2) 불법사채 추방 캠페인 실시	38
(1) 불법사채 신고포상제	38
(2) 불법사채 피해예방 문자릴레이	38
(3) 불법사채 대부광고 고발	38
3) “2012 불법사채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39
4) 일수바로쓰기 캠페인 개최	40
5) “2013 대부업 명칭 변경 공모전” 개최	41
6) 대출사기 피해예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42
7) 소비자금융신문 발행	44
8) 서민금융 관련 학술 대회 및 학술 연구 추진	44
9) 기타 홍보·계몽 활동	48
4. 사회공헌 활동	49
1) 업무개요	49
(1) 목적	49
(2) 회원사 사회공헌활동 내용	49
2)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개최	49
(1) 목적	49
(2) 행사 현황	49
3) 금융교육 실시	50
5. 행정협력사무	51
1) 휴대폰 실명확인 서비스 현황	51
(1) 개요	51
(2) 이용현황	51
2) 대부업 등록 교육 실시 현황	52



(1) 개요	52
(2) 등록교육 시간 및 과목	52
(3) 등록교육 현황	53
3) 서울시청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56
(1) 개요	56
(2) 서울시 구역별 등록업체 현황	56
(3) 교육 진행 결과	57
6. 회원사 지원 및 교육 사업	58
1) 회원사 지원 사업	58
(1)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서비스	58
(2) 소비자금융 직거래 대출센터	59
(3) 중소 대부업체 e경영 지원 서비스	62
(4) 우수 회원사 인증·포상 및 임직원 포상	65
(5) 회원사 상조 서비스 시행	66
(6) 회원사 임·직원의 자기계발 교육 지원	67
(7) 각종 도서 출판	68
2) 교육 사업	69
(1) 중개 교육	69
(2) 작무 교육	70
(3) 세무·회계 교육	74
(4) 대부관리사 자격증 도입	75
7. 법·제도 개선 업무	78
1) 업무개요	78
2) 법률 개정에 대한 대응	78
3) 제도 개선 건의	81
4) 차별규제 개선 건의	82
(1) 개요	82
(2) 내용	83

제1장 대부업 시장 현황 86

1. 등록업체 수 추이	86
1) 개요	86
2) 업종별 등록업체 현황	86
3) 규모별 등록업체 현황	87
2. 규모별 거래자 현황	88
3. 대출 잔액 현황	90
4. 차입 현황	92
5. 재무·손익 현황	92
6. 대부중개업 현황	93
1) 개요	93
2) 대부중개건수	94
3) 대부중개금액	95
4) 대부중개업 수입수수료	95

제2장 회원사 현황 98

1. 회원사 수 추이	98
1) 영업형태별 회원사수 추이	98
2) 의무가입 및 자율가입업체 추이	99
3) 대출 잔액 규모별 회원사수 추이	99
4) 유형별 추이(개인/법인)	100
2. 회원사 점포 현황	100
3. 회원사 종업원 현황	101
4. 회원사 현황	102
5.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 영업 현황	110
1)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 현황	110
2) 대출 잔액 현황	111
3) 신규 대출 현황	112
4) 연체율 현황	113
5) 신용등급별 이용자 현황	114

제1장 대부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116

1. 설문조사 개요	116
2. 설문조사 결과	116
1)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	116
(1) 성별 현황	116
(2) 연령대별 현황	117
(3) 직업별 현황	117
2) 대부업 이용 실태	118
(1) 자금용도	118
(2) 1인당 대출 금액	118
(3) 평균 연체 기간	119
(4) 부채상환 능력	119

제2장 불법사금융 이용 현황 조사 120

1. 설문조사 개요	120
2. 설문조사 결과	120
(1) 인지 경로	121
(2) 이용 횟수	121
(3) 이용 시기	121
(4) 이용 사유	122
(5) 자금 용도	122
(6) 대출 금액	123
(7) 평균 지급 이자	123
(8) 피해 후 취한 행동	124
(9) 향후 이용 의향	124

제1장 대부업법의 제정 및 개정 128

1. 대부업법의 제정	128
2. 2005년 개정	129
3. 2007년 개정	130
4. 2009년 개정	130
5. 2010년 개정	131
6. 2011년 개정	132
7. 2012년 개정	133
8. 2014년 개정	134

제2장 대부업법의 관리·감독체계 135

1.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현황	135
2. 향후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	136

제1부

협회 개요 및 활동 내용

협회의 개요
협회의 업무

제1장 협회의 개요

1. 설립 목적

협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대부업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09년 5월 7일 설립되었다. 또한 동법 제18조의3에 의거하여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권고>, <대부업 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대부업자 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대부업 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법령위반사항 자율감시> 등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18조의 7(업무의 위탁)에 의거하여 감독권자인 시·도지사로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2009년 5월부터 교육과정의 기획, 진행, 교육이수증 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조직

1) 총회

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필요 시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총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적 정회원 대부업법에 의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협회에 입회한 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정회원¹⁾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다.

총회에서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보고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과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협회의 해산 및 해산 시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 해임 및 보궐선임에 관한 사항 등이 결의된다.



▲ 2014년 3월 13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5기 정기총회 모습

1) 대부업법에 의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협회에 입회한 자

2)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협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다.

2009년 4월 30일 창립총회에서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사내이사 1인, 감사 1인을 포함하여 총 15인으로 제1대 이사회가 구성되었으며 3년 임기 만료 등으로 2012년 3월 7일 제3기

정기총회에서 제2대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제2대 이사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0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015년 3월 8일까지이다.



▲ 2014년 2월 12일 협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4년도 1차 이사회에서 협회 중점 업무와 역점 신사업 등을 논의·결의하고 있는 모습

〈표 1〉 제1대 이사회 임원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회장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부회장 부회장	손종주	웰컴크레디타인대부(주) 대표
	최 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대표
전무이사	임영환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사 (10인)	김경조	(주)머니라이프대부 대표
	김용필	목동에셋(주)대부 대표
	김정환	(주)위드캐피탈대부 대표
	김충호	(주)바로크레디트대부 대표
	박동석	산와대부(주) 대표
	이문경	(주)하트캐싱대부 대표
	장병인	와이앤금융파트너스대부(주) 대표
	주환곤	(주)에이원대부캐피탈 대표
	지흥진	(주)강남캐피탈대부 대표
	한경일	오닉스대부중개(주) 대표
감사	심상돈	원캐싱대부(주) 대표

〈표 2〉 제2대 이사회 임원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회장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부회장	손종주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대표
전무이사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사 (10인)	정성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감사
	김충호	(주)바로크레디트대부 대표
	주환곤	(주)에이원대부캐피탈 대표
	김정환	(주)위드캐피탈대부 대표
	김경조	(주)머니라이프대부 대표
	지흥진	(주)강남캐피탈대부 대표
	김용필	목동에셋(주)대부 대표
	한경일	오닉스대부중개(주) 대표
	강상훈	(주)스타크레디트대부 대표
감사	양상흥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대표
	심상돈	원캐싱대부(주) 대표

3) 사무국 조직

현재 사무국은 경영관리부와 교육연수부, 기획조사부, 소비자보호센터 그리고 부산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조직도



3. 협회 연혁

2009년	05.07. 05.11. 07.01. 07.16. 07.20. 09.01. 10.08. 10.23. 11.17.	한국대부금융협회 정관 금융위원회 인가(고유명칭: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 대부업 등의 등록을 위한 교육업무 실시 대포폰 사용방지 시스템 도입 및 운용 제1회 대부업의 미래와 민원근절을 위한 간담회 중소 대부금융업자 업무자동화 서비스 오픈 대부금융신문 창간호 발행 신용정보위원회 신설 제2회 대부업의 미래와 민원근절을 위한 간담회 2009년 소비자금융 학술세미나
2010년	02.23. 03.03. 04.23. 06.17. 07.01. 07.20. 10.14. 11.03.	대부금융업 6대 개선안 제출 제1기 정기총회 제1차 서민금융포럼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 개설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시행 제2차 서민금융포럼 대부업 통합CB 구축 설명회 제1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
2011년	03.03. 03.29. 05.23. 08.17. 09.01. 10.05. 11.14.	제2기 정기총회 2011년 서민금융포럼 2011년 대부업 감독기관 워크숍 소비자금융 대출직거래센터 개설 불법사채추방 캠페인 제2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 청소년 금융교육 뮤지컬 개최
2012년	02.23. 03.07. 03.08. 04.25. 04.26. 10.18. 11.29. 12.06.	대부업 광고 자율심의 시행 제3기 정기총회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 TFT 발족 2012년 서민금융포럼 불법사채 척결 다짐대회 제3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준법관리인 제도 도입
2013년	01.09. 03.07. 05.15. 09.01. 10.10. 11.20.	불법사채추방 관련 콘텐츠 공모전 당선작 발표 제4기 정기총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출범 대부업 상속인 조회서비스 개시 제4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 개최 사회공헌활동(사랑의 김장나누기) 실시

2014년	01.27.	대부중개업 개인정보보호 다짐 결기대회 개최
	03.13.	제5기 정기총회
	06.13.	서민금융포럼 개최
	07.14.	본사 이전(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13층)
	10.23.	제5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
	12.05.	사회공헌활동(사랑의 김장나누기) 실시

제2장 협회의 업무

1. 자율규제 업무

1) 업무 개요

대부업 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업법을 비롯한 대부업 관련 법령,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은 물론, 협회 독자적으로 자율규제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회원사가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 자율규제업무 추진실적

(1)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의 제정 및 운영

① 개요

2010년을 기점으로 대출중개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가 급증세를 보이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3~4단계의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진 대부중개업계의 위법적인 고객모집방법(휴대폰 스팸전화 및 스팸문자, 정체불명의 인터넷 대출중개광고 등)과 고객으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는 행위로 인하여 대부이용자의 피해가 속출하였다. 한편, 대부중개업체가 대출 승인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출신청자의 신용정보 내역을(직업, 소득 등) 조작하거나 위조하여 대부업체에게 제공하는 부당거래 행위도 증가하여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의 리스크 관리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부업계에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대부중개시장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업무방식을 체계화함으로써 중개시장을 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2010년 5월 24일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제2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②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회사가 대출모집업무²⁾를 대부중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와 대부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대부중개인이 다른 대부중개인에게 그 대출모집업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이러한 대출모집업무의 위·수탁과 관련된 협회소속 대부회사와 대부중개인에게 적용된다.

2)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대부회사 및 상위 대부중개인이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대부회사로서의 본질적 업무와 대출 실행 이후의 사후관리 업무는 제외한다.

③ 내용

협회소속 대부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대부중개인은 대부업법에 의거 시도지사 등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후, 협회 등록 대부중개사 신청을 하고, 협회에서 실시하는 관계법령 및 사고예방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한다. 교육은 대표자가 받으며 다만, 대부중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영업을 총괄하는 임·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대부회사는 동 규정에 의하여 대부중개인의 교육·감독의무, 상위대부중개인과 위탁관계에 있는 하위대부중개인의 전체 명단 수령 및 협회 제출 의무, 대출중개경로표시서³⁾ 확인·수령의무, 고객정보적법수집확인서 확인·수령의무⁴⁾,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주의 메시지 발송의무가 있다.

상위대부중개인⁵⁾은 하위대부중개인에 대한 교육·감독의무, 위탁관계에 있는 하위대부중개인 명단 수령 및 대부회사 통보의무 및 협회 등록 확인의무, 대출중개경로표시서 확인·수령의무 및 작성의무, 고객정보적법수집확인서 확인·수령의무, 협회 및 대부회사가 실시하는 교육 참여 의무가 있으며, 하위대부중개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위대부중개인은 고객에게 먼저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상위대부중개인 우선 손해 배상제)

하위대부중개인⁶⁾ 및 단독대부중개인⁷⁾은 대출상품 내용 설명의무, 대출모집인임을 알릴 의무, 대출경로표시서 작성의무, 고객정보적법수집확인서 작성의무 및 상위 대부중개인, 대부금융회사에게 제출의무, 협회 및 대부금융회사가 실시하는 교육 참여 의무가 있다.

이러한 규준안의 일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금이 부과된다.

④ 운영실적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의 운영으로 인하여 2012년도 불법대출중개 수수료 편취행위가 전년도에 비하여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대부중개회사의 영업질서가 체계를 갖추었으며 2014년에는 단 1건의 불법대부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등 불법적인 대부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되어 대부중개인을 통하여 긴급생활자금을 대출 받아온 대부업 등의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3) 대부업자 등이 고객정보의 유통경로를 실명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대부중개업자가 다른 대부중개업자나 대부회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부중개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제공일 등을 명기하는 양식
4) 대부업자 등의 고객정보 수집 경로를 명확히 하고자 대부중개업자가 다른 대부중개업자나 대부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부중개업자의 상호, 담당자, 고객정보의 최초 수집 경로 등을 명기하는 양식
5) 대부중개인간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한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6) 대부중개인간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 받은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7) 대부중개인간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지 않고 대부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표 3〉 대부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신청 건수

(단위 : 건)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청건수	390	1,776	1,190	281	10	1

〈표 4〉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의 운영 실적

(단위 : 개, %)

항 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율
협회등록 대부중개업자수	713	617	730	581	586	0.9
교육이수 대부중개업자수	607	654	698	657	631	△ 4.0
제재금 부과 업체수	—	14	4	9	2	△ 77.7

(2) 대부금융 광고심의규정

① 개요

대부시장의 확대에 따라 대부광고 역시 과거에 비해 그 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양적 확대에 따라 대부광고의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로 끊임없이 대두되어 대부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특히 방영회수가 비교적 많고 대중들이 자주 접하는 케이블TV 대출 광고가 서민들에게 고금리의 과잉 대출을 조장하여 다중채무자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심하였으며, 일부 국회의원(심재철 의원 등)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부업 광고의 전면 금지 및 대부광고 시간 대의 제한 등의 구체적인 규제책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협회는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여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추방하고 무분별한 광고 표현을 자제하고자 대부광고를 모니터링 하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특히 2011년 1월부터 논의된 대부광고 규정 도입은 업계 스스로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전·사후 심의를 통하여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러한 취지를 토대로 2012년도 초에 금융당국과 광고전문가, 회원사의 의견을 총 망라하여 대부금융광고 자율심의 규정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협회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동년 3월부터 대부금융광고 자율심의 규정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규정의 내용

동 규정은 크게 대부회사와 대부중개회사의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대상과 절차를 담은 광고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원사가 광고 제작 시에 준수해야 하는 광고 문안의 표현기준과 표기기준 등을 담은 대부금융광고 심의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고심의를 위해 협회 내에 언론인 또는 학계, 연구기관 등 광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부금융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대부업 관련 광고가 대부업법과 대부금융광고심

의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며, 광고물에 대한 시정요구, 게시 및 배포 중지 요구, 위반업체에 대한 경고 및 제재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다. 심의 대상 외의 광고(비회원사의 광고)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도를 하고 있다.



▲ 광고심의위원들이 협회 회의실에서 광고심의를 하고 있는 모습

③ 운영실적

2012년 3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총 124건의 광고를 심의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영상광고가 113건, 지면이 7건, 기타 4건이었다.

〈표 5〉 대부금융광고심의 현황

(단위 : 건)

월별	심의 건수	심의 결과			반려 ⁸⁾
		적격	조건부 적격 ⁹⁾	부적격	
2012년	30	18	11	1	27
2013년	42	32	9	1	6
2014년	52	33	16	3	5
총계	124	83	36	5	38

(3) 소비자금융 준법관리규정

① 개요

협회는 창립 이래 회원사의 준법 영업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회원사의 준법 영업은 대부업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전환하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부 대부업체가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법에 저촉되는 영업이나 추심에 연 관되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대부회사와 그 종사자가 금융회사로서 법률 규정과 정책, 절차를 철저히 준수 하도록 함과 동시에 일반정책과 내규를 준수하도록 회원사의 사전적, 상시적 통제,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2012년 4월 “불법사채 척결,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개최 시 1사당 1인 이상의 준법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준법관리인제도를 실시하기로 다짐했으며, “소비자금융 준법관리규정”을 제정 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8) 법령 및 심의규정 등을 위반하여 광고심의에 회부하지 아니한 광고
9) 조건부 적격의 경우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지적한 사항을 수정한 후 광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규정의 내용

동 규정에 따르면 회원사는 민원처리 및 직원 교육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관리인 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준법관리인의 자격 조건은 <금융기관 또는 대부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영 및 법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전임강사 이상으 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로 관련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기획재정부·금 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선임된 준법관리인은 회사 내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기할 경우와 신상품 개발 등 새로 운 업무를 개발하거나 추진할 경우, 국가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 제출하는 자료나 문서에 대해 법 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적절하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감독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운영실적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동 규정에 따라 2014년 말 기준 총 242개 회원사가 준법관리인을 지 정하였다. 242개 회원사의 준법관리인 명단은 <표 6>에서 다루었다. 협회에서는 준법관리인이 선임 된 이후 각 사의 준법관리인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개최 현황은 <표 7>과 같다.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 및 대부회사의 준법영업 자율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2013년 11월 8일에는 대부회사와 매입채권추심회사 소속 준법관리인 190여명, 협회 임직원 및 금융감독원, 서울시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영업 다짐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다짐 대회에서는 대부업 이용자 의 권익 보호와 대부회사의 준법영업 수준을 타 금융기관 이상으로 제고한다는 내용의 준법영업 다 짐문을 발표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시장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 다. 이와 더불어 협회에서는 ‘대부금융 업무처리 시 단계별 유의·준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 여 전 회원사에 배포하였다.

2014년에는 7월 23일과 12월 30일 두 차례 의 준법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부업법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업계 현안 등에 대해 공 유하였다. 앞으로도 준법관리인을 대상으로 한 “준법관리인 육성교육”을 실시하여 컴플라이 언스 능력 배양을 위해 힘써나갈 예정이다.



▲ 2013년 11월 8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교육장에서 개최한 준법 영업 다짐대회 모습

〈표 6〉회원의 준법관리인 현황

〈2014.12.31. 현재〉

회원사명	담당자	직함	회원사명	담당자	직함
KHO금호에셋대부(주)	조종현	본부장	엔씨캐피탈대부(주)	김소연	과장
NICE에프앤아이(주)	김종훈	상무이사	엘씨대부(주)	유용기	팀장
SB캐피탈대부	이상봉	대표	엘앤에프대부중개(주)	이경일	부장
강남캐피탈대부(주)	신정남	과장	엘케이파트너스대부(유)	김태수	이사
강엔터프라이즈코리아대부(주)	이상표	지배인	엘하비스트대부(주)	우제균	부장
골든캐피탈대부(주)	유재두	과장	엠메이드대부(유)	안철한	차장
구구스영남(주)	서상혁	차장	엠씨아이대부(주)	류태경	대리
구구스(주)	서광원	이사	엠알앤디대부(주)	황재준	대표이사
굿모닝캐피탈대부(주)	김선엽	팀장	엠에이치투자금융대부	최용희	감사
굿이에프대부(주)	윤고욱	이사	엠케이금융대부(주)	임성빈	대표이사
굿타이밍대부(주)	김윤석	상무이사	엠티인터내셔널아이앤시대부(주)	배수환	이사
굿플러스대부(주)	이정모	사내이사	엠펀드대부(유)	이상표	이사
그린씨엔에프대부(주)	안제광	부장	에스자산대부(주)	감중기	부장
나라대부금융(유)	김진환	이사	에스캐피탈대부(주)	김홍일	팀장
나원대부	방찬영	부장	엘로우캐피탈대부(주)	김연규	부장
나이스대부(주)	임상훈	이사	오리온캐피탈대부(주)	박동민	
나이스제1차대부(유)	양성호	지배인	오제이대부중개(주)	원정재	대표이사
나이스제2차대부(유)	김종훈	대표이사	오케이캐피탈대부(주)	이용문	사내이사
나이스제7차대부(유)	김형우	대표이사	오티오대부(주)	이점호	사내이사
남정개발(주)	김영규	차장	온나라에이엠씨대부(주)	남유선	본부장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	김민호	과장	와이앤금융파트너스대부(주)	이재익	부장
노블캐쉬대부	이성형	대표	와이앤자산관리대부	정영준	총괄이사
뉴아리원대부(주)	서재만	이사	와이케이대부(주)	오주영	팀장
다인파트너스대부(주)	차광호	대표이사	와이티자산관리대부(유)	양정재	이사
대부에스앤비(유)	조도현	이사	원캐싱대부(주)	김광호	지부장
대부테크(유)	이세연	대표이사	월드피에프대부(주)	손지영	이사
대산대부(주)	엄재철	팀장	웰릭스캐피탈대부(주)	김승한	영업담당
대송파이낸스대부(유)	박대환	차장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현경진	팀장
대호(주)	김대규	대표이사	위드캐피탈대부(주)	김상도	전무이사
동그라미대부(주)	방진수	팀장	위자드캐시앤캐시대부(주)	송태욱	이사
동서자산관리대부(주)	송형섭	팀장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주)	박희만	본부장
동아캐피탈대부(주)	신승훈	차장	유니버설대부(유)	조지형	부장
동양파이낸셜대부(주)	류훈	팀장	유니애대부(유)	이명원	부장
동원산업(주)	윤수원	과장	유니온에프씨대부(주)	임명규	대리
두리대부중개(주)	이애향	주임	유니크에프씨대부(주)	원영희	상무이사
디에이치대부(유)	조도현	이사	유미캐피탈대부(주)	최수용	이사
디에이치자산관리대부(유)	양정재	이사	유승산업대부(주)	이광욱	부장
디엔피에이엠씨대부(주)	정두홍	팀장	유아이크레디트대부(주)	이열	이사
디케이대부(주)	서정욱	부장	유앤아이대부(유)	이삼호	대표
라운에셋대부(유)	염철호	부장	은산정보통신(주)	이용인	상무이사
레오대부중개	유재훈	부장	이더블유자산관리대부(유)	송형섭	팀장
리드코프(주)	손영화	실장	이든에셋대부(유)	김상수	대리

회원사명	담당자	직함	회원사명	담당자	직함
마리모대부(주)	노경일	과장	이오스대부(주)	양정재	이사
마살플랜대부(주)	곽종운	팀장	이오스자산관리제이차대부(유)	양정재	이사
마이티에셋대부 (주)	임진우		이오스자산관리제일차대부(유)	양정재	이사
마이파이낸셜대부(주)	박성용	상무이사	이지캐피탈대부(주)	기형숙	주임
맥가이버대부중개(개인)	강병수	대표	이코퍼스트대부	김태양	차장
머니라이프대부(주)	유영욱	차장	인더스코대부(주)	박희만	본부장
머스트플로트대부(유)	김충천	대표이사	인터머니대부(주)	이찬배	팀장
메리티지대부(주)	김인호	사원	인포머니대부(주)	양충현	대표
멘토르대부일차(유)	이동훈	팀장	정일자산관리대부(주)	이성호	
멘토르씨앤아이대부(주)	이동훈	팀장	제이파이낸셜라인대부(주)	조형기	대리
몬키대부중개(주)	김현수	부장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주)	김종성	이사
미래2에셋대부(주)	김태윤	이사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주)	나일윤	법무팀
미래크레디트대부(주)	박원근	이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주)	박주철	팀장
미즈사랑대부(주)	박주형	과장	주)씨앤지에셋코리아대부	최기선	이사
밀리언캐쉬대부(주)	이열	이사	(주)드림앤캐시대부중개	김병호	이사
바로크레디트(주)	최수용	이사	(주)패러독스매니지먼트대부중개	정상선	과장
바리움홀딩스대부(주)	최수용	이사	지에이에셋대부(유)	이석영	과장
밸류대부모기지	이상종	대표	지엠아파트너스대부(유)	최기선	이사
베르넷크레디트대부(주)	김경일	지점장	지오에셋대부(주)	김중희	
베스트캐피탈대부(주)	원종훈	대리	찬호론대부(주)	김팔호	대표이사
본음인베스트먼트(유)	이효준	대리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주)	한장수	과장
부영대부파이낸스(주)	민지연	사원	채움캐피탈대부(주)	나진영	대표이사
비너스대부	김동욱		처음앤씨(주)	김상대	팀장
비엔에스컴퍼니대부중개(주)	곽병도	이사	카네이션대부(주)	김재현	팀원
비کم콜렉션대부(주)	이성곤	과장	카이에이엠씨대부(주)	이기홍	대표이사
산와대부(주)	이병오	실장	칸도인베스트대부(주)	하동현	팀장
삼정인베스트먼트대부(주)	이세종	과장	캐시앤캐시대부(주)	강성곤	과장
새한자산대부평가관리(주)	김형일	부장	케이비캐피탈대부(주)	김진경	이사
사인캐피탈대부(주)	송시원	부장	케이씨알자산관리대부	신기춘	대표이사
서강인베스트먼트대부(주)	김형균	대표이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주)	김용호	부사장
서브코리아대부(주)	박해성	팀장	케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윤정희	과장
서울기업금융대부(주)	조연행	이사	케이엠에셋코리아대부(주)	최기선	이사
서울캐싱대부(주)	노경일	과장	케이제이대부(유)	신재식	대표이사
선일파이낸스대부(주)	원종식	감사	케이제이머니대부(주)	박용봉	이사
성원앤대부(주)	박현명	주임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임성준	이사
성인에이엠씨대부	김홍삼	이사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주)	유지연	사원
세경파이낸스대부(주)	한상윤	차장	케이투피에셋대부(주)	박상현	이사
소비자금융대부(주)	서화동	부장	코스모대부중개(주)	정은미	과장
스카이대부자산관리(유)	김보민	대표이사	코어자산관리대부(주)	한승찬	
스타크레디트대부(주)	이상표	이사	코인렉닷컴대부(주)	이태진	CLO
신한대부실자산관리(주)	이재윤	이사	콜렉트대부(주)	임상훈	이사
씨씨콜렉션대부(주)	김윤석	상무이사	큐브자산관리대부(주)	이용선	

회원사명	담당자	직함	회원사명	담당자	직함
씨앤브이투자대부(주)	조미경	부장	탐대부캐피탈(주)	엄재용	이사
씨에프자산관리대부(주)	윤성진	차장	태강대부(주)	우윤호	팀장
씨엔에이대부(주)	심상학	차장	태산대부(주)	한경훈	대리
씨엠코퍼레이션대부(주)	남서진	과장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	박혜성	팀장
씨유대부중개(주)	박노선	차장	템코파이낸스대부(주)	김중섭	
아리엘에셋대부(유)	양문식	부장	트르머니대부(주)	윤동석	주임
아세아캐피탈대부금융(주)	김재승	실장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주)	최한울	팀장
아스리트대부(주)	이열	이열	티에스신용투자대부(주)	김상근	부장
아이씨지코리아 대부파이낸스 유한회사	박수현	사원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주)	이성호	팀장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주)	장석명	이사	티와이머니대부(주)	오상협	팀장
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주)	선상복	부장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주)	장민우	기획실장
아이엠에셋대부(주)	안정숙	과장	파워캐피탈대부(주)	이승일	본부장
아크코리아대부(주)	조남식	관리부	페어컬렉션대부(주)	민대홍	계장
안전대부(주)	박혜성	팀장	프라미스대부(주)	이학훈	부장
애니원캐피탈대부(주)	진정한	팀장	프리머시아이비(유)	이동욱	이사
엑트캐쉬대부(주)	이건웅	부장	피아이에이엔피엘5차대부(유)	윤성철	대표
엔알캐피탈(주)	손영화	실장	피엔에이치글로벌대부	나경민	팀장
어프로치대부	이상표	이사	피제이자산관리대부(주)	김관훈	차장
에비스대부 주식회사(주)	정광연	팀장	하이캐피탈대부(주)	강소정	과장대리
에스아이파이낸스대부(주)	서용석	대리	하트캐싱대부(주)	김윤석	상무이사
에스앤에스파이낸셜대부(주)	이흥수	이사	한국리치캐피탈대부(주)	김소연	사원
에스앤케이파머스대부(주)	박혜성	팀장	한국이지론(주)	서정민	팀장
에스플러스자산관리대부(유)	조부현	부장	한라마이스터(유)평택냉장	오승	팀장
에이모션(주)	김인섭	팀장	한미에프엔아이대부(주)	이세종	과장
에이비씨론대부(주)	나미나		한미파트너스대부(유)	윤일노	대표이사
에이스비즈니스앤대부(주)	권창기	이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이현석	부장
에이스파이낸셜대부(주)	박재규	팀장	한성파트너스대부(유)	한지원	이사
에이앤디대부(주)	조태율		해방새대부(주)	김해	대표이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김용희	팀장	해진에셋대부유한회사	최동열	부장
에이원대부캐피탈(주)	신태환	본부장	해피크레디라인대부(주)	윤승철	대리
에이원자산관리대부유한회사	김상구	대리	헬로우크레디트대부(주)	백영민	과장
에이치유크레디트대부(주)	최동준	본부장	현대베리타스투자3호대부(주)	이경협	부장
에이투자자산대부관리(유)	안대현	팀장	홍앤드홍대부(주)	이점섭	대표
에이피엘파이낸셜대부(주)	신성식	팀장	휴렛팩커드파이낸셜서비스대부(유)	심석섭	대표이사
에치제이인베스트먼트에이엠씨대부(주)	김용민	실장	휴앤케이파트너스대부(주)	문희준	부장
에프이푸른하늘대부(주)	임명규	대표이사	희망1자산대부관리(유)	황성연	팀장
엔씨엘시스템대부중개(주)	채종만	부장	희망만드는사람들대부(주)	서경준	부장

〈표 7〉준법관리인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현황

일자	참석현황	주요내용
2012.08.30	38개사	○ 대부업 관계법령 강의 ○ 준법관리인 소양 교육
2012.10.10	13개사	○ 대부업법 상 해석이 모호한 사안 발굴/논의
2012.12.06	16개사	○ 대부업법 개정사항 안내 ○ 민원 사례 관련 유의사항 전달
2013.05.27	33개사	○ 대부업법 개정사항 안내 ○ 국민행복기금 협약 주요사항 안내 ○ 민원현황, 100ppm 달성을 발표
2013.11.08	108개사	○ 준법영업 다짐문 발표
2014.07.23	71개사	○ 대부업권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 ○ 대부업법 개정사항 안내 ○ 민원현황, 100ppm 달성을 발표
2014.12.30	95개사	○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주요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검사 시 주의사항 안내

2. 소비자보호 업무

1) 소비자보호센터

협회는 창립 이래 지금까지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후구제를 실시하고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발생하고 있는 채무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형사 처벌이나 민사재판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비자보호센터가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효율적인 중재를 통하여 보다 확실하게 민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와 불만 등과 관련한 민원내용이 각 대부금융사의 경영개선 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민원 100PPM제도¹⁰⁾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불만사항의 근원적 해소를 목적으로 대부업권의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 소비자민원 100PPM(Part Per Million) 제도는 소비자민원 발생건수를 고객 1만명당 1건 이내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민원 현황

(1) 개요

소비자보호센터는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또는 불만에 대해 전화상담, 내방상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한 전체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1,777건에서 2010년 2,84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2,2291건, 2012년에는 1,545건, 2013년에는 3,805건, 2014년에는 5,058건이 접수되었다.

2013년부터는 민원상담 유형에 단순상담(전화상담)란을 신설하여, 표면적으로 접수민원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화 단순상담을 제외한 실제 접수된 민원은 2013년 1,007건, 2014년에는 787건으로 2010년 이후 민원이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업 등의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도모한 점과 준법관리인 정착으로 회원사의 준법영업이 자리를 잡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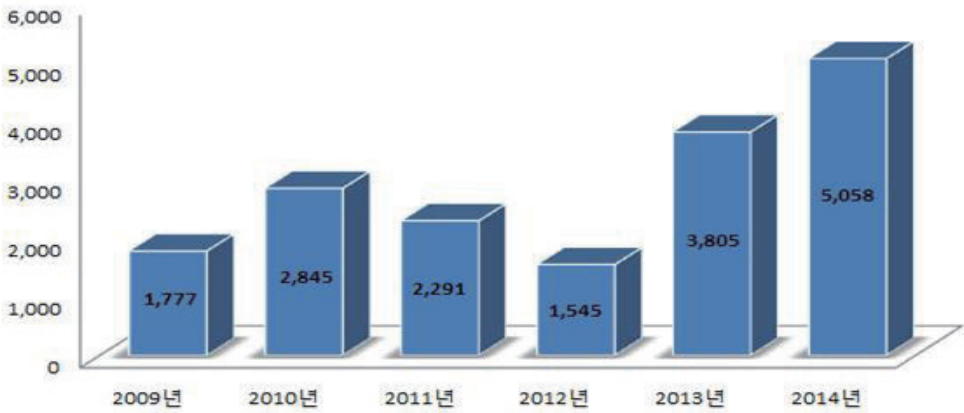
또한 협회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1월 15일 협회 내부 지침인 “민원사무 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 지침에는 민원처리 기준, 절차, 예상 처리소요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명문화하였다.

〈표 8〉 연도별 총 민원 신청 현황

(단위 : 건, %)

민원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9년	164	153	133	106	69	104	180	135	223	209	167	134	1,777
2010년	148	163	156	209	146	176	354	308	255	290	284	356	2,845
2011년	268	194	239	260	191	193	172	128	157	184	124	181	2,291
2012년	124	137	106	116	84	84	170	138	119	192	148	127	1,545
2013년	126	110	132	179	203	432	537	480	417	437	421	331	3,805
2014년	310	396	413	550	442	452	461	413	336	464	454	367	5,058
전년대비	146	260	212	207	117	4	△13	△13	△19	7	7	10	32

〈그림 2〉 연도별 총 민원 신청 건수 추이



(2) 민원유형별 현황

협회에 접수된 민원 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중개업체와 고객 불만, 대출사기, 이자율, 채권추심, 타업권, 단순상담,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초기인 2009년부터 2011년에는 중개수수료 편취와 관련된 민원이 많았으나,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의 정착으로 중개수수료 편취와 관련된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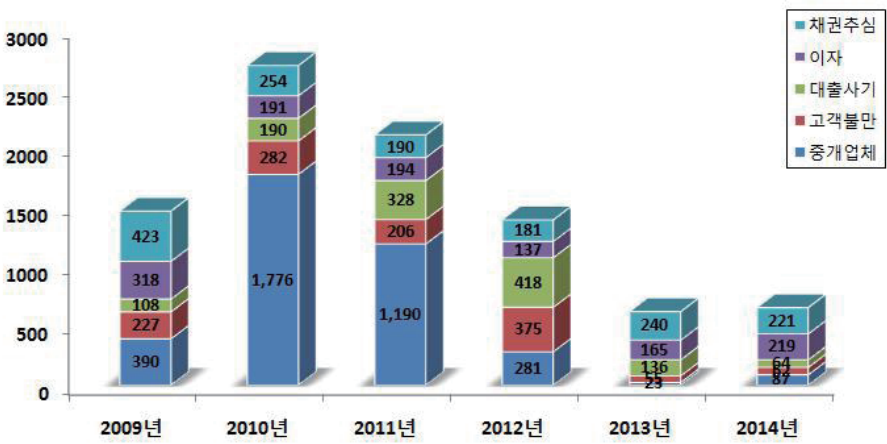
또한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고객 불만 민원은 2012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협회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노력과 대부회사의 자발적인 민원 감축 노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유형별 민원 신청 현황

(단위 : 건, %)

구분	중개업체 ¹⁾	고객불만	대출사기	이자율	채권추심	단순상담 ²⁾	타업권 ³⁾	기타	합계
2009년	390	227	108	318	423	—	—	311 ⁴⁾	1,777
2010년	1,776	282	190	191	254	—	—	152	2,845
2011년	1,190	206	328	194	190	—	—	183	2,291
2012년	281	375	418	137	181	—	—	153	1,545
2013년	23	55	136	165	240	2,798	12	376	3,805
2014년	87	62	64	219	221	4,271	8	126	5,058
전년대비	278	12	△52	32	△7	52	△33	△66	32

〈그림 3〉 유형별 민원 신청 건수 추이



1) 중개업체 민원은 중개수수료 편취, 요구 및 중개업체의 허위·과장 영업행위 관련 내용이다.
2) 단순상담은 2013년 신설
3) 타업권은 2013년 신설
4) 2009년 기타에는 서울시청에서 협회로 이첩한 141건이 포함되어 있다.

(3) 주요 민원현황

① 중개업체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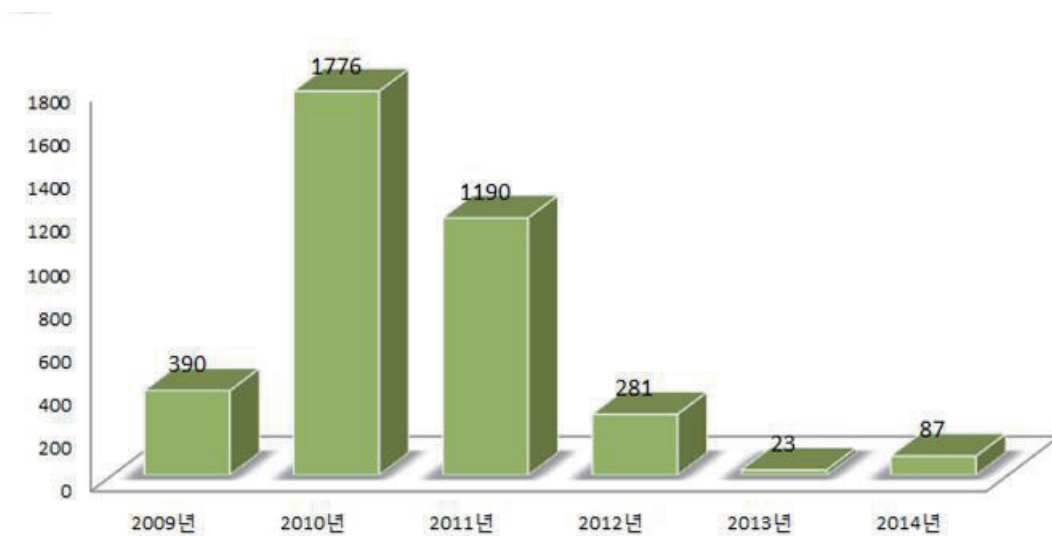
중개업체 관련 민원은 2009년 390건, 2010년 1,776건, 2011년 1,190건, 2012년 281건, 2013년 23건, 2014년 87건이 접수되었다. 2012년 이전까지는 중개수수료 편취·요구 민원이 주요 민원내용이었으며, 2013년 이후 중개업체의 허위·과장 영업행위 관련 민원이 발생되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중개수수료 편취·요구 민원은 대부중개(대출모집)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가 시행된 이후, 전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시행 초기 급격한 민원신청이 있었으나 2010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010년 대비 1,753건(98.7%)이나 감소하였다. 이는 2012년 이후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이 정착되면서 중개시장에서의 준법 영업이 정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개수수료 편취 관련 민원이 감소한 것과는 반대로, 2013년 이후 중개업체의 허위·과장 영업행위¹⁵⁾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여, 대부업 등의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였다.

이에 협회는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4년 2월 12일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중개업체의 허위·과장 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업무 위탁계약 해지사유로 명문화 하였다.

〈그림 4〉 중개업체 민원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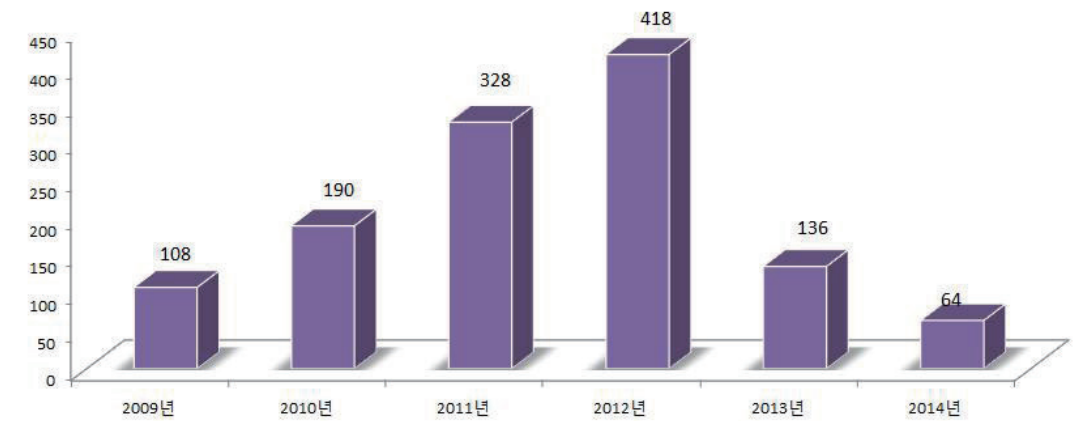
② 대출사기 민원

대출사기¹⁶⁾ 관련 민원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09년 108건에 불과하던 대출사기는 2010년 190건, 2011년 328건, 2012년 418건으로 증가하는 등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70%대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15) 저금리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끼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잠적하는 행위

이에 협회는 2013년 4월, 대출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출사기 피해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17개 시·도청에 배포하였다. 이후 협회에 접수된 대출사기 민원은 2013년 136건, 2014년 64건으로 2012년 대비 각각 67.4%, 84.6%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5〉 대출사기 민원 건수 추이



③ 채권추심 민원

채권추심 관련 민원현황을 보면 2009년 7월 24일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9년 42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2010년에는 254건으로 전년 대비 169건(39.9%)이 감소하였고, 2011년 190건, 2012년 181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3년 이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3년은 240건, 2014년은 221건으로 2009년 대비 각각 43.2%(183건), 47.7%(202건) 감소하였다.

이는 협회가 법령 제정 시부터 회원사에 대한 자율지도강화 등을 통하여 회원사의 추심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고 특히 준법관리인 제도와 100PPM 운동 도입 등을 통하여 회원사의 불법추심행위 근절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온 결과 건전한 추심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사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 동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16)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광고 등을 하여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를 유인한 후 각종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정금액을 선수수료로 갈취하고 대출은 해주지 않은 채 잠적해버리는 사기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가 거의 대부분 차명통장과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검거를 하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 받기 매우 어렵다.

〈그림 6〉채권추심 관련 민원 건수 추이



④ 이자율 민원

이자율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18건, 2010년에는 191건으로 전년에 비하여 127건 (39.9%)이 줄어드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194건, 2012년 13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165건, 2014년에는 219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4년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이 인하되면서 소급적용 여부 등을 문의하는 이자율 관련 단순 문의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자율과 관련된 민원의 경우에는 회원사 보다는 비회원사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편인데 이는 자율규제가 비회원사의 경우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많은 대부업체가 협회 회원사로 가입함으로써 자율규제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회는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통하여 이자율 민원 특히 이자율 상한 규정을 위반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림 7〉이자율 민원 건수 추이



(4) 초과이자 반환 실적 및 조정 현황

① 채무조정

대부업법 개정으로 계약시점 및 법령 시행일에 따라 적용이율이 달라짐으로써 이에 따른 이자율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총 채무액과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과 법정 이율 내 금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금액을 재조정하고, 채권자가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반환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에 실시한 채무조정건수는 총 171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103건, 2011년에는 66건, 2012년에는 30건, 2013년에는 43건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38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2014년도에 실시한 채무조정 총 건수는 38건으로 이 중 32건, 총 19,739만원의 채무를 법정 이율 내 금액으로 재조정하고, 나머지 6건의 민원은 채권자가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11,05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하였다.

〈표 10〉불법이자 관련 민원처리 결과

(단위 : 건, 만원, %)

구분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재조정				초과이자 채무자앞 반환		합계	
	건수	조정前 금액	조정後 금액	조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년	111	86,936	28,436	58,500	60	14,111	171	72,611
2010년	81	32,517	15,629	16,888	22	3,357	103	20,245
2011년	46	48,360	34,114	14,246	20	3,603	66	17,849
2012년	20	9,220	1,594	7,626	10	2,615	30	10,241
2013년	33	27,874	8,719	19,713	10	4,012	43	23,725
2014년	32	19,739	9,959	9,780	6	1,279	38	11,059
전년대비	△ 3	△ 29	14	△ 50	△ 40	△ 68	△ 11	△ 53

②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반환

대부중개회사는 대부업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해 중개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불법적으로 편취하는 대부중개회사들이 있어 협회에서는 이러한 중개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을 접수 받아 대부중개업무 관리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2009년에는 296건의 불법 대부중개수수료가 반환조치 되었고, 2010년에는 전년대비 791건 (267.2%)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814건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하였다. 2012년에는 127건으로 전년대비 84.3%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6건, 2014년에는 1건으로 불법 대부중개수수

료 관련 소비자피해는 자취를 감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협회가 운영 중인 자율규제인 대부중개업무 관리 규정이 정착되면서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 업무 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진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어, 건전한 대부중개업 환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중개수수료 반환 현황

(단위 : 건, 만원)

구분	반환건수	반환금액
2009년	296	21,952
2010년	1,087	91,147
2011년	814	86,289
2012년	127	21,223
2013년	6	1,385
2014년	1	800
전년대비	△ 83.3	△ 42.2

3) 사고·사망자 채무 유예·감면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운영 개요

협회는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 또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채무 변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연체가 계속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대출 상환금의 납부를 유예해주는 사고자 채무유예제도와 대부금융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사망한 경우 대출 상환금을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하여 주는 사망자 채무감면제도를 2012년 9월 18일부터 운영해 왔다.

(2) 운영 현황

도입 초기 26개 회원사가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해오다가 현재는 54개사로 늘어났으며, 2014년 12월말 기준 총 23개사가 973명에게 24억 1,593만원의 채무를 감면해주었다. 향후 중소 대부금융사의 협약 가입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해 업계 공동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본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감면금액만큼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등 회계 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더 많은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협약 규정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사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협약에 따르지 않는 회원사에 대한 지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2〉 사고·사망자 채무 유예·감면제도 참여 회원사 현황

〈2014.12.31. 현재〉

번호	회원사명	번호	회원사명
1	(주)골든캐피탈대부	28	(주)엑트캐쉬대부
2	(주)굿모닝캐피탈대부	29	(주)어프로치대부
3	(주)굿타이밍대부	30	(주)에이원대부캐피탈
4	그린에셋대부(유)	31	(주)엘하비스트대부
5	(유)대부에스앤비	32	에스캐피탈대부(주)
6	대산대부(주)	33	(주)와이엘대부
7	(주)동그라미대부	34	원캐싱대부
8	동아캐피탈대부(주)	35	웰릭스캐피탈대부
9	디에이치대부(유)	36	웰컴크레디라인대부
10	(주)리드코프	37	위드캐피탈대부
11	(주)마리모대부	38	유미캐피탈대부
12	(주)마샬플랜대부	39	유승산업대부
13	(주)머니라이프대부	40	유아이크레디트대부
14	(주)미래크레디트대부	41	유원캐피탈대부
15	미즈사랑대부	42	인터머니대부
16	밀리언캐쉬대부	43	제이파이낸셜라인대부
17	바로크레디트대부	44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
18	블루버드대부	45	조이크레디트대부
19	산와대부	46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20	샤인캐피탈대부	47	케이투피에셋대부
21	서울기업금융대부	48	콜렉트대부
22	스타크레디트대부	49	태강대부
23	써니캐피탈대부	50	페어컬렉션대부
24	아스리트	51	하이캐피탈대부
25	아이앤비자산관리대부	52	하트캐싱대부
26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53	해진에셋대부
27	애니원캐피탈대부	54	희망1자산대부관리

〈표 13〉 사고·사망자 채무 유예·감면제도 운영 현황

(단위 : 개, 건, 원, %)

구분	참여자	감면건수	감면금액	감면율
사고자 채무감면	9	82	65,965,354	36.49
사망자 채무감면	22	891	2,349,964,248	86.20
합계	23	973	2,415,929,602	83.11

※ 참여사 합계는 중복업체를 1개사로 계산하여 합산한 수치임

〈표 14〉 각 사별 사고자 채무 유예 · 감면제도 운영 현황

참여사	감면건수	감면금액	감면율
리드코프	53	5,914,945	14.79
(주)머니라이프대부	1	211,561	6.59
바로크레딧대부	4	1,025,635	6.39
아프로파이낸셜대부	1	180,890	8.73
웰릭스캐피탈대부	2	6,977,205	58.25
웰컴크레디라인대부	3	2,777,369	32.23
페어컬렉션대부	6	31,485,294	63.24
하이캐피탈대부	4	5,114,774	49.59
하트캐싱대부	8	12,277,681	31.69
합계	82	69,965,354	36.49

〈표 15〉 각 사별 사망자 채무감면제도 운영 현황

참여사	감면건수	감면금액	감면율
굿모닝캐피탈대부	1	613,740	100.00
굿타이밍대부	8	26,606,966	96.38
리드코프	54	189,374,044	85.85
머니라이프대부	2	1,695,581	14.50
미즈사랑대부	17	22,277,429	54.31
바로크레딧대부	9	27,885,104	65.82
산와대부	6	12,622,483	36.10
아프로파이낸셜대부	78	183,326,162	54.08
애니원캐피탈대부	3	9,707,410	33.93
어프로치대부	1	5,621,782	99.62
에이원대부캐피탈	6	28,427,379	78.87
엘하비스트대부	38	159,004,687	100.00
에스캐피탈대부	9	55,428,535	86.28
원캐싱대부	5	8,412,086	57.62
웰릭스캐피탈대부	1	3,016,932	50.14
웰컴크레디라인대부	15	30,567,057	47.88
위드캐피탈대부	7	32,562,939	91.05
조이크레딧대부금융	6	9,051,822	40.83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611	1,511,539,993	98.79
콜렉트대부	1	1,002,128	50.05
하이캐피탈대부	4	8,314,944	50.35
하트캐싱대부	9	22,905,045	95.82
합계	891	2,349,964,248	86.20

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시행

(1) 서비스 운영 개요

피상속인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이 이를 조회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데 따른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은 1998년 7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제도를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왔다. 이 제도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과 실적을 거두었지만 대부업체 채무는 파악할 수 없어 대부업권의 채무 존재를 모른 채 상속 여부를 결정하여 나중에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후하여 연체가 장기화한 경우 채무 상환액이 누적돼 상속인의 피해와 불만이 있었다. 이에 대부업권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서비스 참여를 고려하였으며 2013년 9월부터 참여하게 되었다.

(2) 운영 현황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대부업권 대출 정보는 등록 대부업체의 전체 대출 정보가 아닌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참여 이래 2014년 말까지 제공한 실적은 〈표 16〉과 같다.

〈표 16〉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운영 현황

신규조회	변경조회	조회취소	계
80,219 건	510 건	120 건	80,849 건

5) 불법사채 척결,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개최

2012년 4월 11일 총선 이후 정부는 불법사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불법사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금융당국과 검찰 등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쳤다. 이에 협회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2012년 4월 26일 대부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130명과 협회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사채 척결, 소비자 보호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다짐대회에서는 불법사채 척결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6개 실천사항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는 250여개 회원사가 지역 내의 불법사채 대출광고를 일괄 수거·고발하고 대부업 등의 이용자에게 전화상담, 휴대폰 문자, e메일 등을 통해 “불법사채 사용주의” 안내에 나서기로 했으며, 불법사채 신고 포상금 제도 역시 확대 시행하고 회원사의 소비자민원 발생률을 1만명당 1건으로 낮추기 위한 “소비자민원 100ppm 운동”을 실시하기로 다짐했다.

아울러 각 회원사마다 준법관리인 1인을 설치해 각종 민원 및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채무자 상담센터도 개설해 질병이나 사고, 일시적으로 경제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경우 채무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다짐했다.

다짐대회에서 다짐한 바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법사채 대출 광고물을 수거하고 고객에게 불법사채 사용을 금하는 안내 문구를 발송하도록 안내하여 2012년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18개 회원사가 460건의 불법사채 대출 광고물을 수거하여 협회로 송부하였으며 239,301건의 불법사채 사용금지 안내 문구를 고객에게 발송하였다.



▲ “불법사채척결, 소비자 보호 다짐대회”에서 협회 및 회원사 임직원이 다짐을 하는 모습

6) 개인정보 보호 다짐 결기대회 개최

2014년 1월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가 1억 580만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대부업권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증가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협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2014년 1월 27일 서울시청과 협회, 대부회사 및 대부중개회사 소속 임직원 173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다짐 결기대회”를 개최하였다.



▲ 2014년 1월 27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보호 다짐 결기대회” 모습

이 결기대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피해방지를 위한 다짐문을 발표했으며,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불법대부광고를 근절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이로 인한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일반시민, 회원사 임직원, 협회로 구성된 ‘불법사채 자율감시단’의 출범을 선포하였다. ‘불법사채 자율감시단’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불법대부광고물 신고포상제”와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이용 중개업자 신고포상제” 활동을 전개하였다.

(1) 불법대부광고물 신고포상제

불법사채 자율감시단은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등의 대부광고물을 수거하고, 수거된 전단지가 불법사채 광고인 경우,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신속이용정지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으로 이첩 및 경찰청에 통보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하였다.

또한 협회는 일반시민의 경우 수거인력이 65세 이상이면 포상금으로 장당 500원, 1인당 최대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거된 불법 대부광고물은 총 38,310장이며,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 3,385건 중, 1,131건에 대하여 신속 이용정지 조치하였다.

그 결과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 등 무분별한 광고물 배포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표 17〉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수거 실적

(단위 : 장)

대상	수거건수
일반시민	32,668
협회	1,708
회원사	475
기타	3,459
합계	38,310

〈표 18〉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수거 포상금 지급

(단위 : 명, 원)

지급대상	지급액
73	2,305,000

(2)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이용 중개업자 신고 포상제

“개인정보 불법유통 중개업자 신고 포상금제”는 대부업권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시장 자체를 근절시키고, 개인정보 불법 이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고객과 최접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부중개회사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이용을 신고 대상으로 하였다.

협회등록 중개교육 이수 대부중개인 3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이용 중개업자 신고 포상제”관련 홍보문자를 발송하였으며, 포스터를 제작하여 17개 광역시·도청 및 중개회사를 대상으로 4,000부를 배포하였다.

포상금제 시행 기간 동안 총 26건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이용 행위에 대하여 제보가 되었으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

3. 홍보 · 계몽 활동

1) 업무 개요

협회는 정관 제4조 제9항에 따라 대부업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긴급생활 자금 공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부회사의 역할을 알리기 위한 대내외 홍보활동과 정보 공개, 계몽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대부업 등의 이용자가 건전한 대부업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채업자와의 차이를 금융소비자에게 홍보할 뿐 아니라 불법사채업자 근절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2) 불법사채 추방 캠페인 실시

금융소비자에게 불법 고금리를 수취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자행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채)를 적절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의 후원 하에 “불법사채 단속 전담반”을 협회 내에 설치하고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불법사채 신고포상제”와 “불법사채 피해예방 문자릴레이”, “불법사채 대부광고 고발” 활동을 전개하였다.

(1) 불법사채 신고포상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 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10만원에서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자가 직접 신고를 하거나 신고양식을 다운 받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도록 했다. 접수를 받은 결과 2012년 12월 말 기준 총 42명이 신고를 했으며, 이 중 5명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2) 불법사채 피해예방 문자릴레이

협회 홈페이지 내에 설치된 휴대폰 문자 발송기를 이용하여 참가자가 가까운 지인에게 불법사채 피해 예방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사로 총 199명이 참가하여 참가자의 지인에게 1,893통의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들 참가자 전원에게는 본인신용정보조회권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중 총 40명을 추첨하여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였다.

(3) 불법사채 대부광고 고발

불법적인 허위·과장 대부광고의 근절을 통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서민의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협회에서는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자의 대부광고와 무가지신문 광고, 전단지 광고, 명함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전단지 광고물과 명함 광고물은 수거하여 수사당국 등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인터넷에 게재된 불법대부광고행위는 2014년 12월말 기준, 총 1,237건의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불법을 조장하는 대부 등의 광고 131건에 대해서는 금융질서 교란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관계부처로 통보하였다.

협회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그동안 영업상의 이유로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광고를 유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기 전 대부업자의 등록 여부와 광고의 대부업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광고를 게재하게 됨으로써 불법사채업자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틀이 다져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대부업자들의 불법적 허위·과장 대부광고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매체를 통한 불법적 허위·과장 대부광고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협회 직원이 명함형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표 19〉 불법사채 대부광고 단속활동 추진결과

(단위 : 건)

광고 유형	모니터링 광고 수	불법사채 광고 수	경찰서 및 지자체 고발건수
인터넷광고	1,237	300	131
생활정보지	3,539	393	44
명함광고	3,843	3,537	2,039
합계	8,619	4,230	2,214

3) “2012 불법사채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협회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2 불법사채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을 이룬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불법사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하였다.

작품은 총 116개 작품(웹툰 35, UCC 65, 플래시 14)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입선 15개 등 총 31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수상작품은 금융소비자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 SNS 채널에 게시하여 금융 범죄의 취약 층인 젊은 세대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또한 수상작품을 CD로 제작하여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는데 대부업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 2013년 신년회 개최 시 콘텐츠 공모전의 시상식도 함께 실시했다.

4) 일수바로쓰기 캠페인 개최

시장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수대출의 경우 금리 계산법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법정금리 한도 내 적정 상환금(일수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수 대출 조건표를 작성해 전국 276개 재래시장에 일수 대출 조건표 2,000부를 배포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이러한 고금리 일수대출의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재기관인 협회를 안내하고,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여 불법행위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협회 직원이 재래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일수대출 조건표를 배포하고 있는 모습

〈표 20〉 일수바로쓰기 캠페인 실적

(단위 : 건, 부)

지역	배포시장	배포수량
서울	25	1,000
경기	121	10,000
부산	130	9,000
합계	276	20,000

〈그림 8〉 일수대출 조건표

일수대출 조건표									
100만원을 대출하여 65일동안 상환할 경우, 하루 15,933원(법정이자율 39%)을 넘으면 불법입니다.									
기간 대출금	10일	20일	30일	40일	45일	50일	55일	60일	65일
100만원	100,588	50,562	33,888	25,551	22,773	20,549	18,731	17,215	15,933
200만원	201,177	101,125	67,776	51,102	45,545	41,099	37,462	34,431	31,866
300만원	301,765	151,688	101,664	76,654	68,318	61,649	56,193	51,646	47,799

※ 해당 예시와 다른 상환 내용이 있을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 Tel. 02) 3487-5800로 문의 하시면 이자 계산을 도와 드립니다.

【일수 사용시 주의사항】

1.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세요.
2. 일수 계약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를 꼭 수령하세요.
3. 현금 거래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꼭 수령하세요.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5) “2013 대부업 명칭 변경 공모전” 개최

협회는 대부업과 불법사채의 선을 긋고 ‘대부업’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2013년 6월 17일부터 30일간 “대부업 명칭 변경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을 이룬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와의 실시간 소통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대부업을 대신할 새로운 명칭과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협회는 공모전 내용을 트위터 팔로워 약 22만명, 페이스북 유저 6만 5천명에게 홍보하였고, 공모전 결과 총 934개의 새로운 명칭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명칭은 예비심사 및 1차 협회 임직원 심사, 2차 일반인 심사를 거쳐 이중 으뜸상 2개, 아차상 2개, 노력상 8개 등 총 12개 명칭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협회는 대부업 명칭 변경 공모전을 통하여 대부업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대부업이 서민을 위한 소비자금융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일조하였다.

〈표 21〉 대부업 명칭 변경 공모전 수상 내역

수상내역	명 칭	이 유
으뜸상	생활금융	생활 속에서 누리는 소액 대출 금융을 의미
	늘찬금융	능란하고 재빠른 대응으로 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대출 금융
아차상	소비자금융	소비자와 함께하는 금융
	서민생활금융	서민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주는 대부업
노력상	희망금융	서민들이 더 이상 울지 않고 희망적인 상황으로 변했으면 하는 마음
	소비자여신금융	소비자에게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 가장 평범하고 타업권에도 비슷한 이름이 있지만, 대부업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
	서민금융	서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
	행복금융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국민행복시대를 새롭게 열고 더 희망찬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갈 대부업의 새로운 이름
	이웃금융	벽이 높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두드림 (DoDream)금융	한글로는 두드린다는 뜻이고 영어로는 꿈을 실행한다는 뜻으로 두드리면 꿈이 실현되는 금융을 의미
	민생금융	서민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지는 금융
	국민생활금융	많은 국민들이 대부업을 통해서 돈을 대출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민들의 일상에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일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현재 대부업의 모습을 친근하게 담아서 명칭을 지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세요!

6) 대출사기 피해예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과 저신용 서민층의 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층과 자산가에 대한 자금 공급은 확대하는 반면 저소득층이나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은 오히려 축소하는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특히 대부업법상 상한금리의 지속적 인하로 인하여 저소득층과 저신용 서민층의 자금공급을 담당하던 대부회사가 대출심사를 엄격히 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만성적인 자금 공급 부족의 여파가 발생하였고, 결국 긴급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한 대출사기가 급증하게 되었다.

협회에 접수된 대출사기 민원 현황만 확인하더라도 2009년 108건에 불과하던 대출사기는 2010년 190건, 2011년 328건, 2012년 418건으로 증가하는 등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70%대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협회는 금융소비자의 대출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2013년 4월, “대출사기 피해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였고 전국 17개 시·도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국 3,485개 주민센터에 배포하였다. 포스터는 대출용도 관련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그림 9〉 대출사기 피해예방 포스터



발급 데스크 등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하였으며,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출사기 피해유형 및 신고기관을 집중 홍보하였다.

이후 협회에 접수된 대출사기 민원은 2013년 136건, 2014년 64건으로 2012년 대비 각각 67.4%, 84.6%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22〉대출사기 피해예방 포스터 배포 실적

(단위 : 부)

지 역	읍·면·동	배포수량	지 역	읍·면·동	배포수량
서 울	424	430	강 원	193	200
부 산	214	220	충 북	153	160
대 구	139	140	충 남	205	210
인 천	145	150	전 북	241	250
광 주	94	100	전 남	296	310
대 전	77	80	경 북	331	340
울 산	56	60	경 남	318	320
세 종	11	20	제 주	43	60
경 기	545	550	합 계	3,485	3,600

7) 소비자금융신문 발행

대부금융신문이란 제호로 2009년 9월 1일 창간한 이래 대부업계의 정보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2년 1월부터 불법사채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대부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소비자금융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했다. 매월 2회 1만부씩 타블로이드 4도로 20면을 발행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말 기준 128호를 발행했다. 대부업 관련 법령정보와 회원사 소식, 영업통계, 민원정보, 오피니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포기관으로는 회원사와 국회, 금융당국, 시·도 공무원, 언론사, 금융기관, 학계 등이다. 향후 금융당국 및 언론사 데스크, 학계 인사 등 필진을 폭 넓게 확대하여 대부업권에 대한 대국민 이해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보의 사각지대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늘려갈 예정인데 담보대출이나 대부중개, 채권관리 분야에 대한 취재를 한 층 더 강화하고 개인사업자 등 소형사에 대한 인물, 정보기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 서민금융 관련 학술 대회 및 학술 연구 추진

협회는 창립 이래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학계 등으로부터 외면 받아 왔던 주제인 서민금융과 관련한 중요 이슈를 안건으로 각종 간담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2010년부터 매년 1회 개최되고 있는 소비자금융컨퍼런스의 경우 대부업계의 당면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함께 회원사간의 유대를 결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언론이나 학계와의 소통의 창구 역할

도 감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회에서 개최한 학술 대회 실적은 〈표 23〉과 같다.

더불어 협회에서는 2013년 말부터 대부업의 사회적 순기능과 서민금융 역할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와 공동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의 박덕배 박사와 소비자금융연구소의 심지홍 소장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다. 박덕배 박사가 수행해온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과 순기능 분석”연구는 2014년도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대부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함으로써 대부업의 긍정적인 측면이 설득력 있게 부각되었다. 심지홍 소장이 수행한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사금융 시장”은 2015년 신년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서 심지홍 소장은 정부의 오랜 불법사금융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피해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무엇보다 서민금융 시장을 적극 육성하여 서민금융 시장의 초과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했다.

〈표 23〉학술대회 개최 현황

행사명	일정	장소	주요내용
소비자금융 학술대회	2009.11.17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서민금융의 현안 - 감독, 규제, 대안금융의 문제점 주제1 서민금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부금융업체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방안 발제자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토론자 : 금융위원회 배준수 과장 주제2 서민시장의 규제방향 발제자 : KB부동산신탁 최동준 감사 토론자 :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교수 주제3 우리나라 대안금융 현황과 과제 발제자 : 상명대 김규한 교수 토론자 : 신나는조합 정명기 이사장
2010 제1차 서민금융포럼	2010.4.23	서울프라자 호텔	대부금융업 CB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주제1 대부금융업 CB의 현황 발제자 : 한국신용정보 오규근 실장 토론자 : 상명대 김규한 교수 주제2 대부금융업 CB의 나아갈 방향 발제자 : 원캐싱 심상돈 대표 토론자 : 서울디지털대 신언명 교수

2010 제2차 서민금융포럼	2010.7.20	서울코리아나호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상한금리 정책 방향 주제1 정부의 금리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자 : 한양대 이상빈 교수 주제2 금리정책이 대부업 및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 발제자 : 앤알캐피탈 민동오 대표
2010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2010 11.3.~11.5	에버리스 리조트	1부 [초청 특강] 일본 소비자금융에서 배워야 할 5가지, 배우지 말아야 할 5 가지 발제자 : 와세다대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 2부 [토론] 주제 건전 대부업 육성 및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계의 역할과 과제 발제자 : 금융감독원 조성목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박사 웰컴크레디라인 손종주 대표 토론자 : 금융위원회 배준수 과장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매일경제 장경덕 논설위원
2011 서민금융포럼	2011.3.29	서울팔레스 호텔	대부중개시장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주제1 대부중개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발제자 : W파이낸셜대부중개 이원세 대표 토론자 : 단국대 심지홍 교수 상명대 김규한 교수 원캐싱 심상돈 대표 주제2 대부중개업의 나아갈 방향 발제자 : 협회 담당자 토론자 : 단국대 심지홍 교수 상명대 김규한 교수 원캐싱 심상돈 대표
2011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2011 10.5~10.7	제주 라온리조트	1부 [VCR 감상] “韓 소비자금융, 길을 잃다” 2부 [토론] 주제 소비자금융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차별화 전략 － 발제자 : 한양대 이상빈 교수 에이원대부 주환곤 대표 금융감독원 조성래 실장 토론자 : 매일경제 장경덕 논설위원 협회 양석승 회장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박사

2012 서민금융포럼	2012.4.25	프레지던트 호텔	대포폰 이용한 대출사기, 어떻게 할 것인가? 1부 [피해사례 발표] 대포폰 대출사기 피해자 2인 사례 발표 2부 [토론] 발제자 : 협회 박담재 센터장 토론자 : 한양대 이상빈 교수 협회 양석승 회장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영직 책임연구원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2012 10.18~10.19	타미우스 빌리지	1부 [발표 및 토론] 주제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방안 발제자 : 대륙아주 노미리 변호사 토론자 : 협회 양석승 회장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성균관대 박덕배 교수 인하대 이민환 교수 2부 [특강] 주제1 한국경제 현황과 전망 발제자 : 성균관대 박덕배 교수 주제2 경영인문학 나를 버리고 얻은 8가지 발제자 : 씨앤블루 김영한 대표
2013 신년 대토론회	2013.1.14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1 금리규제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제자 : 일본 와세다대학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 토론자 : 협회 양석승 회장 성균관대 박덕배 교수 금융위원회 이형주 과장 주제2 韓-日 대부업 감독체계의 고찰과 대안 발제자 : 인하대학교 한재준 교수 토론자 : 협회 양석승 회장 성균관대 박덕배 교수 금융위원회 이형주 과장

2013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2013 10.10~10.11	엘리시안 리조트	1부 [발표 및 토론] 주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과 발전 과제 발제자 :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박사 토론자 : 협회 임승보 전무 아시아경제 왕성상 본부장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원캐싱 심상돈 대표 2부 [발표 및 토론] 주제 서민금융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발제자 : NICE CB연구소 문명배 소장 토론자 : 협회 임승보 전무 아시아경제 왕성상 본부장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원캐싱 심상돈 대표
2014 서민금융포럼	2014.6.13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설문조사 결과로 보는 대부업의 현황과 과제 좌 장 : 소비자금융연구소 심지홍 소장 발제자 : 인하대 이민환 교수 토론자 : 협회 임승보 전무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서울디지털대 신언명 교수
2014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2014 10.23~10.24	에버리스 리조트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과 순기능 분석 좌 장 : 소비자금융연구소 심지홍 소장 발제자 :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박사 토론자 :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인하대 이민환 교수 NICE CB연구소 문명배 소장

9) 기타 홍보 · 계몽 활동

법제처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협회도 2010년 5월 3일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기관으로서 대부업 관련 상담에 응하고 있다.

4. 사회공헌 활동

1) 업무 개요

(1) 목적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나눔 경영의 실천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협회를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2) 회원사 사회공헌활동 내용

협회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 이전에도 각 회원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협회에서는 이런 각사의 노력과 병행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이원적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소외 받은 우리의 이웃에게 대부업계의 공헌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개최

(1) 목적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결손가정 및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에게 김장을 담아 직접 전달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 행사 현황

2012년부터 처음 실시하여 2014년까지 해마다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김치 10kg, 300통 및 1,000만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구입하여 불우이웃에게 직접 전달했다. 앞으로 이 행사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나갈 예정이며 매년 4분기에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표 24〉김장담그기 행사 참석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참여회원사	20 개사	37 개사	27 개사
참여인원(협회포함)	40 명	58 명	60 명



▲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모습

3) 금융교육 실시

대학진학이나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 거래에 필수적인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과잉채무의 위험성, 예방방법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교육 관련 지식 기부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스 E(Economy)’s 시크릿머니”라고 하는 금융교육 뮤지컬을 제작하여 2011년 11월 14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울의 14개 고등학교에서 상연하였는데 총 6,327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뮤지컬은 DVD로도 제작하여 금융 관련 협회와 전국의 특성화고 283개교에도 배포하였다.



▲ “미스 E(Economy)’s 시크릿머니”의 공연 모습

〈표 25〉 금융교육 뮤지컬 공연 실적

	2011년	비고
현장공연	14개 고등학교, 6,327명 관람	2011.11.14. ~ 12.7
DVD 발송	전국 특성화고교 283개교 566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매일경제신문, 자산관리공사, 동양생명, ACE생명, ING생명, 메트라이프 등	
리플릿 배포	7000부 배포	
언론 보도 현황	12개 신문사 보도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이지경제, 뉴시스, 매일경제, 아주경제, 한국금융신문, 아시아투데이, 조선비즈, 내일신문,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MBN 방송 보도	
	아르떼TV 3일 5회 방영	

5. 행정협력사무

1) 휴대폰 실명확인 서비스 현황

(1) 개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등록갱신 시 등록신청서상 휴대폰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협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포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가 구축한 휴대폰 실명확인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에 휴대폰 실명확인 서비스 사용을 요청하면 협회에서는 ID와 비밀번호를 발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 해당 번호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인지 조회할 수 있다.

(2) 이용현황

지금까지 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휴대폰 실명확인 서비스는 〈표 26〉과 같으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6〉 휴대폰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 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확인건수	1,771	5,926	6,942	6,193	5,421	5,404

2) 대부업 등록 교육 실시 현황

(1) 개요

2009년 1월 21일 대부업법의 개정으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 또는 갱신하려는 자는 2009년 4월 21일부터 대부업 등의 준법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기관에 등록(또는 등록갱신) 신청 시 구비서류와 함께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대부업 등의 등록이 가능하다.

준법사항에 관한 교육은 대부업법 제18조의7(업무의 위탁)에 따라 협회에 위탁되어 현재까지 등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등록교육 시간 및 과목

시행 첫해인 2009년에는 총 4시간으로 교육과목이 구성되어 있었으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2009년 8월) 및 세금포탈 방지 등을 위해 세무교육이 포함되면서 2010년부터는 8시간으로 교육시간이 늘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표 27〉 2009년 교육 과목

교시	과목	교육시간
1교시	대부업법	3시간
2교시	공정채권추심법 및 신용정보법	1시간

〈표 28〉 2010년 이후 교육 과목

교시	과목	교육시간
1교시	대부업법	4시간
2교시	대부업 세무·회계	1시간
3교시	공정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 민원사례	3시간

(3) 등록교육 현황

① 등록교육 진행 횟수

대부업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수요에 따라 교육 횟수는 협회에서 조절하며 실시하고 있다. 법률 개정 이후 꾸준히 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교육일수도 늘어왔으나 대부업법 상의 상한금리 인하 등 규제 강화로 인해 대부업체가 감소하면서 교육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부터는 교육일수를 줄여가고 있다.

〈표 29〉 연도별 등록교육 진행 현황

(단위 : 회)

구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기타	합계
2009년	102	6	8	12	5	10	143
2010년	125	12	12	17	3	—	169
2011년	130	12	12	27	6	—	187
2012년	115	12	12	25	6	—	170
2013년	100	12	12	24	6	—	154
2014년	97	12	12	25	6	—	152
합계	669	66	68	130	32	10	975

※ 2009년 5월부터 교육 진행

※ 기타지역은 강릉 1회, 수원 1회, 원주 1회, 전주 4회, 춘천 3회로 총 10회 진행

② 연도별 등록교육 이수자 현황

2009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 등록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법정최고이자율의 지속적 인하(연 49% → 연 39% → 연 34.9%) 등으로 인해 대부업 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부업 등을 등록하고자 교육을 신청하는 인원도 2011년을 정점으로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2014년은 기존 등록자의 갱신교육 수요증가로 2013년 대비 6.4%까지 증가하였다.

〈표 30〉 연도별 등록교육 이수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비율
남성	4,895	6,199	7,361	6,294	5,088	5,413	35,250	77.4
여성	1,445	1,712	2,201	1,829	1,516	1,616	10,319	22.6
합계	6,340	7,911	9,562	8,123	6,604	7,029	45,569	100.0

※ 남성의 비율이 8대 2로 여성의 비율보다 약 4배 많다.

등록교육 시행 첫해인 2009년에는 총 10개 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릉, 수원, 원주, 전주, 춘천)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인구밀도가 적은 지역의 수요부족으로 인하여 2010년부터는 총 5개 지역(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으로 축소하여 실시하고 있다.

③ 지역별 등록교육 이수자 현황

서울교육 이수자가 전체 교육 이수자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교육 이수자가 배출되고 있다.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편인데 이는 인구집중도가 높은 편인 경기도와 인천지역 등의 수요도 서울 교육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다음으로는 부산이 12.7%, 대전 8.6%, 대구 7.7% 순으로 나타났는데 인구분포도에 따라 교육지역의 인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1〉 지역별 등록교육 이수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비율
서울	4,340	5,417	6,308	5,498	4,487	4,711	30,761	67.5
부산	764	949	1,192	983	836	1,045	5,769	12.7
대전	327	744	960	755	588	525	3,899	8.6
대구	482	702	776	603	459	496	3,518	7.7
광주	148	99	326	284	234	252	1,343	2.9
기타	279	0	0	0	0	0	279	0.6
합계	6,340	7,911	9,562	8,123	6,604	7,029	45,569	100.0

④ 연령대별 등록교육 이수자 현황

연령대별로 교육이수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가 전체 교육이수자의 35%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40대, 50대, 20대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60대 이상의 비율도 10%로 20대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2〉 연령대별 등록교육 이수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비율
20대	970	1,161	1,062	881	414	480	4,968	10.9
30대	2,170	2,938	3,144	2,980	2,336	2,220	15,788	34.6
40대	1,711	2,113	2,508	2,192	1,966	1,971	12,461	27.3
50대	1,026	1,205	1,762	1,398	1,152	1,321	7,864	17.3
60대	383	402	795	520	589	746	3,435	7.6
70대이상	80	92	291	152	147	291	1,053	2.3
합계	6,340	7,911	9,562	8,123	6,604	7,029	45,569	100.0

※ 해당 연도 기준 연령대

⑤ 영업형태¹⁷⁾별 등록교육 이수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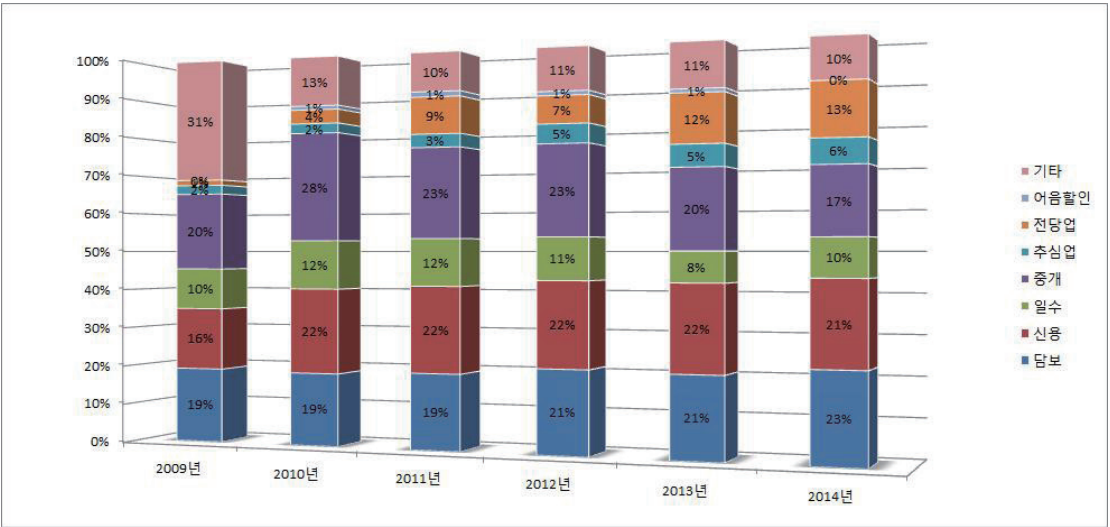
등록업체의 감소로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영업형태별 추이를 살펴보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비율은 2010년과 2011년에 반짝 증가한 점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이후 다시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전당업을 영위하는 비율도 계속 증가하다가 2011년에는 9%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12년 한차례 감소한 후 다시 2013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을 하는 추심업만은 매년 소폭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표 33〉 영업형태별 등록교육 이수자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비율
담보	1,211	1,473	1,848	1,723	1,366	1,587	9,208	20.2
신용	1,003	1,717	2,097	1,759	1,439	1,490	9,505	20.9
일수	663	983	1,145	868	503	675	4,837	10.6
중개	1,248	2,187	2,185	1,852	1,319	1,179	9,970	21.9
추심업	146	196	322	393	363	433	1,853	4.1
전당업	86	282	892	562	806	935	3,563	7.8
어음할인	2	79	126	84	62	—	353	0.8
기타	1,981	994	947	882	746	730	6,280	13.7
합계	6,340	7,911	9,562	8,123	6,604	7,029	45,569	100.0

※ 상기 영업형태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고자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실제 등록된 영업형태와는 다를 수 있다.

〈그림 10〉 영업형태별 등록교육 이수자 추이



17) 대부업 등을 영업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채무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신용대출과 담보물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실행하는 담보대출, 금전대부를 중개하는 대부중개, 부실채권 및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권추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밖에 편의상 〈표 33〉과 같이 일수와 전당업, 어음할인, 기타로 구분하였다.

⑥ 갱신 비율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 등은 신규 등록 이후 3년이 되는 해에는 갱신 등록을 해야 한다. 갱신 신청 시에도 신규 등록 시와 마찬가지로 이수했던 등록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 등록교육을 받고 처음 갱신을 맞이하는 2011년도에는 갱신 등록을 하고자 하는 교육생 비율이 전체 교육생중 2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3년 주기로 갱신 교육을 받고 있는 관계로 등록교육 신청자도 이에 따라 3년 주기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4〉 등록 교육 갱신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신규	5,694	7,130	7,175	6,927	5,640	5,078	37,644
비율	89.8	90.1	75.0	85.3	85.4	72.3	82.6
갱신	646	781	2,387	1,196	944	1,822	7,776
비율	10.1	9.9	25.0	14.7	14.3	25.9	17.1
변경	—	—	—	—	20	129	149
비율	—	—	—	—	0.3	1.8	0.3
합계	6,340	7,911	9,562	8,123	6,604	7,029	45,569

3) 서울시청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1) 개요

서울시청은 대부업체 현장점검에서 개인 영세 대부업자가 대부업 관련 법령(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대부업자의 준법영업 유도 및 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협회와 더불어 2014년 11월과 12월, 8회에 걸쳐 서울 소재 대부(중개)업자 총 3,087명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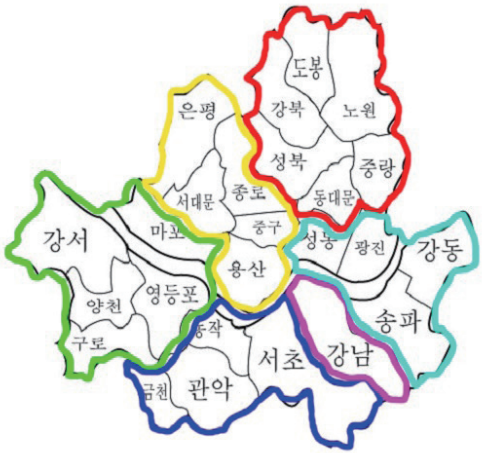
(2) 서울시 구역별 등록업체 현황

이번 준법교육은 서울시 25개 구를 〈표 35〉와 같이 6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8) 이번 교육의 경우 서울 소재 등록 대부(중개)업자가 교육 대상이었으나 타 시·도에 등록을 한 업자도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
19) 당초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등록 대부(중개)업자 명단 중 협회에서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참석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폐업 및 타 시·도로 진출한 업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

〈표 35〉 서울시 구역별 등록업체 수

(2014.11.30.기준)



구역	권역별	업체수
1 구역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524개
2 구역	중구, 종로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516개
3 구역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585개
4 구역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520개
5 구역	강남구	508개
6 구역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434개
합 계		3,087개

(3) 교육 진행 결과

서울시 소재 대부(중개)업자 3,087개사 중 폐업·전출을 제외한 2,745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79.2%에 해당하는 2,171개사가 참석하여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였다.



▶ 서울시 소재 대부(중개)업자가 준법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표 36〉 교육 진행 결과

구분	장소	교육일	대상업체		대상 ¹⁸⁾ 업체외(B)	최종 대상업체 (A+B)	참석업체 참석업체	참석업체 비율
			최초 대상	폐업·전출 제외(A) ¹⁹⁾				
1구역	성북구민회관	11월 27일	524	438	3	441	250	56.69%
2구역	중구구민회관	12월 01일	516	458	3	461	248	53.80%
3구역	마포구청	12월 08일	585	504	9	513	323	62.96%
4구역	동작문화 복지센터	12월 04일	520	465	2	467	287	61.46%
5구역	강남구민회관	11월 19일	508	471	4	475	280	58.95%
6구역	성동구청	12월 10일	434	370	8	378	236	62.43%
추가1	중구구민회관	12월 15일			4	불참자+4	287	
추가2	중구구민회관	12월 18일			6	불참자+6	260	
합 계			3,087	2,706	39	2,745	2,171	79.12%

6. 회원사 지원 및 교육 사업

1) 회원사 지원 사업

(1)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서비스

업계의 업무방식 통일이 필요한 법해석 사항이 있을 경우 협회가 선임한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2012년 5월부터 도입되었다. 협회에서 지금까지 법률자문을 의뢰한 곳으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수호, 김앤장, 광장 등이 있으며, 2014년까지 실시된 법률자문 내역은 <표 37>과 같다.

<표 37> 법률자문 의뢰 내역 현황

No.	내용	날짜	법무법인
1	무등록 대부업체의 이동전화 이용정지 가부에 관한 검토	12.05.21	대륙아주
2	대부업자의 유질계약 허용 여부	12.05.31 12.06.14	수호 대륙아주
3	대부업자의 보증업 영위 가부	12.07.13	대륙아주 수호
4	대부업 업무서식의 적법 여부	12.07.13	대륙아주
5	대구지방법원 사실조회 회신내역 검토	12.07.16	대륙아주
6	대부업자의 보증업 영위 가능성 관련 검토	12.07.17	수호
7	대부업자의 '금융회사' 해당 여부 관련 검토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서식 관련	12.07.17	대륙아주 수호
8	대부업체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서식에 대한 검토	12.07.20	대륙아주
9	채권추심법 개정안(홍중학 의원)에 대한 검토	12.08.02	대륙아주 수호
10	대부업자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협회 가입 명령 가능 여부	12.09.06 12.09.20	대륙아주 수호
11	대부업 신용정보의 온라인 공개에 대한 검토	12.09.25 12.09.27	수호 대륙아주
12	채권추심전문 대부업자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12.10.16 12.10.23	대륙아주 수호
13	소멸시효완성채권이 공추법상 존재하지 않는 채권 해당 여부	12.10.16 12.10.23	대륙아주 수호
14	소비자금융신문 보도자료의 정정보도 청구대상 여부	12.10.17	대륙아주
15	대부업법상 시행령 제4조의 3 제1항 증명서류의 종류와 범위	12.10.19	김앤장
16	채권추심비용이 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12.11.28 12.12.03	대륙아주 수호

17	화해계약의 대부거래계약 해당여부	12.12.13	대륙아주
18	대부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13.01.17 13.01.21	대륙아주, 수호
19	만기 연체 시 보증인의 책임 범위 관련 검토	13.05.14	대륙아주
20	대부업자 등의 광고 시 연체이자율 표기 방법 관련	13.05.14	대륙아주
21	형사소송 확정 전 행정처분의 타당성 검토	13.08.28 13.09.02	대륙아주, 수호
22	'바이렌탈' 서비스의 대부업 등록 대상 여부 검토	13.10.25	대륙아주
23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정보 집중 관련 검토 의뢰	14.01.06	대륙아주
24	자필기재와 대부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관련 검토	14.01.06	대륙아주
25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이학영 의원안)에 대한 검토	14.01.13	대륙아주
26	대부업자의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 해당 여부	14.02.17	광장
27	채권추심법 상 소송행위 금지 조항 적용 대상 범위	14.05.21	대륙아주
28	채권추심법 상 대리인 선임 시 연락금지의 적용 대상	14.06.30	대륙아주
29	대부업자와 중개업자간 업무관계의 법적 성격	14.08.03	대륙아주
30	대부업자의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대상 해당 여부	14.08.28	대륙아주
31	대부업법 전부개정안의 협회 감독규정 검토	14.08.28	대륙아주
32	이자율 계산 시 선이자(대부업법 제8조제5항) 관련 법률 해석	14.10.13	대륙아주

(2) 소비자금융 직거래 대출센터

① 서비스 개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업자나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사의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가 직접 대출 상품을 선택하여 대출신청도 할 수 있는 직거래 대출센터를 2011년 10월 17일부터 개설했다.

② 운용 현황

개설 당시 18개 회원사가 참여했는데 금융소비자가 대출센터를 이용할 경우 대부중개회사를 통한 대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중개회사 이용 시 우려되는 개인정보의 악용

이나 불법 수수료 편취 피해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스캠대출문자에 의한 대출사기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센터 이용 고객이 부담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협회에서 책임지고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직거래 대출센터가 활성화 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낮은 대출금리로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회원사도 대부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절감하게 되어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트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대출신청자수가 적고 신청한 고객의 신용도가 낮아 승인율이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더군다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온라인 대출을 포기한 회사와 업계의 영업 환경 악화로 폐업한 회사가 늘어나면서 2015년 4월 6일 폐지하기로 했다.

직거래 대출센터가 개설된 이래 폐지되기까지의 실적은 <표 38>과 같다. 개설 당시 언론 보도에 힘입어 하루 최다 356명까지 방문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승인율도 신청자의 대다수가 저신용자인데다 과다 대출자인 관계로 저조했었다.

 소비자금융 직거래 대출센터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 골라서 신청하기!!! 대출신청하기 유의사항 • 소비자금대출센터는 법정기관인 한국대부금융협회 정회원사의 대출상품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대부중개업자가 영업의 목적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대출상품을 하연 민원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은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하며, 대출상담은 각 회사의 업무시간내에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회사 직원이 고객님께 대출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입체형 상품명 결제 새로고침 역설다운로드		
 대부업체명/대출상품명 대출정보 대출사정		
 하이캐피탈대부(주) 결제조건 신상	 금리 : 신규 연 37.0% / 추가:재대출 연 38.26% 이내 / 연체금리 연 38.26% / 수수료없음 자격 :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공무원, 전문직 등 한도 : 최대 1천만원 기간 : 12~36개월(최장5년까지 연장 가능)*자유상환가능	 신상
 (주)인터머니 결제조건 신상	 금리 : 연 36% 이내*수수료없음 자격 : 회사원, 자영업자 한도 : 최대 1천만원 기간 : 12~60개월	 신상
 (주)희망인드는사람들대부 결제조건 신상	 금리 : 25%부터 시작하여 성실상환시 금리 인하 최저 17% 자격 : 직장인 한도 : 최대 5천만원 기간 : 60개월 이내 상담사와 협의후 결정	 신상
 네오뱅크대부(주) 결제조건 신상	 금리 : 연 39% 이내*수수료없음 자격 : 회사원, 자영업자 한도 : 최대 1천5백만원 기간 : 12~36개월	 신상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주) 결제조건 신상	 금리 : 연 36% 이내 연체 38.81% *수수료없음 자격 :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공무원, 전문직 등 한도 : 최대 1,500만원 기간 : 12~36개월	 신상
 발립크레디트대부(주) 결제조건 신상	 금리 : 연 24~36% 이내 *수수료없음 자격 :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한도 : 최대 1천만원 기간 : 12~60개월	 신상
 에버크레디트대부 결제조건 신상	 금리 : 연 36% 이하 연체금리 39% 이내*수수료없음 자격 : 직장인, 자영업자 한도 : 최대 1천만원 기간 : 12~60개월	 신상
 에이엔피대부개발 결제조건 신상	 금리 : 연 32.4~39% 이내*수수료없음 자격 :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공무원, 전문직 등 한도 : 최대 1천만원 기간 : 12~60개월(최장5년까지 연장 가능)*자유상환가능	 신상
 에이엔피대부(주)세라피아 결제조건 신상	 금리 : 연 39% 이내*수수료없음 자격 : 회사원, 자영업자 한도 : 최대 5백만원 기간 : 12~24개월	 신상
 에이엔피대부(주)바우스 결제조건 신상	 금리 : 연 36% 이내*수수료없음 자격 :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한도 : 최대 1천만원 기간 : 12~60개월	 신상
 에이엔피대부(주)조아 결제조건 신상	 금리 : 연 36~39% 이내*수수료없음 자격 :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한도 : 최대 1천만원 기간 : 12~60개월	 신상
 에이엔피대부(주)루소모 결제조건 신상	 금리 : 대출금리 35.77%, 연체금리 38.69% *수수료없음 자격 :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한도 : 2천만원 기간 : 12~60개월	 신상
 에이엔피대부(주)캐시박스 결제조건 신상	 금리 : 연 39% 이내*수수료없음 자격 :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한도 : 최대 1천만원 기간 : 12~36개월	 신상
 에이엔피대부(주)케이제이아이 결제조건 신상	 금리 : 연 39% 이내 * 수수료 없음 자격 : 직장인, 주부, 사업자, 공무원 등 한도 : 최대 1500만원 기간 : 24 ~ 36개월	 신상

▶ 협회 홈페이지 상의 소비자금융 직거래 대출센터 페이지

<표 38> 대출센터 방문자 수 및 신청자 수 현황

(단위 : 명, %)

방문자 수 추이				대출 신청자 수 추이			
연도	월	방문자수	증감율	연도	월	신청자수	증감율
2011년	10	1,863		2011년	10	200	
	11	1,735	△ 7		11	220	10
	12	933	△ 46		12	196	△ 11
	합계	4,531			합계	616	

방문자 수 추이				대출 신청자 수 추이			
연도	월	방문자수	증감율	연도	월	신청자수	증감율
2012년	1	663	△ 29	2012년	1	153	△ 22
	2	762	15		2	49	△ 68
	3	1,086	43		3	54	10
	4	886	△ 18		4	59	9
	5	691	△ 22		5	34	△ 42
	6	600	△ 13		6	32	△ 6
	7	1,086	81		7	44	38
	8	606	△ 44		8	29	△ 34
	9	520	△ 14		9	29	0
	10	493	△ 5		10	24	△ 17
	11	442	△ 10		11	21	△ 13
	12	429	△ 3		12	24	14
	합계	8,264			합계	552	
2013년	1	521	21	2013년	1	47	96
	2	372	△ 29		2	18	△ 62
	3	396	6		3	19	6
	4	361	△ 9		4	24	26
	5	442	22		5	19	△ 21
	6	323	△ 27		6	14	△ 26
	7	358	11		7	15	7
	8	408	14		8	23	53
	9	350	△ 14		9	21	△ 9
	10	411	17		10	12	△ 43
	11	212	△ 48		11	10	△ 17
	12	271	28		12	2	△ 80
	합계	4,425			합계	224	
2014년	1	333	23	2014년	1	9	350
	2	378	14		2	6	△ 33
	3	228	△ 40		3	3	△ 50
	4	258	13		4	7	133
	5	278	8		5	7	—
	6	225	△ 19		6	11	57
	7	262	16		7	3	△ 73
	8	199	△ 24		8	8	167
	9	208	5		9	4	△ 50
	10	319	53		10	11	175
	11	186	△ 42		11	1	△ 91
	12	287	54		12	5	400
	합계	3,161			합계	75	

〈표 39〉 대출센터 대출 승인 현황

(단위 : 건, 원, %)

대출 승인건수 추이				
연도	월	승인건수	승인금액	승인율
2011년	10	8	25,700,000	4.0
	11	1	3,000,000	0.5
	합계	9	28,700,000	1.5
2012년	2	2	12,000,000	4.1
	4	3	35,100,000	5.1
	5	1	2,000,000	2.9
	7	1	5,000,000	2.3
	9	1	5,000,000	3.4
	12	1	2,000,000	4.2
	합계	9	21,800,000	1.6
2013년	1	2	19,300,000	4.3
	3	1	2,500,000	5.3
	8	1	3,000,000	4.3
	합계	4	24,800,000	4.5
2014년	4	1	7,000,000	14.3
	6	1	5,000,000	9.1
	10	1	3,000,000	9.1
	합계	3	15,000,000	10.3
총계		25	90,300,000	1.7

(3) 중소기업 e경영 지원 서비스

① 간편 전산프로그램(Bankey: 뱅키)

협회는 기존 소형 대부금융회사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객관리와 대출관리, 채권관리, 신용정보 조회, 대부중개업무 등과 같은 수기 작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전산 프로그램(뱅키)을 개발하여 무료 또는 염가로 보급하고 있다. 현재 총 26개 회원사가 무료 전산 두 번째 버전인 “뱅키Ⅱ”를 사용하고 있으며, 회원사의 경우 1User 사용 시 무료 사용이 가능하며, 2User 이상 사용 시 1User당 사용료 3만원, 비회원사의 경우 1User 사용 시 월 9,000원, 2User 이상 사용 시 1User당 사용료 3만원 등 소형사가 실제 개발비 없이 전산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표 40〉 “뱅키Ⅱ” 사용 회원사 현황

NO	회사명	NO	회사명
1	(주)강남캐피탈대부	12	동원산업(주)
2	(주)아세아캐피탈대부금융	13	(주)에이비씨론대부
3	(주)에치제이인베스트먼트에이엠씨대부	14	(주)에이치엠대부
4	동아캐피탈대부(주)	15	케이제이머니대부(주)
5	(주)희망만드는사람들대부	16	(주)케이투피에셋대부
6	(주)목동에셋대부	17	(주)캐시앤캐시대부
7	(주)성원앤대부	18	휴먼브릿지론대부
8	(주)에프이푸른하늘대부	19	(주)오티오대부
9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주)	20	코인력닷컴대부(주)
10	케이비캐비탈대부(주)	21	SB캐피탈대부
11	한일투자대출대부	22	삼삼캐시대부

※ 총 50개사가 뱅키 사용(회원사 22개사, 비회원사 28개사)

② 무료홈페이지 제작

영세한 소형 회원사의 홈페이지를 무상으로 제작해 주는 서비스로 2009년 12월부터 실시하여 2014년 12월 末 현재 9개 회원사가 무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영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단, 웹호스팅, 관리자 화면, 백업, 보안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비 월 3만원(1년 선납조건 33만원)을 해당 전산업체에 납입해야 사용할 수 있다.

〈표 41〉 무료 홈페이지 사용 회원사 현황

NO	회사명	홈페이지 신청	상태
1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2012년 2월	제작완료
2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2012년 2월	제작완료
3	휴먼브릿지론대부	2014년 2월	제작완료
4	씨니캐피탈대부(주)	2014년 2월	제작완료
5	에비스대부(주)	2014년 5월	제작완료
6	퍼스트캐시전당포대부	2014년 7월	제작완료
7	(주)인더스코대부	2014년 7월	제작완료
8	(주)바리움홀딩스대부	2014년 8월	제작완료
9	강남명품전당포대부	2014년 10월	제작완료

③ 회원사 임직원 포상

협회에서는 2012년도부터 회원사 소속 우수 임직원을 선정하여 협회장이 그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고 있다. 이러한 포상은 연말 회원사 송년회 또는 신년회 개최 시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전 회원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원사 우수 임직원을 포상하였다. 지금까지 회원사 우수 임직원으로 선정된 직원 현황은 <표 45>와 같다.

<표 45> 회원사 우수 임직원 수상자 현황

연도	회사명	직원명	비고
2012년	에이앤피라이낸셜(주)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산와대부(주) 하이캐피탈대부(주) (주)동그라미대부	김용희 현경진 최민옥 고범관 서동석	
2013년	(주)바로크레딧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대산대부(주) 동서자산관리대부(주) (주)크라운홀딩스대부 (주)희망만드는사람들대부 와이앤금융파트너스대부(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이지캐피탈대부(주) (주)리드코프	이아름 손태민 엄재철 김윤상 왕재명 서경준 이재익 이상화 남서진 이선경	
2014년	산와대부(주) 미조사랑대부(주) 애니원캐피탈대부(주) (주)하트캐싱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와이앤금융파트너스대부(주) (주)바로크레딧대부 나라대부금융(주) 태산대부(주) (주)동그라미대부	장원웅 박광주 남아영 손남식 오유진 임성철 김승찬 이형식 한경훈 방진수	

(5) 회원사 상조 서비스 시행

회원사 간의 상호부조와 친목도모를 위해 협회에서는 회원사 상조회를 구성하고 상조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총 28개 회원사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 차례 상조회 규정을 개정(2011.3)하여 대상 지원자를 확대하였다. 회원사 상조회인 관계로 회비는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 경비는 협회 고유계정 경조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규정과 지원현황은 각각 <표 46>, <표 47>과 같다.

<표 46> 상조회 지급규정

대상자	사망시	상조기	상조용품	조화	부의금	비고
대표이사	부모	○	○	○	○	기본 : 300인용 상조용품 이상
	본인	○	○	○	○	
	배우자	○	○	○	○	
	자녀	○	○	○	○	
	조부모 장인,장모, 형제자매	○	○	○	○	
임원 (법인)	부모	○	○	○	○	
	본인	○	○	○	○	
	배우자	○	○	○	○	
	자녀	○	○	○	○	
	형제자매	○	○	○	○	
직원	조부모 장인,장모	×	×	×	×	
	본인	○	○	○	○	
	배우자	○	○	○	○	

<표 47> 상조회 지원현황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지원건수	5	5	3	10	5	28

(6) 회원사 임·직원의 자기계발 교육 지원

2009년 12월 24일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회원사 임·직원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의 자기계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산학협력 체결에 따라 회원사의 임·직원은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 시 장학금 특전을 부여받는데 입학금이 전액 면제되며,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서울디지털대학교는 4년제 사이버대학교로 2001년 개교 이후 2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왔으며, 인문사회와 IT 및 예술계열 23개 학과의 신입학자와 편입학자를 모집하고 있다.

(7) 각종 도서 출판

대부업 관련 업계 정보를 비롯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과 민원 사례 등을 회원사가 공유하고 현장에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서적을 발행하여 회원사에 배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회에서 발행한 서적은 <표 48>과 같다.

<표 48> 협회 발행 서적 현황

No.	내용	날짜
1	JFSA백서(2008년도판)	2009.07
2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0.05
3	JFSA백서(2009년도판)	2010.06
4	일본대금업협회 정관 및 각종 규칙	2010.08
5	대부업 관계법령 Q&A	2011.01
6	다중채무자 상담 매뉴얼	2011.03
7	대부금융업 유권해석	2011.05
8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1.07
9	대부업무 지도사항 모음집	2011.11
10	대부금융업 보도기사 모음집Ⅱ, Ⅲ, Ⅳ	2011.12
11	JFSA백서(2010년도판)	2012.03
12	이자제한이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	2012.07
13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2.07
14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	2012.08
15	대부금융업 보도기사 모음집Ⅵ	2012.10
16	신년 대토론회 발표 자료집	2013.01
17	JFSA백서(2011년도판)	2013.03
18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3.03
19	대부금융백서 2012년도판	2013.08
20	대부금융 업무처리 시 단계별 유의·준수사항	2013.11
21	소비자금융신문 100호 통합본	2014.01
22	대부금융업 보도기사 모음집 2012, 2013년도판	2014.05
23	대부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14.05
24	JFSA백서(2012년도판)	2014.07
25	2014 소비자금융컨퍼런스 발표자료집	2014.10

2) 교육 사업

(1) 중개 교육

① 개요

대부중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2010년 7월 “중개업무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대부중개회사들이 협회 회원인 대부금융회사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회에 등록을 하고 사고예방 교육 4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중개교육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중개업 등록을 완료한 이후 협회에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1회 교육 이수 후 1년마다 재교육을 통해 갱신을 해야 한다. 미갱신 시에는 협회 등록이 자동 해제되며, 해제된 이후에는 협회 회원사들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회원사는 반드시 협회에 등록된 대부중개회사들과 거래를 해야 하며, 미등록대부중개회사와 거래 시 규정에 따른 제재가 부여 된다.

② 교육과목

중개교육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개업무 관리규정과 민원사례 및 중개업무 관련 유의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이수한 대부중개회사의 경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표 49> 중개 교육 과목 현황

교시	과목	교육시간
1교시	중개업무 규정의 이해	2시간
2교시	중개 관련 민원 예방	1시간
3교시	중개업무 유의사항	1시간

③ 교육 현황

중개교육은 월평균 3회(서울 2회, 부산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서울은 협회 13층 교육장에서 부산은 부산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표 50> 중개 교육 진행 횟수

(단위 : 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서울	19	26	26	20	23	114
부산	4	6	4	9	5	28
합계	23	32	30	29	28	142

※ 2010년 7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개업무 관리규정”에 따라 협회에 등록을 하고자 교육을 신청하는 대부중개회사는 시행 이래 7%씩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서울이 전체 교육생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편인데 비교적 수요가 적은 지방의 중개회사를 위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표 51〉중개 교육 진행 횟수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서울	501	564	646	562	577	2,850
부산	106	90	52	95	54	397
합계	607	654	698	657	631	3,247

※ 2010년 7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직무 교육

① 개요

2010년 이사회 의안(회원사 직원의 직무교육 시행의 건) 승인에 따라 회원사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협회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집체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나 거리 및 시간상 제약으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었다.

② 집체교육 현황

서울 중구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원으로 인가를 받은 후 협회 회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환급과정을 2010년 4월부터 진행하였다. 그러나 회원사 업무인원의 부족에 따른 집체 교육 참여율 저조로 인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교육과정의 변경이나 추가 시 강사 섭외에 대한 제약 등으로 2012년 3월을 끝으로 집체교육은 종료되었다.

2010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41회, 836명의 회원사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표 52〉집체교육 과목 현황

1회			2회		
교시	과목	교육시간	교시	과목	교육시간
1교시	대부금융의 역사	1시간	1교시	민원예방	2시간
2교시	대출심사 - 실무	2시간	2교시	임의회수	2시간
3교시	대출심사 -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	1시간	3교시	채권보전 및 집행권원	2시간
4교시	고객만족(CS)	4시간	4교시	강제집행 실무	2시간

〈표 53〉집체교육 연도별 진행 횟수

(단위 : 회)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진행 횟수	14	23	4	41

※ 집체교육은 2010년 4월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2013년 교육 종료 예정이다.

〈표 54〉집체교육 연도별 수강 인원

(단위 : 명)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수강 인원	358	410	68	836

③ 사이버 교육 개요

협회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협회 교육장까지 와야 하는 시간과 거리 등의 제약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2년 6월부터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2년도 말 기준 27개 회원사에서 총 294명, 2013년 1월부터 8월말까지 23개 회원사에서 총 252명의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다.

④ 사이버 교육 과목

사이버 교육은 신입사원을 위한 “대부금융 종사자를 위한 업무 기초”교육과 경력자를 위한 “알기 쉬운 채권관리 실무”교육 등 총 2가지 과정으로 각각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실시하였다.

〈표 55〉사이버교육 과목 현황

대부금융 종사자를 위한 업무 기초 과정		알기 쉬운 채권관리 실무 과정	
차시	과목	차시	과목
1차시	대부업의 역사와 대부업 등록	1차시	계약일반(1)
2차시	대부거래 시 유의사항	2차시	계약일반(2)
3차시	이자율 및 감독 · 검사	3차시	채권이해
4차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차시	민법이해
5차시	민원의 이해와 예방	5차시	권리 - 변동
6차시	민원의 처리와 감정관리	6차시	임의회수
7차시	회계기초(1)	7차시	채권 - 효력
8차시	회계기초(2)	8차시	담보물권 및 채권상당
9차시	대부업 세무	9차시	민사소송
10차시	민사소송법률(1)	10차시	통상소송절차에 있어서의 개념(1)
11차시	민사소송법률(2)	11차시	통상소송절차에 있어서의 개념(2)
12차시	민사소송법률(3)	12차시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소송
13차시	민사소송법률(4)	13차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절차와 쟁점
14차시	민사소송법률(5)	14차시	양수금 청구소송과 수인의 채무자
15차시	개인정보보호법	15차시	대여금 청구소송 소장
16차시	신용정보보호법	16차시	청구소송 소장 외 소송서류

⑤ 사이버교육 현황

사이버교육은 2012년 6월부터 시작하였으나, KG패스원과의 계약기간 만료 및 회원사의 교육 참여 저조로 인하여 2013년 8월까지 진행하였다.

〈표 56〉 사이버교육 수강인원 현황

(단위 : 명)

년	2012년(6월~12월)	2013년(1월~8월)	합계
수강인원	294	252	546

⑥ 회원사별 직무교육 수강 현황

직무교육이 처음 도입된 이래 2012년도 말까지 각 회원사에서 교육을 수강한 현황은 〈표 57〉과 같다. 회원사 중 산와대부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회원사별 직무교육 수강인원 현황

(단위 : 명)

회원사명	집체교육				사이버교육			총계
	10년	11년	12년	합계	12년	13년	합계	
산와대부	38	109	23	170	81	91	172	342
웰컴크레디탈인대부	138	38	6	182	23	—	23	205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11	39	13	63	56	—	56	119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24	45	7	76	—	6	6	82
태강대부	12	9	2	23	12	17	29	52
베르넷크레디트대부	17	20	4	41	6	—	6	47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	—	—	—	18	28	46	46
엘하비스트대부	8	8	3	19	9	6	15	34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	—	—	—	—	33	33	33
채권관리자교육	—	33	—	33	—	—	—	33
에이원대부캐피탈	4	5	2	11	2	17	19	30
엑트캐쉬대부	4	21	3	28	—	—	—	28
동그라미대부	—	5	1	6	10	5	15	21
콜렉트대부	1	7	1	9	9	1	10	19
하이캐피탈대부(주)	—	—	—	—	16	—	16	16
아이루리아대부	5	11	—	16	—	—	—	16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	—	—	—	—	15	15	15
베스트캐피탈대부(주)	6	8	—	14	—	—	—	14
휴엔케이파트너스대부	4	9	—	13	—	—	—	13
엠제이앤씨대부	13	—	—	13	—	—	—	13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	—	—	—	—	10	—	10	10
희망만드는사람들대부	3	1	—	4	6	—	6	10
대부헬로우크레디트	4	3	—	7	1	2	3	10
애니원캐피탈대부(주)	7	—	—	7	3	—	3	10

엔알캐피탈	5	5	—	10	—	—	—	10
성원앤대부	—	2	—	2	—	7	7	9
유승산업	—	2	—	2	6	—	6	8
(주)해방새대부	—	—	—	—	6	—	6	6
바로크레디트	6	—	—	6	—	—	—	6
원캐싱	6	—	—	6	—	—	—	6
한국이지론	6	—	—	6	—	—	—	6
미래크레디트	4	2	—	6	—	—	—	6
케이아이코아즈대부	—	—	—	—	5	—	5	5
위드캐피탈대부	—	—	—	—	—	5	5	5
테크메이트코리아	—	—	—	—	—	5	5	5
에프이푸른하늘대부	—	5	—	5	—	—	—	5
머니라이프	5	—	—	5	—	—	—	5
리드코프	—	—	—	—	4	—	4	4
아세아캐피탈	—	—	—	—	—	4	4	4
나이스대부	—	3	—	3	—	1	1	4
아리엘에셋대부유한회사	3	1	—	4	—	—	—	4
스타크레디트대부	4	—	—	4	—	—	—	4
하트캐싱	1	—	—	1	2	—	2	3
이노비트대부	2	1	—	3	—	—	—	3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	1	2	3	—	—	—	3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3	—	—	3	—	—	—	3
한국금융플랫폼	—	—	—	—	2	—	2	2
한국리치캐피탈대부	—	—	—	—	2	—	2	2
인더스코대부	—	—	—	—	—	2	2	2
케이씨피드	—	—	—	—	—	2	2	2
론스타캐피탈대부	—	1	—	1	1	—	1	2
에스앤케이파머스대부(주)	—	1	—	1	—	1	1	2
에치제이인베스트먼트	—	2	—	2	—	—	—	2
칸캐피탈대부	—	2	—	2	—	—	—	2
대산대부주식회사	—	2	—	2	—	—	—	2
유어캐피탈대부금융(주)	—	2	—	2	—	—	—	2
굿모닝캐피탈	2	—	—	2	—	—	—	2
굿이에프	2	—	—	2	—	—	—	2
유아이크레디트	2	—	—	2	—	—	—	2
지에스파이낸셜대부	2	—	—	2	—	—	—	2
디오아시스대부	—	—	—	—	1	—	1	1
에스아이파이낸스대부	—	—	—	—	1	—	1	1
(주)케이옥션	—	—	—	—	1	—	1	1
에이모션	—	—	—	—	1	—	1	1
아세아산업개발	—	—	—	—	—	1	1	1
테바트론대부중개	—	—	—	—	—	1	1	1
서브코리아대부	—	—	—	—	—	1	1	1

카네이션대부	-	-	-	-	-	1	1	1
브릭스캐피탈대부	-	1	-	1	-	-	-	1
서울옥션	-	1	-	1	-	-	-	1
YN금융파트너스	-	1	-	1	-	-	-	1
비오캐피탈	-	1	-	1	-	-	-	1
와이케이대부	-	1	-	1	-	-	-	1
제이파이낸셜라인	-	1	-	1	-	-	-	1
(주)유니크에프씨	-	1	-	1	-	-	-	1
밀리언캐쉬대부	1	-	-	1	-	-	-	1
열린아침대부	1	-	-	1	-	-	-	1
티엔코대부금융	1	-	-	1	-	-	-	1
강남파이낸스	1	-	-	1	-	-	-	1
원캐피탈대부	1	-	-	1	-	-	-	1
터치론대부	1	-	-	1	-	-	-	1
엠에프파이낸스대부	-	-	1	1	-	-	-	1
합계	358	410	68	836	294	252	546	1,382

(3) 세무·회계교육

① 개요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과정에 세무·회계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정된 교육 시간에 전 반적인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해오다가 교육 수요 저조로 2013년 10월 종료하였다.

② 교육과목

세무·회계교육은 총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과목은 <표 58>과 같다.

<표 58> 세무·회계 교육 과목 현황

교시	과목	교육시간
1교시	대부업의 세금 및 세무	2시간
2교시	세무기장 사업자 등록 실무	1시간
3교시	대부업의 회계	3시간

③ 교육 현황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서 대부업 관련 세무·회계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세무·회계만을 전문으로 한 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하였으나 수요는 예상 외로 저조

했다.

2개월에 1회 정도로 교육생 수요를 감안하여 최소 수강인원인 10인 이상일 경우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1회 교육진행시 평균 11명이 교육을 수강하였다.

<표 59> 세무·회계 교육 진행 횟수

(단위 : 회)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진행 횟수	2	5	4	11

※ 2011년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2013년10월 종료하였다.

<표 60> 연도별 세무·회계 교육 수강 인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수강 인원	23	57	58	138

※ 2011년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2013년10월 종료하였다.

(4) 대부관리사 자격증 도입

① 개요

대부업 종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및 일반상식 등을 함양하여 검증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013년도 협회 사업계획 중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민간자격시험제도가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사후 등록제에서 사전 등록제로 개정됨에 따라 2014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이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 등으로 도입이 또 다시 2015년도로 재연기되었다.

②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61>과 같다.

<표 61> 대부관리사 자격시험과목

자격시험 과목	
대부 관련 법률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채권추심법
	통합도산법
대부상담	대부상담 개요
	고객별 맞춤 상담기법
	대부거래약정 및 사례, 대부거래자 보호
리스크관리	신용리스크 관리, CB의 이해
	대부심사 기법
	사기방지 및 사례

채권회수관리	단계별 채권관리
	보전처분 실무
	집행권원 확보 및 민사집행 실무

③ 사이버연수 과정

자격시험 대비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표 62>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62〉사이버강의 구성 현황

구분	소비자금융 전문가 과정 1		소비자금융 전문가 과정 2	
	대부 관련 법률	채권회수관리	대부 상담	리스크 관리
구성	16차시	24차시	20차시	20차시
시간	총 8시간	총 12시간	총 10시간	총 10시간
기간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 회원사는 부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재 및 온라인 강의를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통해 진행하였다(약 75% 환급).

④ 사이버 강의 현황

2014년 3월부터 상시 실시하여 2개월씩 2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2014년 12월말 기준 총 63개 업체에서 2,33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표 63〉교육 과정 이수 현황

번호	회원사명	민간자격시험 대비 교육 과정		합계
		소비자금융 전문가 과정 1 (2개월)	소비자금융 전문가 과정 2 (2개월)	
1	리드코프	131	128	259
2	웰컴크레디라인대부	132	120	252
3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123	111	234
4	바로크레디트대부	100	100	200
5	에이앤티파이낸셜대부	91	90	181
6	친애저축은행	70	72	142
7	산와대부	69	66	135
8	태강대부	50	46	96
9	애니원캐피탈대부	35	33	68
10	KJ원더풀	33	32	65
11	액트캐쉬대부	29	29	58
12	에이원대부캐피탈	22	22	44
13	콜렉트대부	22	22	44
14	모아저축은행	21	21	42
15	미래크레디트대부	19	18	37
16	헬로우크레디트대부	18	18	36
17	애플캐피탈대부	18	17	35
18	엘하비스트대부	16	16	32
19	미즈사랑	13	13	26

20	위드캐피탈대부	13	12	25
21	나이스대부	11	11	22
22	원캐싱대부	11	11	22
23	하트캐싱대부	11	10	21
24	베스트캐피탈대부	10	9	19
25	머니라이프대부	8	8	16
26	씨엠코퍼레이션대부	7	8	15
27	하이캐피탈대부	7	8	15
28	굿타이밍대부	7	7	14
29	스타크레디트대부	8	6	14
30	엘씨대부	6	6	12
31	동그라미대부	5	6	11
32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4	4	8
33	씨씨콜렉션대부	4	4	8
34	씨앤브이투자대부	4	4	8
35	동아캐피탈대부	4	3	7
36	어드벤처대부	3	4	7
37	밀리언캐쉬대부	3	3	6
38	바리움홀딩스대부	3	3	6
39	씨에프피대부	3	3	6
40	웰컴크레디트홀딩스대부	3	3	6
41	유원캐피탈대부	4	2	6
42	인터머니대부	3	3	6
43	페어컬렉션대부	3	3	6
44	비컴콜렉션대부	3	2	5
45	유승산업대부	3	2	5
46	써니캐피탈대부	2	2	4
47	에이치유크레디트대부	2	2	4
48	웰릭스캐피탈대부	2	2	4
49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2	2	4
50	다인파트너스대부	1	1	2
51	대성사대부전당포	1	1	2
52	머스트플로트	1	1	2
53	아프로캐피탈	1	1	2
54	앰캐쉬대부	1	1	2
55	어프로치대부	1	1	2
56	엠에프뱅크대부	1	1	2
57	유미캐피탈대부	1	1	2
58	유아이크레디트대부	1	1	2
59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	1	1	2
60	프리드라이프	1	1	2
61	피제이자산관리대부	1	1	2
62	인스코퍼레이션	1	0	1
63	기타	6	6	12
합 계		1,190	1,145	2,335

7. 법·제도 개선 업무

1) 업무개요

지금까지 불법사채업자의 행위가 대부업계의 일반적인 현상인 듯 인식되어 왔고 정부도 대부업 시장의 개선보다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로 인해 대부업권은 타 금융업권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들이 많은 편인데 이는 합법적으로 법령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건전한 대부회사의 영업마저 위축시켜 금융소비자에 대한 긴급생활자금을 공급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부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부업법 및 관련 법령이 업계 및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개정 되도록 국회와 금융당국, 언론 등에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 법률 개정에 대한 대응

국회에 제류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대부업 유관 법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의견서를 유관 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2014년 말까지 유관 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는 <표 64>와 같다.

<표 64> 의견서 제출 현황

제출년도	법안 내용	제출처
2009년	[법무부] 이자제한법 개정안 - 이자제한법 위반 시 벌금형 추가	법무부
2010년	[금융위원회]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 - 제4조 등록의 제한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 -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금융위원회
	[권택기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업 설립요건의 허가제 전환	금융위원회
	[박준선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대부 광고 가능	금융위원회
	[심재철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광고 시간 규제	금융위원회
	[김우남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금감원의 대부업자 검사 가능	금융위원회

제출년도	법안 내용	제출처
2010년	[이범래 의원] 이자제한법 개정안 - 상한금리 연30%로 인하	법무부
	[김부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업법상 이자율 이자제한법상 이자율로 인하	금융위원회
	[정욱임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업자의 배상 책임	금융위원회
	[임영호 의원] 이자제한법 개정안 - 상한금리 연30%로 인하	법무부
2011년	[김부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상한금리 연30%로 인하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정욱임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업자의 중개 관련 손해배상책임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임영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연30%로 제한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조배숙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채권추심법 적용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이범래 의원] 이자제한법 개정안 - 상한금리 연30%로 인하	국회 법사위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박병석 의원] 이자제한법 개정안 - 상한금리 30%로 인하	국회 법사위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박선숙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상호저축은행 이자율 연30%로 제한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 상한금리 연 39%로 인하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5%)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 과잉대부기준 300만원으로 인하 - 광고시 주의문구 게재 등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실
2012년	[이범래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3%)	금융위원회
	[양승조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의 대부중개업 등록	금융위원회
	[김기준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상한금리 30%로 인하	금융위원회
	[김학용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금융감독원의 불법추심행위 정기검사	금융위원회

2012	[강기윤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여신금융기관 오인 상호·표현 사용 금지	금융위원회
	[이재영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업 실태조사결과 관보 및 인터넷 공개	금융위원회
	[홍종학 의원] 채권추심법 개정안 -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	법무부
	[서영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금융위원회
	[정부 발의]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5% 상한)	금융위원회
	[박성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300만원 이하 대출도 소득증명자료 징구	금융위원회
	[노회찬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상한금리 연20%로 인하	금융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참여연대] 대부업법 개정안 - 상한금리 연20%로 인하(이자제한법 준용)	금융위원회
	[서영교 의원] 채권추심법 개정안 -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	법무부
2013년	[박대동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불법 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이용정지	금융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노회찬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채권추심전문업을 대부업에서 제외 - 여신금융기관에도 과잉대부 금지 적용	금융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심상정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최소 순자산제(5억원) 도입 - 대부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입	금융위원회
	[송광호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최소 자본금제(1억원) 도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금융위원회
	[심재철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업자의 TV광고 시간대 제한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 국회 법사위 국회 입법조사처
	[정무위원회] 대부업법 개정안 - 법정상한금리 인하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
	[법제사법위원회] 채권추심법 개정안 - 대리인 선임 시 연락금지	금융위원회
	[민병두 의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매입 허용	금융위원회
2014	[이학영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회사의 TV광고 금지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 법사위 국회 입법조사처
	[김희선] 대부업법 개정안 - 대부회사의 매입채권에 대한 소송행위 등 금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

2014	[부좌현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광고 시 실제 적용되는 이자율 기재 등	금융위원회
	[전순옥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상한금리 연25%로 제한	금융위원회
	[이찬열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특정 소비자 우대, 배제, 구별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민홍철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제3자 담보제공 미확인 시 형사처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전부개정안 - 대부업 등록이원화 - 매입채권추심업 추가(상호: 대부추심) - 등록요건 강화(최소자본금, 보증금제) - 총자산 한도 규제, 협회 감독규정 도입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 여신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일부의 부대비용 인정 - 직권검사대상 선정 기준 변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일부개정안 - 대부업 등록이원화 - 등록요건 강화(최소자본금, 보증금제) - 총자산 한도 규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정무위 국회 입법조사처
	[김민기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 협회 주된 사무소를 정관에서 규정	금융위원회
	[이찬열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고유식별정보 필수적 암호화 등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 직권검사대상 대부업자의 은행연합회 정보집중 대상 포함	금융위원회

3) 제도 개선 건의

설립 이래 지금까지 협회에서는 대부업권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 65>와 같은 제도 개선 관련 건의를 유관기관에 제출해 왔다.

〈표 65〉제도 개선 건의 현황

제출연도	제안 내용	제출처
200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건의안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건의안	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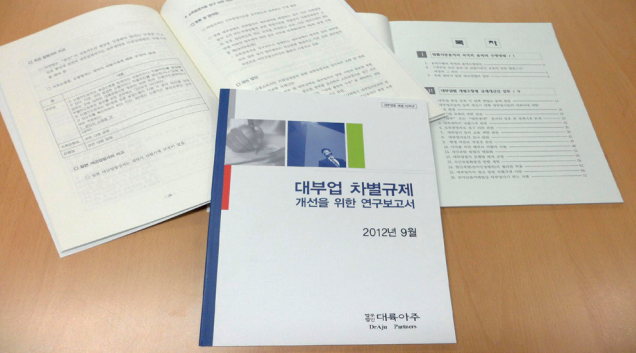
2011년	“소비자금융업법” 법 명칭 개정 건의서	이진복 의원, 금융위원회
	대부업 규제 개선 건의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 건의서	행정안전부
	대부중개인 감독체계 개선 건의서	권익위원회
	기업현장 애로 개선 건의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대부업 규제개선 건의서	상공회의소
2012년	기업현장 애로 개선 건의안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현장 애로 개선 건의안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불법사채 척결 방안 건의	국무총리실
	불법사채 광고 전화번호 사용정지 건의	방통위, 금융위원회
	대부업 업무위탁 건의	서울시 민생경제과
	대부업 제도개선 건의	서울시 민생경제과
	대부업 제도개선 건의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실
2013년	기업현장 애로 개선 건의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부금융업 경쟁제한 규제 개선 건의안	공정거래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	금융위원회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 보고서	금융위원회
2014년	기업현장 애로개선 건의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한도 개선 건의서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전부개정안 건의서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전부개정안 건의서	규제개혁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서	금융위원회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안 건의서	금융위원회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 정비 의견서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일부개정안 건의서	금융위원회

4) 차별규제 개선 건의

(1) 개요

협회에서는 건전한 대부업체의 영업을 규제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부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외에 20개 회원사 법무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부금융업 차별규제 철폐를 위한 TFT”를 발족하고 차별조항을 발

췌하는 한편 대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컨설팅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발행하였다. 발행된 보고서는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배포한 유관기관은 <표 66>과 같다.



▲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

(2) 내용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는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해 대부업권에 불합리하게 차별 적용되는 법령의 규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국의 대부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비교하고 대부업과 관련된 논문이나 도서, 정부의 문서 등을 토대로 검토한 후 일본의 대금업법과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되었다.

〈표 66〉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 배포 현황

배 포 처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 회	입법조사처,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국정운영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기획조정실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단
연구소	여의도 연구소, 민생경제정책연구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소비자원 등 다수
학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원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인하대학교, 경희대학교, 선문대학교, 단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언론계	mbn, 뉴시스, 서울경제TV, 헤럴드경제, SBS CNBC, 경향신문, 뉴스핌, 대한금융신문,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서울파이낸스,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투데이, 조선비즈, 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신문, 토마토TV
회원사	

제2부

대부업계 현황

대부업 시장 현황
회원사 현황

제1장 대부업 시장 현황

서민금융 활성화와 불법사채업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의장인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는 2007년 6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반기별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대부업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1. 등록업체 수 추이

1) 개요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연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 수를 정리해 보았다. 우선 업종별 현황의 경우 대부업만 등록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만 등록한 대부중개업체 그리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대부 및 중개업체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대부업 등록을 한 총 대부업체 수는 대부업체 수에 대부 및 중개업체수를 가산해야 하며, 중개업 등록을 한 총 중개업체 수도 중개업체 수에 대부 및 중개업체 수를 가산해야 한다.

2) 업종별 등록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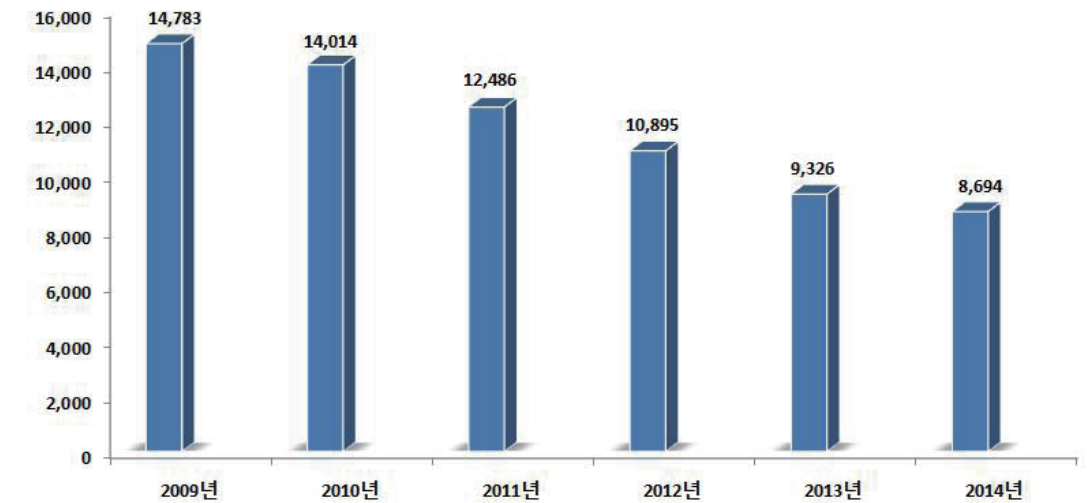
그래프와 표를 보면 2009년 이후 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업 양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되고 음성대부업체가 등록을 하게 되면서 등록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었다. 하지만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66%였던 대부업법의 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등 대부업권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등록업체 수는 감소를 거듭하였고 급기야 2009년 대비 2014년에는 무려 41%가 감소하였다. 특히 비대면 대부 권유 영업 제한 및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등으로 대부중개업체의 감소폭이 대부업체에 비해 큰 편이다.

〈표 67〉 업종별 등록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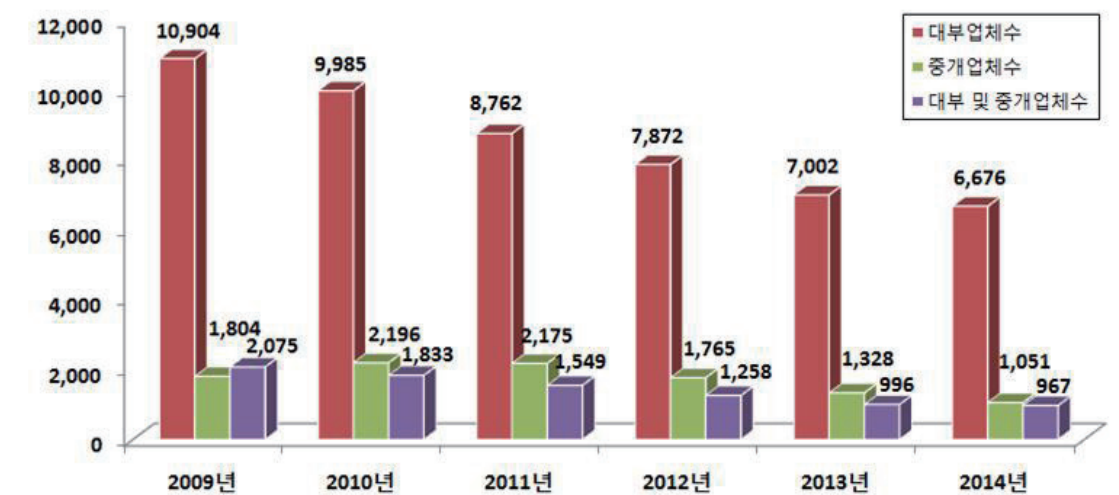
(단위 : 개)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부업체수	10,904	9,985	8,762	7,872	7,002	6,676
중개업체수	1,804	2,196	2,175	1,765	1,328	1,051
대부 및 중개업체수	2,075	1,833	1,549	1,258	996	967
총 업체 수	14,783	14,014	12,486	10,895	9,326	8,694

〈그림 11〉 총 등록업체 수 추이



〈그림 12〉 업종별 등록업체 수 추이



3) 규모별 등록업체 현황

대부업체와 중개업체를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고 법인은 다시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과 100억원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단, 2009년의 경우에는 자산 70억원 이상과 70억원 미만으로 구분하여 조사했지만 편의상 표기를 생략하고 자산 100억원 이상과 100억원 미만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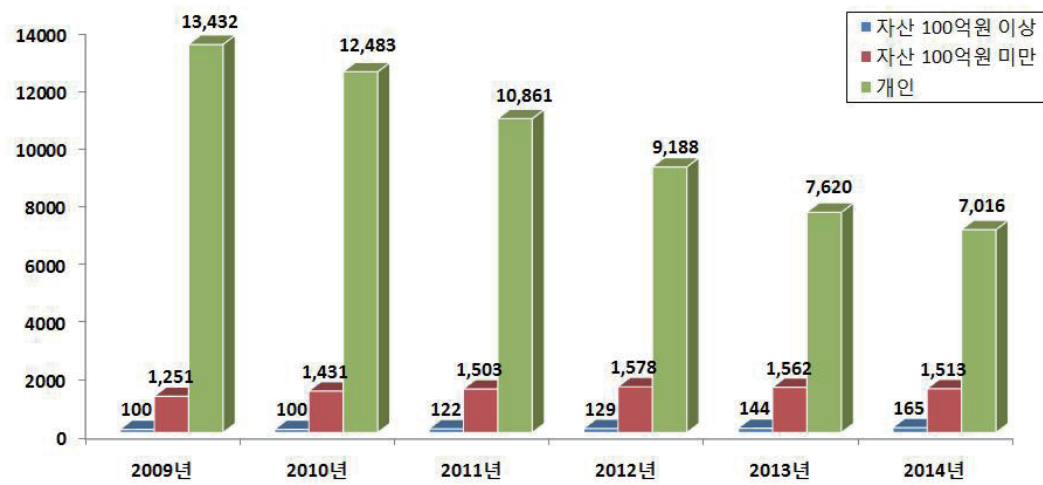
2009년 이후 개인 업체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 중 자산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이자율 인하와 규제 강화로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업체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68〉 규모별 등록업체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1,351	1,531	1,625	1,707	1,706	1,678
자산 100억원 이상	100	100	122	129	144	165
자산 100억원 미만	1,251	1,431	1,503	1,578	1,562	1,513
개인	13,432	12,483	10,861	9,188	7,620	7,016
총 업체 수	14,783	14,014	12,486	10,895	9,326	8,694

〈그림 13〉 규모별 등록업체 수 추이



2. 규모별 거래자 현황

대부업자 등은 대부업법 제12조 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보고서를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기준일 다음 달 말일 즉 7월 31일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도 이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제16조에 따라 대부업자 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조사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영업실태 조사가 앞에서 언급한 대부업 실태조사이다.

하지만 등록을 하고서도 영업실태를 보고하지 않는 대부업체도 있으며,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대출 잔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작성 오류가 심한 업체는 영업현황 분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가 등록된 대부업체 전체의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우선 전체 대부업 거래자를 살펴보면 2009년 말 168만명이었던 거래자가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 말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별 대부업 거래자를 살펴보면 전체 대부업 거래자 중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을 이용하는 거래자가 80~9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4년의 경우 전체 대부업 거래자 중 91%가 100억원 이상 법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규모별 대부업 거래자 현황

(단위 :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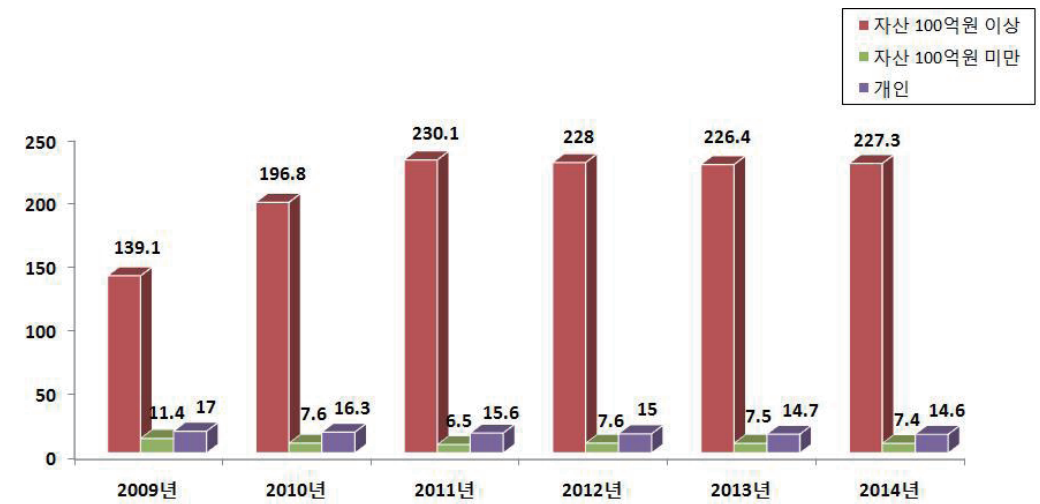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150.5	204.4	236.6	235.6	233.9	234.7
자산 100억원 이상	139.1	196.8	230.1	228.0	226.4	227.3
자산 100억원 미만	11.4	7.6	6.5	7.6	7.5	7.4
개인	17.0	16.3	15.6	15.0	14.7	14.6
총 거래자 수	167.5	220.7	252.2	250.6	248.6	249.3

※ 2009년의 경우 자산 70억원 이상과 자산 70억원 미만

〈그림 14〉 대부업 거래자 수 추이



〈그림 15〉 규모별 대부업 거래자 수 추이



3. 대출 잔액 현황

대출 잔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에 대출 잔액이 한차례 감소했지만 이는 자산 100억원 이상의 법인의 대출 잔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부업 시장이 성장을 계속하는 것은 장기 불황으로 서민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서민의 자금수요가 증가한 점과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준법 영업이 정착되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층이 다양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대출 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법인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이 개인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특히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의 대출 잔액은 2014년말 기준 9조 9천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의 89%를 차지했다. 대출 형태별 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2014년말 기준 신용대출이 9조 3천억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의 84%를 차지했는데 이와 같은 비중은 2010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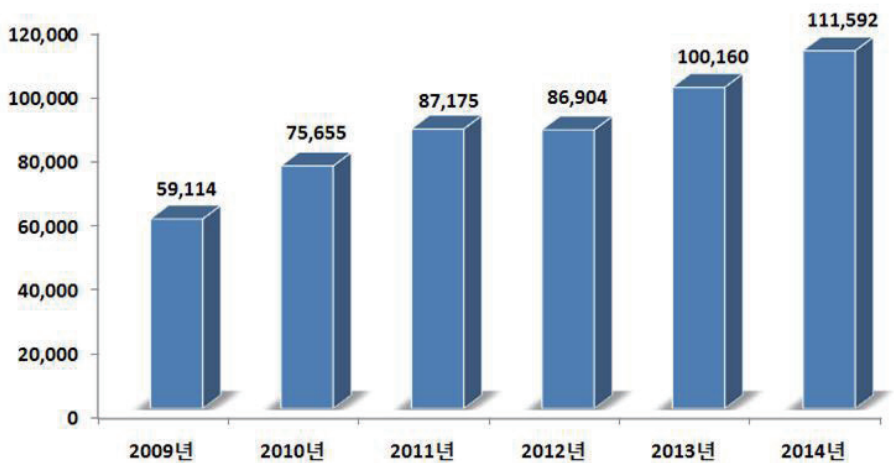
〈표 70〉 규모별 대출 잔액 현황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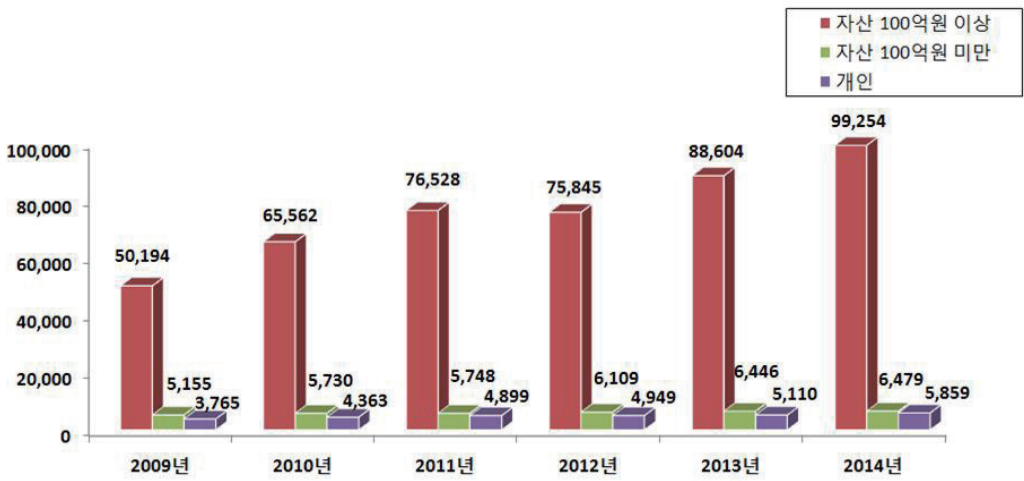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55,349	71,292	82,276	81,954	95,050	105,733
자산 100억원 이상	50,194	65,562	76,528	75,845	88,604	99,254
자산 100억원 미만	5,155	5,730	5,748	6,109	6,446	6,479
개인	3,765	4,363	4,899	4,949	5,110	5,859
총 대출 잔액	59,114	75,655	87,175	86,904	100,160	111,592

※ 2009년의 경우 자산 70억원 이상과 자산 70억원 미만

〈그림 16〉 총 대출 잔액 추이



〈그림 17〉 규모별 대출 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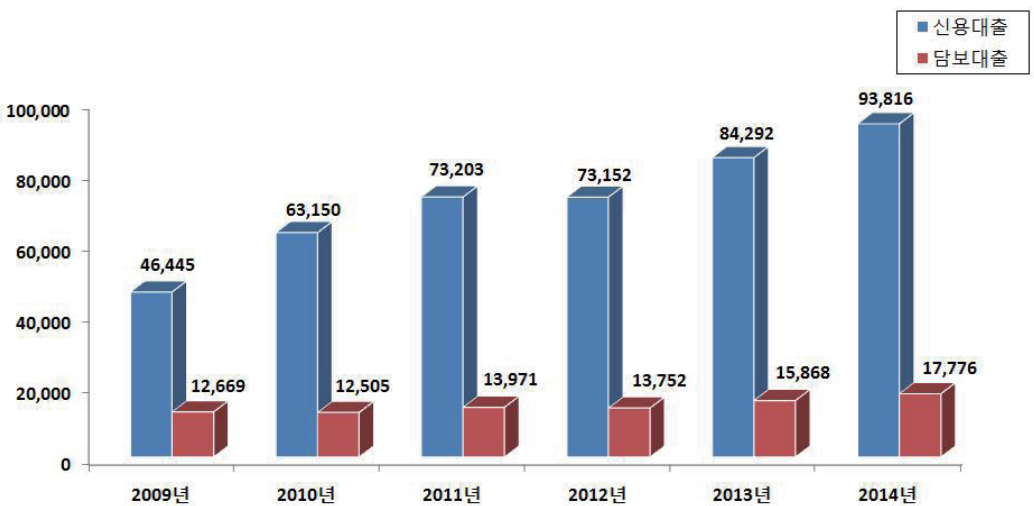
〈표 71〉 대출 형태별 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용대출	46,445	63,150	73,203	73,152	84,292	93,816
담보대출	12,669	12,505	13,971	13,752	15,868	17,776
총 대출 잔액	59,114	75,655	87,175	86,904	100,160	111,592

※ 2009년의 경우 자산 70억원 이상과 자산 70억원 미만

〈그림 18〉 대출 형태별 잔액 추이



4. 차입 현황

실태조사를 제출한 업체 중 대부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업체, 신용회복기금 등과 같은 특수기관을 제외한 업체의 차입 현황은 <표 72>와 같다. 전체적으로 차입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의 경우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차입처별로 차입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차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 차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개인 등에게 차입한 일반 차입 보다는 금융회사 차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차입금리를 살펴보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권의 차입금리도 인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 대부업자의 경우 2011년 대비 3% 인하되었지만 타 금융권에 비해 여전히 차입금리가 높은 편이다.

<표 72> 차입금 및 차입금리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차입금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47,023	45,136	52,996	63,227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8,535	8,419	10,683	9,975
	개인		1,897	1,965	2,280	2,317
합계			57,455	55,520	65,959	75,519
차입처	금융회사	국내	26,211	26,249	32,584	35,254
		해외	1,835	714	627	316
	일반차입 (개인 등)	국내	11,505	11,462	16,769	24,943
		해외	10,708	10,197	7,680	6,400
	회사채(사모) 발행		7,196	6,897	8,299	8,606
차입 금리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9.5%	9.0%	8.5%	7.7%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10.7%	9.3%	9.2%	8.0%
	개인		10.7%	10.0%	8.3%	7.7%

5. 재무 · 손익 현황

대부업 실태조사를 제출한 업체 중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전업 대부업체의 재무 · 손익 현황은 <표 73>과 같다. 우선 업체수의 경우 분석 대상이 된 업체수를 말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산 및 대출금, 자기자본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산과 대출금의 증가는 분석 대상 업체수의 증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체당 평균 자산과 대출금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산의 경우 2011년에는 업체당 평균 1,306억원이었던 데 비해 2014년에는 1,203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대출금의 경우 2011년에는 1,198억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1,053억원으로 감소했다. 당기순익 또한 전체 당기순익 금액은 2011년 대비 2014년에 큰 폭

으로 증가했지만 업체별 평균 당기순익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6% 감소했다.

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대비 2014년의 경우 35.7%에서 39.0%로 다소 증가했으며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9.0%에서 57.1%로 다소 감소하였다.

<표 73> 재무 · 손익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업체 수	61	63	71	92
자산	79,692	81,283	93,477	110,658
대출금	73,088	73,255	86,527	96,913
자기자본	28,452	31,913	36,352	43,140
부채	51,240	49,370	57,125	67,518
차입금	47,023	45,136	52,996	63,227
당기순익	3,788	4,728	3,339	5,450

6. 대부중개업 현황

1) 개요

대부중개업이란 금전 대부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대부업법이 2009년 1월 개정되기 전까지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구분하지 않아 대부업 등록만으로도 대부중개가 가능하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중개업체는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 감독을 직접 받게 되었다.

<표 74> 대부중개업체 현황의 경우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의 실적을 정리한 관계로 전체 대부중개시장의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개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 업체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업 시장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74〉 대부중개업체 현황

(단위 : 개, 건,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중개업체수	772	914	1,025	800	646	551
중개건수	250,814	328,227	35,8	52,5	46,7	40,6
중개금액	7,479	11,565	14,578	22,007	21,574	9,293
수입수수료	454	707	858	1,349	886	701
수수료율	6.1	6.1	6.2	6.1	4.1	4.4

※ 중개업체수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중개업체 수를 말하며, 중개건수의 경우 2011년 12월말 이후부터는 만건으로 표기

2) 대부중개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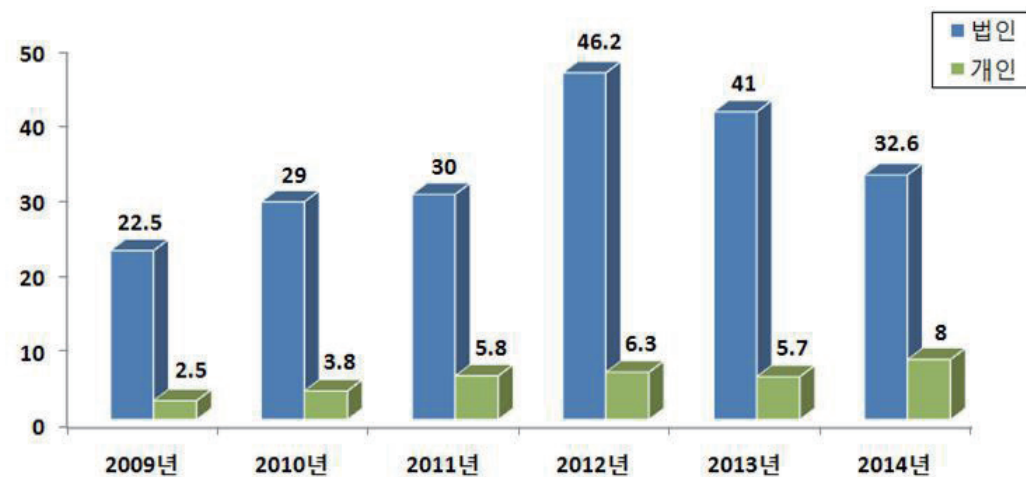
세부적인 항목별로 대부중개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대부중개건수 추이의 경우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대부중개업체와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 2013년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다. 개인과 법인의 비중을 살펴보면 법인 대부중개업체의 중개건수가 개인 대부중개업체의 4배에 달하며 이중 상위 10개 업체의 중개건수는 전체 대부 중개건수의 63%에 달한다.

〈표 75〉 대부 중개 건수 현황

(단위 : 만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22.5	29.0	30.0	46.2	41.0	32.6
상위 10개 업체		23.9	20.8	17.6	24.5	25.4
개인	2.5	3.8	5.8	6.3	5.7	8.0
총계	25.0	32.8	35.8	52.5	46.7	40.6

〈그림 19〉 대부 중개 건수 추이



3) 대부중개금액

대부중개금액 또한 대부중개건수와 마찬가지로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대부 권유 제한과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등으로 중개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인 대부중개업자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위 10개사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 대부중개건수는 증가기조로 돌아섰는데 중개금액은 감소하고 있다.

〈표 76〉 대부중개금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6,131	9,461	10,926	19,163	18,762	12,846
상위 10개 업체		6,803	7,359	11,076	12,590	10,358
개인	1,348	2,104	3,652	2,844	2,812	3,284
총계	7,479	11,565	14,578	22,007	21,574	16,130

〈그림 20〉 대부 중개 금액 추이



4) 대부중개업 수입수수료

수입수수료의 경우도 중개금액과 동일하게 2012년을 정점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상위 10개 중개업체의 수입수수료가 전체 수입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014년말 기준 상위 10개 중개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69%로 상위 10개사의 과점화 현상은 여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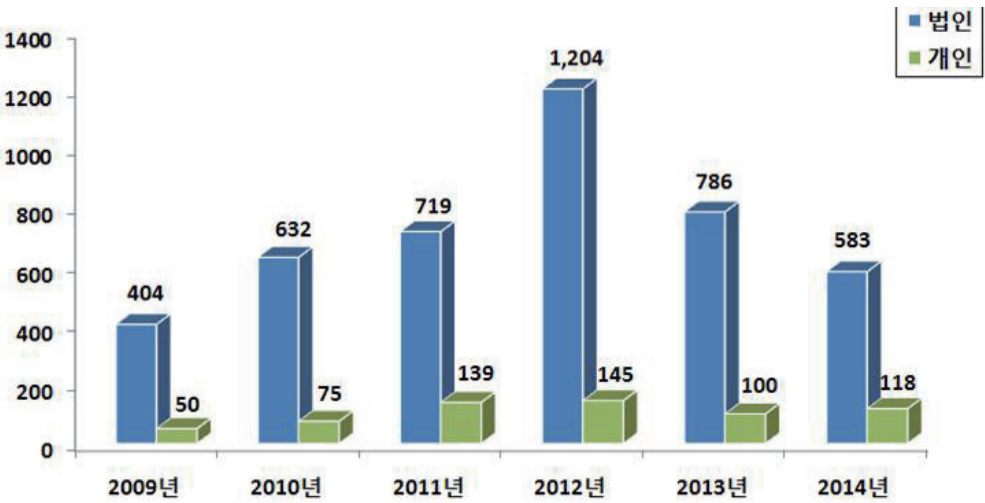
중개수수료율의 경우 2013년 6월 12일 중개수수료율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큰 폭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상위 10개사의 경우 2010년 7.3%에서 2014년 4.6%로 무려 2.7%가 인하되었다.

〈표 77〉 대부중개업 수입수수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404	632	719	1,204	786	583
상위 10개 업체		494	516	694	525	481
개인	50	75	139	145	100	118
총계	454	707	858	1,349	886	701

〈그림 21〉 대부중개업 수입수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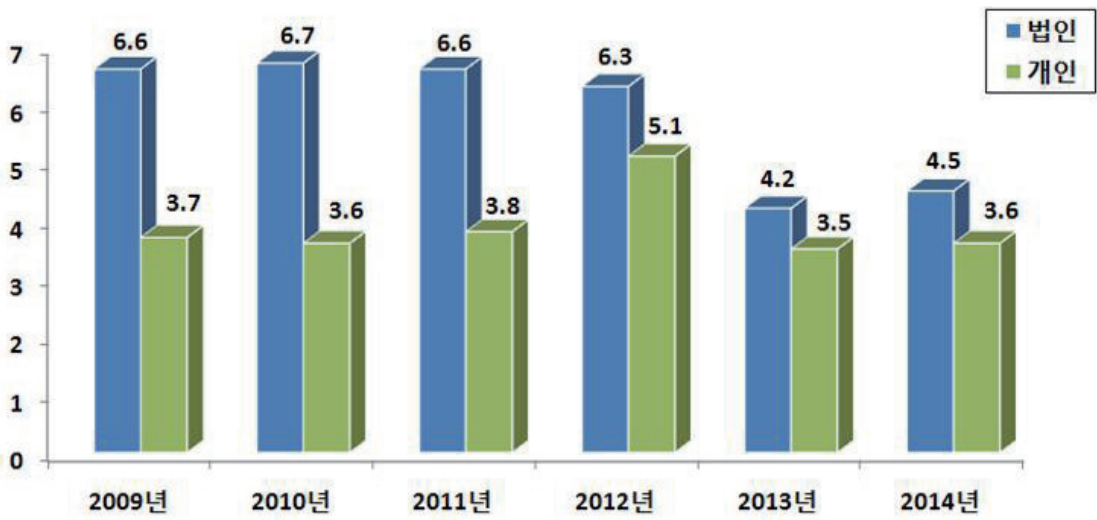


〈표 78〉 대부중개수수료율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6.6	6.7	6.6	6.3	4.2	4.5
상위 10개 업체		7.3	7.0	6.3	4.2	4.6
개인	3.7	3.6	3.8	5.1	3.5	3.6
총계	6.1	6.1	6.2	6.1	4.1	4.4

〈그림 22〉 대부중개수수료율 추이



제2장 회원사 현황

본 백서 제작을 위해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전회원사를 대상으로 회원사 현황을 조사하였으나 164개(2014년 末 회원사 기준)의 회원사만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협회 회원사 중 회원 수가 제일 많은 채권추심업체가 비교적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으나, 소액 신용대출을 주업으로 하는 대부분의 소비자금융업체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협회 전체 회원 수를 고려할 때 자료를 제출한 업체가 적은 편이지만 상위 대형 대부업체의 현황 자료가 모두 반영되었기에 데이터는 비교적 신뢰할 만 하다.

1. 회원사 수 추이

1) 영업형태별 회원사수 추이

협회 창립 시 68개사였던 회원사는 이후 542개의 대부회사가 신규 가입하였으나, 그 중 332개 회원사가 영업부진과 폐업 등의 사유로 협회를 탈퇴하여, 실제 순수하게 증가한 회원사는 창립일 이후 210개사에 이르고 있다. 특히, 담보대출업체나 대부중개업체의 경우 영업부진과 대부업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채권추심(자산관리)업체의 수는 2013년 ~ 2014년 사이 급증하였다. 채권추심업체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채권추심업체의 규모가 대부분 금융감독원 직권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79〉 연도별 회원사 추이

(단위 : 개)

구분 \ 연도	창립시 (2009.05)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용대출	39	84	93	99	105	104	103
담보대출	24	58	58	47	42	43	48
대출중개	4	14	31	30	26	18	10
채권추심	1	3	10	19	49	77	94
검 업	—	—	25	27	29	26	23
합 계	68	159	217	222	251	268	278

※ 검업사 : 대부업 이외의 유통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로 실제 대부업의 영업수익보다 타 업종의 매출액이 큰 회사를 말한다.

2) 의무가입 및 자율가입업체 추이

의무가입업체란 대부업 법령에 의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체를 말하며, 해당 의무 가입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예외 없이 가입하여야 한다. 반대로 자율가입업체란 법령과 관계없이 협회에 자율적으로 가입한 업체를 말한다.

〈표 80〉 가입의사별 회원사 추이

(단위 : 개)

구분 \ 연도	창립시 (2009.05)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의무	12	68	77	84	121	129	164
자율	56	91	140	138	130	139	114
합계	68	159	217	222	251	268	278

※ 협회 의무가입업체 기준(2014년 말까지 적용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들의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이상이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법인인 대부업자 등이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3) 대출 잔액 규모별 회원사수 추이

협회 창립 이후 대출 잔액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회원사는 15개사에 이른다. 이 중 그린씨앤에 프대부를 제외한 14개 회원사가 소액 신용대출을 주업으로 하는 회원사이다. 창립 초기 5백억원 이상의 회원사(1천억원 업체 포함)는 8개 업체였으나 2014년 12월 末 현재 29개사에 이르고 있다.

〈표 81〉 대출잔액 규모별 회원사 추이

(단위 : 개)

구분 \ 연도	창립시 (2009.05)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천억원 이상	4	7	9	12	14	14	15
5백억원 ~ 1천억원	4	5	7	7	11	16	14
1백억원 ~ 5백억원	30	33	34	36	32	31	33
1백억원 이하	30	114	167	167	194	207	217
합 계	68	159	217	222	251	268	278

4) 유형별 추이(개인/법인)

협회 소속 회원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경우 <표 82>와 같이 개인업체의 수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법인업체 수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지속적인 규제 강화와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었고 특히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 대부업체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82> 유형별 회원사 추이 (단위 : 개)

구분 \ 연도	창립시 (2009.05)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개인	12	34	52	42	34	27	21
법인	56	125	165	180	217	241	257
합계	68	159	217	222	251	268	278

2. 회원사 점포 현황

<표 83>의 회원사 점포 현황은 278개(2014. 12. 末 기준) 회원사 중 본 백서 제작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164개 회원사의 본점 및 지점의 현황이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사의 점포를 1업체당 1개 점포로 가정한다면 최소 476개(2014. 12. 末 기준)의 회원사 점포가 운영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3> 회원사 점포 현황 (단위 : 개)

점포 연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라	대전 충청	강원	제주	합계
2012년	184	55	45	21	23	25	5	3	361
2013년	178	48	41	21	23	23	5	3	342
2014년	201	52	40	20	21	21	5	2	362

※ 2012년 170개 업체, 2013년 138개, 2014년 164개 업체 설문참여

3. 회원사 종업원 현황

278개 회원사 중 본 백서 제작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164개 회원사의 종업원 현황을 직급과 고용형태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64개 회원사에 총 6,328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이 전체의 7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중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2014년판 고용노동백서 중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참조

이 2013년 기준 67.4%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부업권의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타 업권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84> 직급별 회원사 종업원 현황 (단위 : 명, %)

연도	직급	사원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합계
2012년 2012년	인원	3,315	968	878	454	171	105	284	6,175
	비율	53.7	15.6	14.2	7.3	2.7	1.7	4.5	100
2013년 2013년	인원	3,030	1,175	889	378	131	97	289	5,989
	비율	50.6	19.6	14.8	6.3	2.2	1.6	4.8	100
2014년 2014년	인원	3,278	1,152	938	382	141	122	315	6,328
	비율	51.8	18.2	14.8	6.0	2.2	1.9	5.0	100

※ 단, 겸업사의 경우 대부업 담당자만 포함

<표 85> 고용형태별 회원사 종업원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합계
2012년 2012년	인원	5,046	768	361	6,175
	비율	81.8	12.4	5.8	100
2013년 2013년	인원	4,695	784	510	5,989
	비율	78.4	13.1	8.5	100
2014년 2014년	인원	4,898	769	661	6,328
	비율	77.4	12.2	10.4	100

※ 단, 겸업사의 경우 대부업 담당자만 포함

4. 회원사 현황

2015년 6월 11일 기준 289개 회원사 현황은 <표 86>과 같으며, 업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신용대출
<표 86> 회원사 현황

NO	회원번호	회사명	대표	협회 가입일
1	A00001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심상돈	2009-04-30
2	A00002	산와대부(주)	이동신	2009-04-30
3	A00003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장세영	2009-04-30
4	A00006	원캐싱대부(주)	심상돈	2009-04-30
5	A00007	(주)바로크레딧대부	김충호	2009-04-30
6	A00009	(주)태강대부	라영배	2009-04-30
7	A00010	(주)위드캐피탈대부	김정환	2009-04-30
8	A00013	(주)머니라이프대부	김경조	2009-04-30
9	A00014	(주)하트캐싱대부	나카무라분쿄(이문경)	2009-04-30
10	A00015	(주)스타크레딧대부	강영훈	2009-04-30
11	A00016	(주)유아이크레딧대부	강영훈	2009-04-30
12	A00017	(주)밀리언캐쉬대부	강영훈	2009-04-30
13	A00019	(주)마리모대부	정명웅	2009-04-30
14	A00020	(주)미래크레딧대부	나카무라마사키(이창수)	2009-04-30
15	A00021	(주)에이원대부캐피탈	주환곤	2009-04-30
16	A00023	(주)엑트캐쉬대부	강동길	2009-04-30
17	A00024	(주)콜렉트대부	김경조	2009-04-30
18	A00028	(주)엘하비스트대부	김상수	2009-04-30
19	A00029	(주)조이크레딧대부금융	쿠니모토 마사히로	2009-04-30
20	A00030	앤알캐피탈대부(주)	김순범	2009-04-30
21	A00031	(주)굿타이밍대부	이정술,나카무라분쿄	2009-04-30
22	A00040	제이파이낸셜라인대부(주)	장영택	2009-04-30
23	A00042	(주)비컴콜렉션대부	이정술,나카무라마사키	2009-04-30
24	A00043	(주)아스리트대부	강상훈	2009-04-30
25	A00049	(주)미즈사랑대부	심상돈	2009-04-30
26	A00005	(주)리드코프	김철우	2009-05-12
27	A00008	(주)베르넷크레딧대부	오오이시 타카히로	2009-05-14
28	A00011	와이티캐피탈대부(주)	김성대	2009-05-15
29	A00026	(주)굿이에프대부	박병두	2009-05-15

30	A00037	(주)티에스신용투자대부	김상정	2009-05-27
31	A00075	세경파이낸스대부(주)	심명규	2009-06-19
32	A00077	베스트캐피탈대부(주)	김웅규	2009-06-22
33	A00084	(주)서울코스모홀딩스대부	박성희	2009-07-02
34	A00090	(주)희망만드는사람들대부	김희철	2009-07-31
35	A00100	(주)굿모닝캐피탈대부	임정민	2009-10-01
36	A00101	해피크레디라인대부(주)	배석원	2009-10-05
37	A00124	에비스대부(주)	이형대	2010-02-02
38	A00125	애니원캐피탈대부(주)	금영섭	2010-02-03
39	A00134	네오라인크레딧대부(주)	와타나베 타카시	2010-03-19
40	A00137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김재섭	2010-05-25
41	A00142	(주)태산대부	부동훈	2010-06-16
42	A00144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	심형석	2010-06-17
43	A00152	(주)인터머니대부	김정환	2010-08-30
44	A00157	(주)성원앤대부	김성진	2010-09-15
45	A00159	(주)동그라미대부	이형열	2010-09-27
46	A00163	아이앤유크레딧대부(주)	김봉진,박치선	2010-11-01
47	A00175	(주)서울캐싱대부	장은정	2011-01-20
48	A00180	(주)아크코리아대부	장성길	2011-03-11
49	A00184	대산대부(주)	임병헌	2011-03-21
50	A00188	(주)디딤캐피탈대부	안영복	2011-03-29
51	A00198	에스앤케이파머스대부(주)	국종하	2011-04-07
52	A00202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김재섭	2011-04-26
53	A00203	(주)칸도인베스트대부	오이시타가히로	2011-05-03
54	A00215	(주)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	김영석	2011-09-09
55	A00216	(주)서울기업금융대부	윤대병	2011-09-22
56	A00217	서브코리아대부(주)	김성은	2011-09-26
57	A00219	(주)에이비씨론대부	최진혁	2011-10-07
58	A00224	(주)에이스비즈니스앤대부	박건호	2012-02-10
59	A00227	(주)크라운홀딩스대부	이한영	2012-04-18
60	A00229	(주)마살플랜대부	이동민	2012-04-30
61	A00233	(유)엠펀드대부	정총자	2012-07-25
62	A00237	(주)엔씨캐피탈대부	허정우	2012-08-06
63	A00238	에이치유크레딧대부(주)	양석원	2012-08-07
64	A00247	(주)그린씨앤에프대부	최덕식	2012-08-24
65	A00249	(주)씨엔에이대부	김철원	2012-08-24
66	A00254	(주)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	강대호	2012-08-31
67	A00267	(주)에이앤디대부	조태율	2012-09-25

68	A00271	(주)에이치엠대부	신헌석	2012-10-18
69	A00272	(주)샤인캐피탈대부	송광웅	2012-10-22
70	A00274	(주)안전대부	민경택	2012-10-29
71	A00281	(주)골든캐피탈대부	박은섭	2012-12-14
72	A00285	케이제이머니대부(주)	이호식	2013-01-09
73	B00113	M.C기획대부	김도윤	2013-03-29
74	A00297	(주)에이스파이낸셜대부	김진호	2013-04-08
75	A00303	(주)디케이대부	장동환	2013-05-22
76	B00116	유지대부캐피탈	김익겸	2013-05-27
77	A00307	(주)케이앤피파이낸셜대부	임철우	2013-06-20
78	A00308	(주)에이피엘파이낸셜대부	박익례	2013-07-16
79	A00312	(주)메리티지대부	김건우	2013-07-25
80	A00320	(주)뉴아리원대부	민경선	2013-07-31
81	A00326	유미캐피탈대부(주)	최수용	2013-08-30
82	A00330	(주)애브로드대부	김억	2013-10-01
83	A00331	더블유파이낸셜대부(주)	신재용	2013-10-02
84	A00332	(주)넥스젠파이낸스대부	구본영	2013-10-02
85	A00333	헬로우크레딧대부(주)	이혁진	2013-10-04
86	A00334	(주)캐시앤캐시대부	최용환	2013-10-17
87	A00337	모두캐피탈대부(주)	배석원	2013-11-11
88	A00339	써니캐피탈대부(주)	우영제	2013-11-29
89	A00342	엠알앤디대부(주)	황재호	2013-12-30
90	B00118	인포머니대부	양충헌	2013-12-30
91	A00345	(주)투에스대부	김진택	2014-03-25
92	A00346	유원캐피탈대부(주)	금영섭	2014-04-09
93	A00364	소비자금융대부(주)	서명호	2014-08-11
94	A00368	(주)엠케이금융대부	임성빈, 김희환	2014-08-14
95	A00384	(주)엠에이치투자금융대부	김민혁	2014-10-27
96	A00387	엘로우캐피탈대부(주)	이혁진	2014-10-27
97	B00122	SB캐피탈대부	이상봉	2014-11-04
98	A00395	(주)오케이파이낸셜대부	장필상	2014-12-31
99	A00398	(주)위너스대부	이주선	2015-01-13
100	A00400	새한크레딧대부(주)	이희익	2015-01-30
101	A00412	(주)라인대부	김철수	2015-04-13
102	A00413	(주)태영캐피탈대부	한원석	2015-05-07

● 담보대출

NO	회원번호	회사명	대표	협회 가입일
1	A00027	(주)강남캐피탈대부	지흥진	2009-04-30
2	A00055	나라대부금융(주)	우병일	2009-04-30
3	A00057	오케이캐피탈대부(주)	이용문	2009-04-30
4	A00058	유승산업대부(주)	허승빈	2009-04-30
5	A00061	(주)탑대부캐피탈	장주형	2009-04-30
6	A00064	(주)에치제이인베스트먼트에이엠씨대부	김항주	2009-04-30
7	A00066	와이앤금융파트너스대부(주)	안희권	2009-04-30
8	B00008	(주)아세아캐피탈대부금융	김영두	2009-04-30
9	B00014	G.M캐피탈대부	이종인	2009-04-30
10	A00052	현대기업금융대부(주)	김재근	2009-05-13
11	A00073	(주)동아캐피탈대부	김상진	2009-05-14
12	A00054	(주)부영대부파이낸스	김시병	2009-05-18
13	B00007	성진베스트론대부	원종혁	2009-05-18
14	A00081	(주)에이트원대부	허수	2009-06-26
15	A00085	아리엘에셋대부(유)	정영수	2009-07-09
16	A00107	목동에셋(주)대부	김용필	2009-10-22
17	A00116	(주)해방새대부	김해	2009-12-11
18	A00140	(주)새한캐피탈대부	최정윤	2010-06-11
19	B00054	노블캐쉬대부	이성형	2010-09-07
20	A00171	케이비캐피탈대부(주)	김재문	2010-12-15
21	B00064	한일투자대출대부	심재경	2011-01-14
22	A00199	(주)채움캐피탈대부	나진영	2011-04-13
23	A00213	(주)기협기술금융대부	성낙중	2011-07-15
24	B00089	편아일랜드대부	장길태	2012-03-28
25	B00090	우신대부	성화순	2012-04-12
26	B00104	퍼스트캐시전당포대부	이정순	2013-02-06
27	B00105	제일사전당포대부	김영길	2013-02-06
28	B00106	강남명품전당포대부	서만금	2013-02-06
29	B00107	무지개사전당포대부	김병식	2013-02-06
30	B00108	대성사전당포대부	김수경	2013-02-06
31	B00110	미즈전당포대부	송금재	2013-02-06
32	A00296	마더스(주)대부	신욱철	2013-04-08
33	A00300	카네이션대부(주)	윤유진	2013-04-26
34	A00325	(주)다인파트너스대부	차광호	2013-08-23
35	A00328	(주)월드피에프대부	소병근	2013-09-25
36	B00120	휴먼브릿지론대부	김제환	2014-01-29
37	A00350	(주)오티오대부	김용석	2014-07-04
38	A00356	(유)머스트대부금융	김홍천	2014-07-31
39	A00366	(주)찬호론대부	김팔호	2014-08-14

40	A00369	(주)구구스	이기훈	2014-08-19
41	A00373	(주)구구스영남	박종규	2014-08-21
42	A00378	(주)마이파이낸셜대부	이준홍	2014-09-02
43	A00385	아이씨지코리아대부파이낸스(유)	링아이첸	2014-10-27
44	B00121	비너스대부	김정행	2014-10-27
45	A00393	벨류대부모기지(유)	이상중	2014-11-21
46	A00394	(주)홍앤드홍대부	이점섭	2014-11-25
47	A00397	비전투자대부(주)	윤훈	2014-12-31
48	A00406	지비애셋앤대부인베스트먼트(주)	허준	2015-03-19
49	A00408	(주)다원대부	마원식	2015-03-27

● 대출중개

NO	회원번호	회사명	대표	협회 가입일
1	C00012	한국이지론(주)	이상권	2010-01-07
2	C00018	(주)파워캐피탈대부중개	이제혁	2010-07-12
3	C00039	(주)오제이대부중개	한경일	2012-09-11
4	C00044	(주)도움컴퍼니대부중개	김기찬	2014-02-12
5	C00045	(주)론메이드대부중개	최정관	2014-03-04
6	C00046	(주)드림앤캐시대부중개	김병호	2014-03-28
7	C00047	코인력닷컴대부(주)	구봉우	2014-08-14
8	C00048	(주)레오대부중개	김대영	2014-11-19
9	D00042	삼삼캐시대부	이관운	2015-01-08
10	C00049	(주)더원대부중개	백동준	2015-03-20
11	C00050	(주)리치앤리치대부중개	정균홍	2015-03-25
12	C00051	(주)론모닝대부중개	김찬섭	2015-03-27
13	C00052	(주)뉴원대부중개	김성영	2015-04-03

● 채권추심

NO	회원번호	회사명	대표	협회 가입일
1	A00004	티에이자산관리대부(유)	마츠오카 카즈유키	2009-05-13
2	A00012	에스캐피탈대부(주)	심상돈	2009-04-30
3	A00045	(주)케이아이코아즈대부	코노마사히로	2009-04-30
4	A00051	(주)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	김숙정	2009-05-11
5	A00046	(주)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최병철	2009-05-12
6	A00123	씨앤브이투자대부(주)	노인영	2010-01-28
7	A00158	(주)어프로치대부	강영훈	2010-09-16
8	A00160	(주)나이스대부	김경조	2010-10-14
9	A00162	(주)에프이푸른하늘대부	이승희	2010-10-19
10	A00170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주)	김성대	2010-12-10

11	A00177	와이케이대부(주)	이세윤	2011-01-31
12	A00178	(주)페어컬렉션대부	김상수	2011-02-22
13	A00182	(주)오리온캐피탈대부	이상원	2011-03-17
14	A00183	웰릭스캐피탈대부(주)	금영섭	2011-03-17
15	A00187	(주)엘씨대부	김종건	2011-03-29
16	A00189	(주)씨씨콜렉션대부	나카무라분쿄	2011-03-30
17	A00207	디엔피에이엠씨대부(주)	강대현	2011-06-17
18	A00212	(주)와이엘대부	야마기시 마사야수	2011-07-11
19	A00234	솔로몬에이엠씨대부(주)	김윤식	2012-07-25
20	A00239	큐브자산관리대부(주)	이도석	2012-08-10
21	A00242	(유)대부에스앤비	박성민	2012-08-17
22	A00245	유앤아이대부(유)	류종찬	2012-08-17
23	A00246	(주)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	여인수	2012-08-23
24	A00250	프리머스아이비(유)	김종화	2012-08-24
25	A00251	그린에셋대부(유)	김진수	2012-08-31
26	A00252	나이스제1차대부(유)	유재익	2012-08-31
27	A00255	라운에셋대부(유)	강계흥	2012-08-31
28	A00257	유니애대부(유)	이상철	2012-08-31
29	A00259	에스플러스자산관리대부(유)	염철호	2012-08-31
30	A00261	동서자산관리대부(주)	변동훈	2012-09-07
31	A00262	케이제이대부(유)	신재식	2012-09-07
32	A00264	엠메이드대부(유)	정미숙	2012-09-15
33	A00268	(유)블루버드대부	변정훈	2012-09-25
34	A00276	이오스자산관리제일차대부(유)	양정재	2012-11-23
35	A00277	이오스자산관리제이차대부(유)	양정재	2012-11-23
36	A00282	지엠아이파트너스대부(유)	채수훈	2012-12-28
37	A00283	(주)씨앤지에셋코리아대부	채수훈	2012-12-28
38	A00284	(주)케이엠에셋코리아대부	채수훈	2012-12-28
39	A00292	(주)아이엠에셋대부	임흥순	2013-03-08
40	A00293	(주)멘토르씨앤아이대부	조강원	2013-03-13
41	A00294	멘토르대부일차(유)	임양택	2013-03-13
42	A00298	(주)바리움홀딩스대부	김충호	2013-04-11
43	A00299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주)	김소연	2013-04-18
44	A00301	에스앤에스파이낸셜대부(주)	이성구	2013-05-15
45	A00302	피제이자산관리대부(주)	박관수	2013-05-15
46	A00305	씨에프자산관리대부(주)	김현철	2013-06-05
47	A00306	희망1자산대부관리(유)	김재학	2013-06-12
48	A00319	(주)케이투피에셋대부	김재석	2013-07-01
49	A00309	디에이치대부(유)	박성민	2013-07-13
50	A00311	피아이에이엔피엘5차대부(유)	윤성철	2013-07-25
51	A00313	삼정인베스트먼트대부(주)	김대호	2013-07-25

52	A00314	한미에프엔아이대부(주)	김재동	2013-07-25
53	A00315	엘케이파트너스대부(유)	민경선	2013-07-25
54	A00316	(주)와이엔디파트너스대부	석영진	2013-07-25
55	A00317	스카이대부자산관리(유)	이세연	2013-07-29
56	A00318	대부테크(유)	서성훈	2013-07-30
57	A00322	코어자산관리대부(주)	임진우	2013-08-23
58	A00324	이튼에셋대부(유)	이주형	2013-08-23
59	A00329	(유)유니버설대부	최영철	2013-09-25
60	A00335	(주)유진대부금융	김숙정	2013-10-31
61	A00340	(주)온누리에스엔씨대부	신현청	2013-12-10
62	A00341	(주)가온인베스트먼트대부	황선근	2013-12-10
63	A00349	와이앤자산관리대부(주)	김유신	2014-05-29
64	A00351	에이원자산대부관리(유)	이태성	2014-07-25
65	A00352	(주)한빛자산관리대부	양은혁	2014-07-25
66	A00353	해진에셋대부(유)	송기욱	2014-07-25
67	A00354	에이투자산대부관리(유)	이태성	2014-07-28
68	A00355	나이스제7차대부(유)	이귀영	2014-07-28
69	A00357	나이스제2차대부(유)	김종훈	2014-07-31
70	A00358	나이스에프엔아이(주)	정용선	2014-07-31
71	A00359	한미파트너스대부(유)	윤일노	2014-08-01
72	A00360	(주)신현대부실자산관리	심원보	2014-08-04
73	A00365	(주)프라미스대부	심지훈	2014-08-14
74	A00367	에스자산대부(주)	이윤수	2014-08-14
75	A00370	(주)처음앤씨	금상연, 장준영	2014-08-19
76	A00371	(주)인더스코대부	김재섭	2014-08-19
77	A00372	이더블유자산관리대부(유)	변동훈	2014-08-20
78	A00374	(주)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김태균	2014-08-22
79	A00375	엠씨아이대부(주)	이철성	2014-08-25
80	A00377	굿플러스대부(주)	마수미	2014-09-02
81	A00379	(주)미래2에셋대부	한승찬	2014-09-05
82	A00381	(주)강엔터프라이즈코리아	강영훈	2014-09-17
83	A00382	(주)온나라에이엠씨대부	남명우	2014-09-26
84	A00383	대송파이낸스대부(유)	서성훈	2014-09-26
85	A00386	(주)새한자산대부평가관리	지승환	2014-10-27
86	A00388	(주)카이에이엠씨대부	이기홍	2014-10-28
87	A00390	(주)케이씨알자산관리대부	신기춘	2014-11-20
88	A00392	(주)성인에이엠씨대부	이강식	2014-11-21
89	A00396	(주)더케이대부	임명규	2014-12-31
90	A00399	(유)한원자산대부	한지원	2015-01-25
91	A00401	피엘씨대부(주)	김장순	2015-02-13
92	A00402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유)	홍유정	2015-03-05

93	A00403	(주)엘티300자산관리대부	유채영	2015-03-06
94	A00404	펜타캐피탈대부(주)	한용원	2015-03-06
95	A00405	(주)인케어파트너스대부추심	강경훈	2015-03-06
93	A00407	(주)비앤엠에셋대부	정은주	2015-03-19
97	A00409	진우파트너스대부(유)	이형배	2015-04-03
98	A00410	에스엠에셋대부(주)	김규호	2015-04-08
99	A00411	(주)오성알앤시대부	김기운	2015-04-13
100	A00414	씨에스씨홀딩스대부(유)	김소연	2015-05-21
101	A00415	(주)케이에스엔피엘대부	황선근	2015-06-01
102	A00416	리베에이엠씨대부(주)	박종인	2015-06-04
103	A00417	(주)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	민혜영	2015-06-04
104	A00418	씨앤피자산관리대부(유)	이서현	2015-06-05
105	A00419	(주)카이로스대부	이민정	2015-06-05

● **겸업사**

NO	회원번호	회사명	대표	협회 가입일
1	A00067	(주)케이옥션	조정열	2009-05-12
2	A00079	(주)서울옥션	이학준	2009-06-24
3	A00094	포항수질환경대부(유)	우신제	2009-08-14
4	A00096	한국아이비엠(주)	설리위추이	2009-08-26
5	A00103	(주)케이티렌탈	표현명	2009-10-06
6	A00108	(주)남정개발	조명배	2009-10-23
7	A00111	시스코시스템즈캐피탈코리아(유)	고민석	2009-10-30
8	A00145	선만통상(주)	안명숙	2010-06-28
9	A00169	라미드에이치엠(주)	오도환	2010-11-30
10	A00204	동원산업(주)	이명우	2011-05-12
11	A00248	(주)부일기업	강효중	2012-08-24
12	A00266	남양유업(주)	이원구	2012-09-25
13	A00275	동원냉장(주)	김재운	2012-11-07
14	A00291	(주)케이씨피드	정한식, 김희철	2013-03-08
15	A00343	휴렛팩커드파이낸셜서비스대부(유)	심석섭	2014-03-04
16	A00347	(주)케이지이니시스	고규영	2014-04-09
17	A00348	와이더블유(주)	우병일	2014-05-14
18	A00363	이앤에스대부(주)	안용준	2014-08-08
19	A00376	선일파이낸스대부(주)	강진영	2014-08-29
20	A00391	(주)대호	김대규	2014-11-20

5.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 영업 현황

협회에서는 대부업체의 영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NICE평가정보²¹⁾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금융 크레딧뷰로(CB) 컨소시엄²²⁾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영업현황을 월별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NICE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 비금융 기관 총 9,808개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업체는 304개사 정도가 된다. 이 중 컨소시엄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회사는 대략 92개사 정도가 되는데 가입과 탈퇴로 인하여 월별 조사대상 업체 수가 달라 업체 수를 명시하였다.

1)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 현황

2014년 12월말 기준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는 총 92개사로 현황은 <표 87>과 같다.

<표 87>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 현황

(2014년 12월말 기준)

번호	회원사명	번호	회원사명
1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	47	(주)사인캐피탈대부
2	대산대부(주)	48	(주)스타크레디트대부
3	더블유파이낸셜대부(주)	49	(주)씨씨컬렉션대부
4	동양파이낸셜대부(주)	50	(주)씨엔에이대부
5	모두캐피탈대부(주)	51	(주)씨엠코퍼레이션대부
6	미즈사랑대부(주)	52	(주)아스리트대부
7	베스트캐피탈대부(주)	53	(주)아크코리아대부
8	산와대부(주)	54	(주)안전대부
9	서브코리아대부(주)	55	(주)애브로드대부
10	써니캐피탈대부(주)	56	(주)액트캐쉬대부
11	씨앤브이투자대부(주)	57	(주)어프로치대부
12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주)	58	(주)에이스비즈니스앤대부
13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59	(주)에이원대부캐피탈
14	애니원캐피탈대부(주)	60	(주)에이피엘파이낸셜대부
15	엔알캐피탈대부(주)	61	(주)엔씨캐피탈대부
16	에비스대부(주)	62	(주)엘씨대부
17	에스앤케이파머스대부(주)	63	(주)엘하비스트대부
18	엠알앤디대부(주)	64	(주)엠케이금융대부
19	에스자산대부(주)	65	(주)오리온캐피탈대부
20	엘로우캐피탈대부(주)	66	(주)위드캐피탈대부
21	와이앤금융파트너스대부(주)	67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21) 나이스홀딩스 계열의 신용정보회사로 1985년 2월 (주)기업금융센터로 설립한 뒤, 2010년 한국신용정보(주)와 분할 합병하여 지금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은 기업정보사업과 개인신용정보사업(CB사업), 자산관리(채권추심 등)사업 등이다.

22) 2005년 과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대부회사들이 대출고객 정보(대출금액, 상환상황, 개인정보 등)를 공유하여 이용 고객들에 대한 대출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출 심사 시 이용하려고 만든 컨소시엄으로 협약을 체결한 회사들은 고객 정보를 공유한다. 현재 NICE신용평가정보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다.

22	와이케이대부(주)	68	(주)유아이크레디트대부
23	원캐싱대부(주)	69	(주)이지캐피탈대부
24	웰릭스캐피탈대부(주)	70	(주)인더스코대부
25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71	(주)인터머니대부
26	유미캐피탈대부(주)	72	(주)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
27	유원캐피탈대부(주)	73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28	제이파이낸셜라인대부(주)	74	(주)칸도인베스트대부
29	(주)강엔터프라이즈코리아대부	75	(주)케이아이코아즈대부
30	(주)골든캐피탈대부	76	(주)케이앤피파이낸셜대부
31	(주)굿모닝캐피탈대부	77	(주)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
32	(주)굿타이밍대부	78	(주)컬렉트대부
33	(주)나이스대부	79	(주)태강대부
34	(주)넥스젠파이낸스대부	80	(주)태산대부
35	(주)뉴아리원대부	81	(주)투에스대부
36	(주)동그라미대부	82	(주)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37	(주)디케이대부	83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38	(주)리드코프	84	(주)페어컬렉션대부
39	(주)마샬플랜대부	85	(주)하트캐싱대부
40	(주)머니라이프대부	86	카네이션대부(주)
41	(주)미래크레디트대부	87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
42	(주)밀리언캐쉬대부	88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
43	(주)바로크레디트대부	89	티와이머니대부(주)
44	(주)바리움홀딩스대부	90	하이캐피탈(주)
45	(주)베르네틱크레디트대부	91	해피크레디라인대부(주)
46	(주)비컴컬렉션대부	92	헬로우크레디트대부(주)

2) 대출 잔액 현황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의 대출 잔액은 월별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1월 대비 2014년 12월 대출 잔액의 경우 23.4%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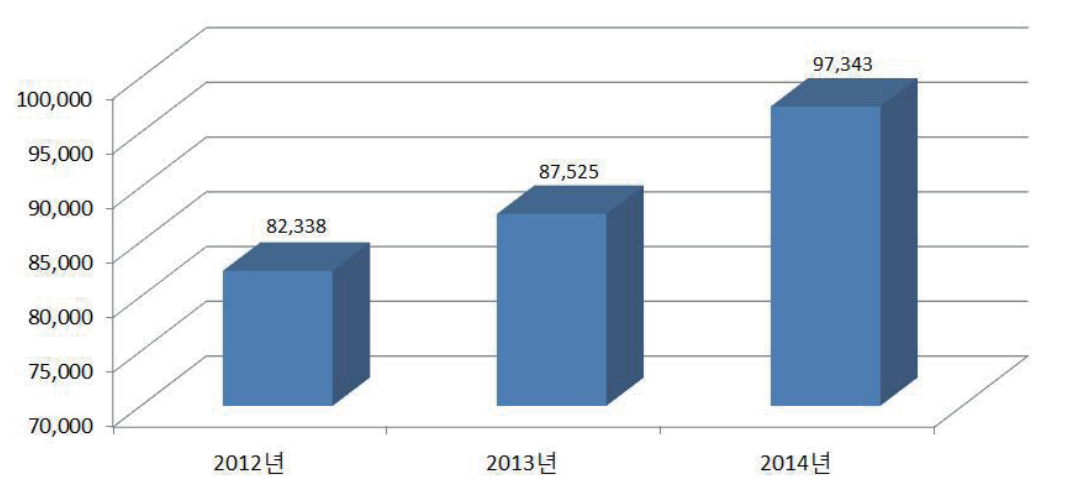
<표 88>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의 대출 잔액 현황

(단위 : 개사, 억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조사대상업 체수	85	85	85	86	86	85	83	83	85	85	85	85
	대출잔액	78,915	79,089	78,532	78,723	79,028	79,096	80,272	80,887	81,688	83,421	84,439	82,338
2013년	조사대상업 체수	90	81	80	79	79	82	82	84	85	84	87	88
	대출잔액	86,612	82,305	83,433	83,673	85,013	79,428	81,063	81,727	83,223	85,329	87,101	87,525

2014년	조사대상업	88	88	88	86	87	87	87	88	88	89	90	92
2014년	대출잔액	88,634	88,893	88,413	90,583	92,345	93,313	92,082	90,753	92,388	93,383	93,939	97,343

〈그림 23〉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의 연도별 대출 잔액 추이



3) 신규 대출 현황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의 신규대출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51%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8% 감소하였다. 이를 대출 잔액과 비교해보면 2013년의 경우 전체 대출 잔액에서 신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8%였는데 비해 2014년에는 73%로 신규 대출의 비중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월별 신규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들어서면서 월별 신규 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몇 차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한 후 2014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6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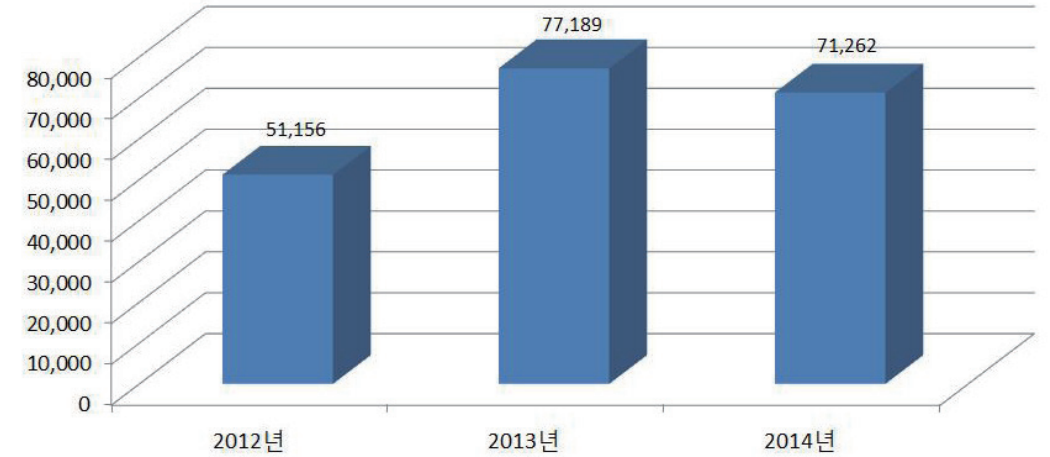
〈표 89〉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의 신규대출 현황

(단위 : 개사, 억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조사대상업	85	85	85	86	86	85	83	83	85	85	85	85
	신규액	3,332	3,506	3,594	3,831	3,997	4,456	5,199	4,619	4,128	4,634	4,911	4,949
2013년	조사대상업	90	81	80	79	79	82	82	84	85	84	87	88
	신규액	6,209	5,882	6,612	6,938	6,194	5,853	6,810	6,066	5,914	7,093	7,057	6,561

2014년	조사대상업	88	88	88	86	87	87	87	88	88	89	90	92
2014년	신규액	6,228	4,342	5,070	6,034	5,640	6,390	7,099	6,016	5,626	6,158	6,027	6,632

〈그림 24〉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의 신규대출 추이



4) 연체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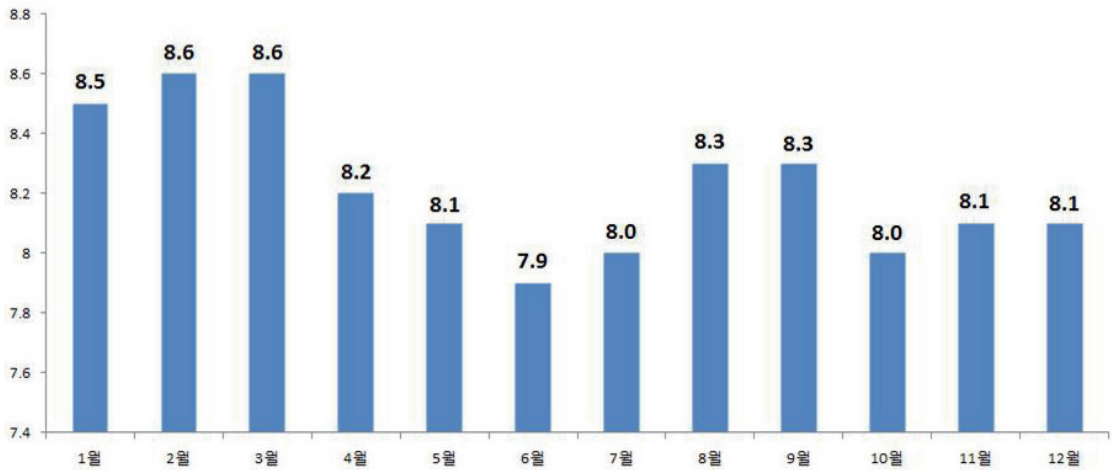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의 연체율은 몇몇 회원사의 전산정보 기재 오류로 한때 19.1%까지 상승 하였으나 2012년 1월 대비 2014년 말에는 1.2% 하락하였다. 2014년의 경우 6월을 제외하고 연체율이 8%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말 연체율이 4.9%로 되어 있어 큰 차이가 있다.

〈표 90〉 소비자금융 CB 참여회사의 연체율 현황

(단위 : 개,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조사대상업	85	85	85	86	86	85	83	83	85	85	85	85
	연체율	9.3	11.8	11.8	12.0	12.2	12.1	12.1	12.2	15.0	19.1	9.1	19.9
2013년	조사대상업	90	81	80	79	79	82	82	84	85	84	87	88
	연체율	9.3	10.2	10.2	10.2	10.3	9.9	9.8	9.6	9.5	9.3	9.0	8.5
2014년	조사대상업	88	88	88	86	87	87	87	88	88	89	90	92
	연체율	8.5	8.6	8.6	8.2	8.1	7.9	8.0	8.3	8.3	8.0	8.1	8.1

〈그림 25〉 NICE 이용 회원사의 연체율 추이(2014년)



5) 신용등급별 이용자 현황

NICE에서는 신용등급별 대부업 이용자 현황을 매월 조사하고 있는데 0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책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저신용자에 해당하는 6~10등급에 해당하는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 2014년 말 기준 1,428,978명으로 전체 대부업 이용자 중 97%가 저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 신용등급별 대부업 이용자 현황(2014년말)

(단위 : 명)

등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1	4	1	0	1	6	8	0	0	0	1	1
2	11	16	13	9	10	175	191	24	27	27	30	50
3	65	44	55	43	44	47	51	58	67	60	62	54
4	2,469	2,537	2,720	2,747	2,857	2,791	2,901	3,077	3,112	3,161	3,226	4,140
5	33,602	34,682	35,391	36,263	36,797	37,277	38,255	38,391	38,888	39,530	39,677	40,825
6	244,324	247,267	234,641	253,188	254,906	258,437	262,980	261,512	264,225	263,964	266,239	270,125
7	354,207	349,242	325,955	348,935	348,469	352,999	358,660	352,147	354,386	350,657	350,079	356,060
8	269,873	270,802	259,618	267,218	275,792	273,274	273,578	274,946	274,316	276,666	278,598	285,292
9	326,900	331,051	317,028	312,120	313,797	317,089	312,062	310,666	312,132	314,975	314,528	335,712
10	190,479	190,340	194,720	192,253	188,849	189,252	179,869	176,065	176,369	178,208	178,619	181,789
0	4,504	5,524	5,367	5,139	4,936	5,501	5,278	5,153	5,494	5,705	5,489	5,705
계	1,426,435	1,431,509	1,375,509	1,417,915	1,426,458	1,436,848	1,433,833	1,422,039	1,429,016	1,432,953	1,436,548	1,479,753

제3부

설문조사 결과

대부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불법사금융 이용 현황 조사

제1장 대부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금융감독원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2002년 3월부터 대부업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자금용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설문조사로 지금까지 추정만 되어 왔던 대부시장의 변화와 특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었으며 제도 개선이나 대책 마련 시 참고가 되고 있다.

협회 창립 이후 협회는 금융감독원의 설문조사에 협조해왔는데 2010년도 하반기부터는 독자적으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회원사에 배포하고 있다.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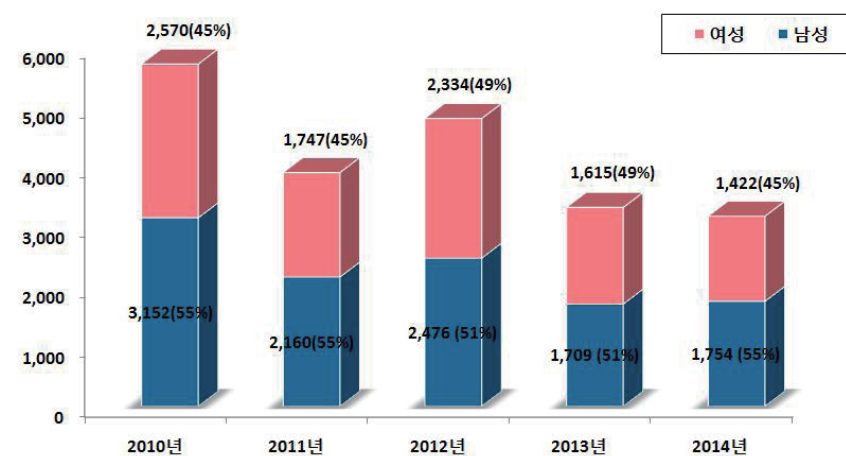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는 크게 설문에 참여한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에 대한 부분과 대부업을 이용하는 실태에 대한 분석으로 나뉜다.

1)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

(1) 성별 현황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10%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2012년과 2013년에는 남녀 성비의 간극이 잠깐 좁혀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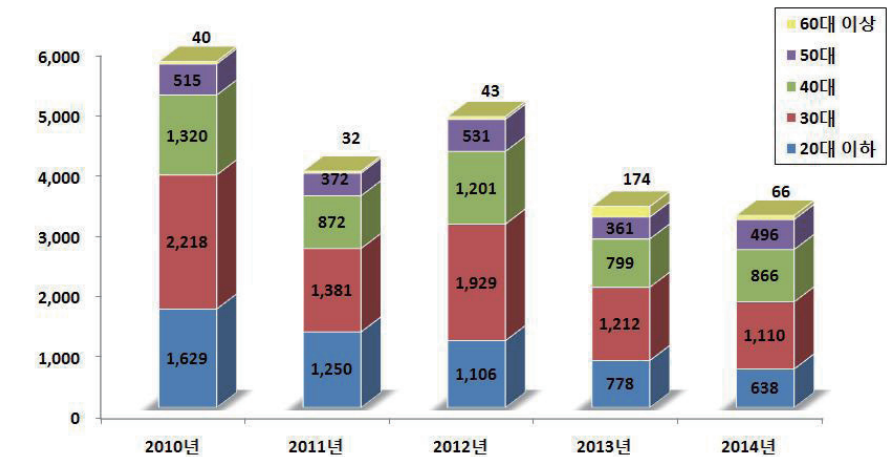
〈그림 26〉 대부업 이용자의 성별 추이



(2) 연령대별 현황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40대와 2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 연령대가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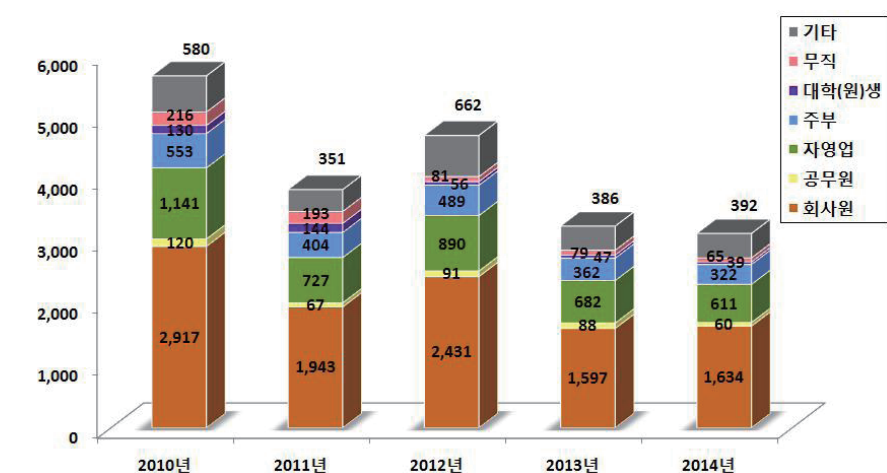
〈그림 27〉 대부업 이용자의 연령대별 추이



(3) 직업별 현황

대부업 이용자를 직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회사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영업자가 뒤를 잇고 있다. 2014년의 경우 회사원이 전체 이용자의 50%를 차지했으며, 자영업자가 20%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긴급생활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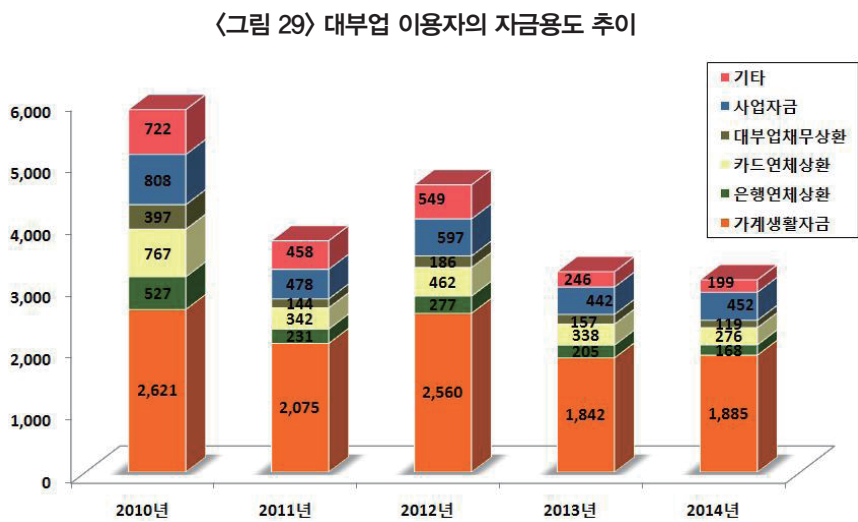
〈그림 28〉 대부업 이용자의 직업별 추이



2) 대부업 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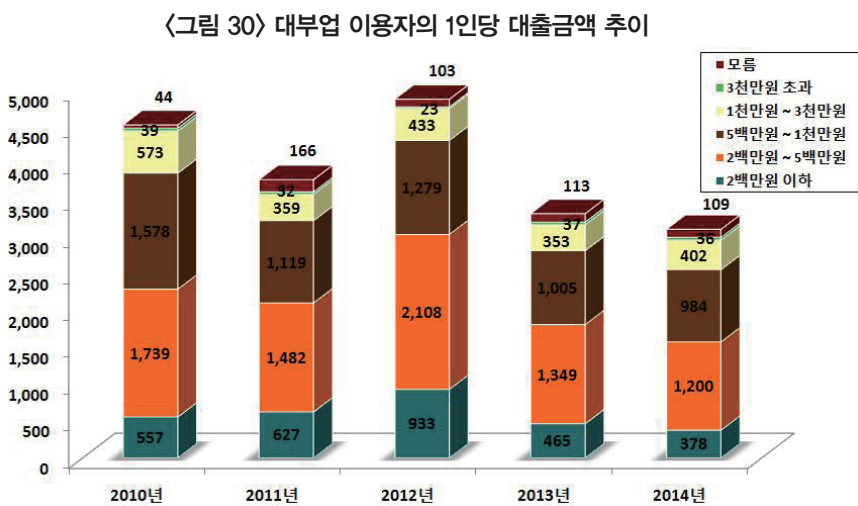
(1) 자금용도

대부업 이용자의 자금 용도를 살펴보면 교육비나 병원비 등과 같은 긴급한 가계생활자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자금용도 중 가계생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2014년의 경우 61%에 달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사업자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존 대출금 상환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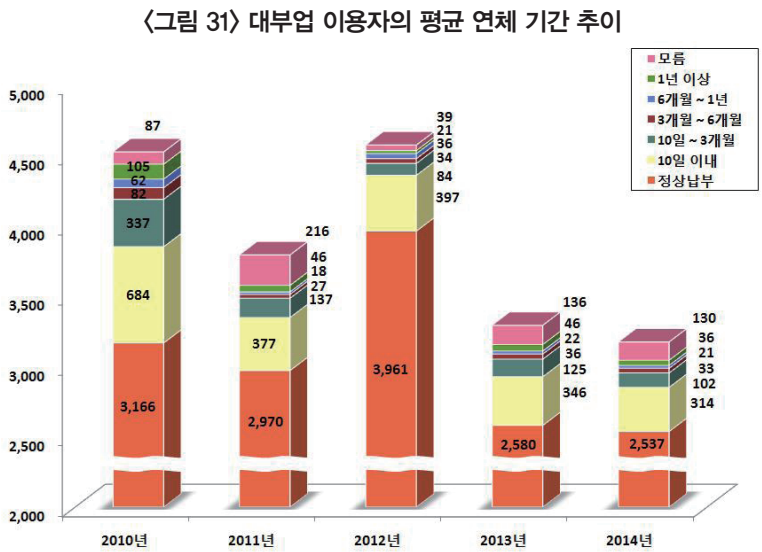
(2) 1인당 대출 금액

대부업 이용자의 1인당 대출 금액은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2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대출이 대략 70%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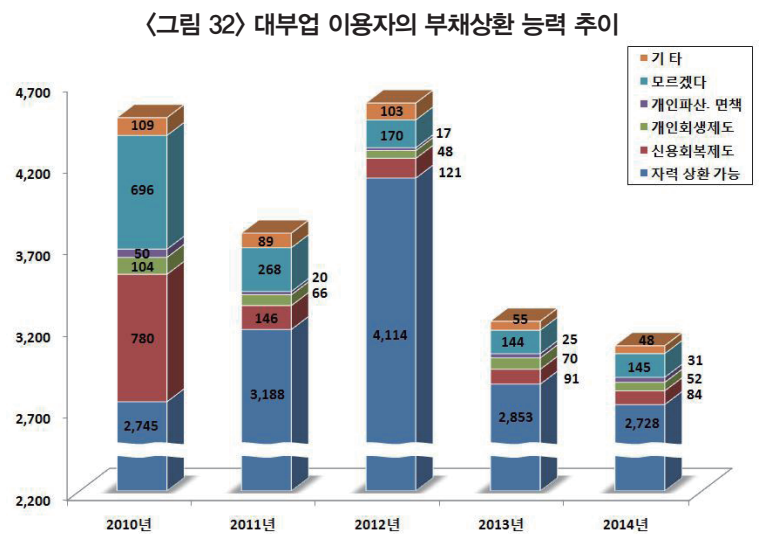
(3) 평균 연체 기간

대부업 이용자 중 정상 여신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연체기간 3개월 이내의 이용자는 2014년 기준 93%로 2010년 이후 90% 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본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 회원사와 정상적인 여신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이 대다수인 부분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4) 부채상환 능력

대부업 이용자 중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8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2010년 17%에 달했지만 감소하여 2012년 이후로는 3%에 머물러 있다. 자력 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 여신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이 설문에 참여한 경우가 많은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장 불법사금융 이용 현황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온 대부업권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민간 서민금융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대부업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했다. 이에 협회에서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2014년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와 공동으로 대부업의 순기능에 관한 연구를 추진했고 연구의 일환으로 소비자금융연구소의 심지홍 소장이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이라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지홍 소장은 이번 연구에서 대부업 시장과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불법사금융 시장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서민금융시장의 왜곡현상을 바로 잡고자 하였으며 불법사금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사 이용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협회에 요청하였다. 이에 협회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협회 회원사 중 상위 9개사의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회원사의 협조 하에 2014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회원사의 영업점을 방문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방법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협회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신청한 2,314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이 방법은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에 오류가 많아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한 건수가 적기 때문에 불법사금융 이용률에는 포함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설문조사 결과

두 가지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원사 이용 고객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에 응한 1,363명 중 59명인 4.3%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응답했으며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30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두 설문조사에서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현황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2〉 불법사금융 이용 현황

구 분	응답 인원	불법사채 이용 인원
대부업체 이용 고객	1,363	59
민원 신청인 중 전화 설문	314	20
민원 신청인 중 메일 설문	2,000	10
총 계	3,677	89

(1) 인지 경로

불법사금융업자를 알게 된 경로를 보면 전단지 및 명함 광고가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지인 소개가 29%, 스팸메일 및 전화가 19%, 생활정보지가 18%의 순이었다. 예상외로 중개업자 소개가 4.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93〉 불법사금융업자 인지 경로

구 분	응답수	응답률
생활정보지	15명	17.8%
스팸메일 및 전화	16명	19.0%
전단지 및 명함 광고	25명	29.8%
지인 소개	24명	28.6%
중개업자 소개	4명	4.8%
계	84명	100.0%

(2) 이용 횟수

불법사금융업자를 이용한 횟수에 대해서도 설문을 한 결과 처음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56.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두 번째라고 응답한 비중이 20.5%, 세 번째가 7.2%, 네 번째가 3.6%, 5회 이상이 12.0%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이용자의 43.4%가 불법사금융업자를 다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표 94〉 불법사금융업자 이용 횟수

구 분	응답수	응답률
처음	47명	56.6%
두 번째	17명	20.5%
세 번째	6명	7.2%
네 번째	3명	3.6%
5회 이상	10명	12.0%
계	83명	99.9%

(3) 이용 시기

불법사금융업자를 이용한 시기를 상한금리 구간별로 조사하고 이에 응답한 수를 개월 수로 나누어 상한금리별 이용자 수를 구했다. 그 결과 상한금리가 인하할수록 이용자 수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상한금리가 39%였을 때 이용자 수가 감소했는데 이는 2012년 4월 이후 범정부 불법사금융척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표 95〉 불법사금융업자 이용 시기 (복수응답)

상한금리	기간	응답수	이용자수/개월수
연 66%	2002년~2007년 10월	11명	0.183
연 49%	2007년 11월~2010년 7월	19명	0.613
연 44%	2010년 8월~2011년 6월	18명	1.636
연 39%	2011년 7월~2014년 4월	30명	0.882
연 34.9%	2014년 5월~현재	12명	4
	계	90명	

(4) 이용 사유

불법사금융업자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 이용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는 51.2%를 차지했으며 빠르고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25.6%를 차지했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안심하고 대출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대부업 연체율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다.

〈표 96〉 불법사금융업자 이용 사유

구 분	응답수	응답률
달리 대출 받을 곳이 없어서	42	51.2%
빠르고 쉽게 빌릴 수 있어서	21	25.6%
지인이 소개해서	12	14.6%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업체라서	1	1.2%
기타	6	7.3%
계	82	99.9%

(5) 자금 용도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의 용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타 생활자금”으로 48%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사업자금”이 20%를 차지했다. 이는 대부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97〉 자금 용도

구 분	응답수	응답률	구 분	응답수	응답률
주거비	6	6.7%	도박	3	3.4%
의료비	2	2.2%	쇼핑	0	0.0%
기타 생활자금	43	48.3%	유흥비	1	1.1%
사업자금	18	20.2%	기타	3	3.4%
학자금 등 교육비	1	1.1%			
타 대출상환	12	13.5%	계	89	99.9%

(6) 대출 금액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은 2백만원~5백만원이 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천만원~3천만원이 20%로 그 뒤를 이었다. 대부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을 대출 받는 사람이 약 74%에 달했다.

〈표 98〉 대출 금액

구 분	응답수	응답률
2백만원 이하	10	12.5%
2백만원 초과 ~ 5백만원	37	46.3%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12	15.0%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16	20.0%
3천만원 초과	3	3.8%
정확한 금액 모름	2	2.5%
계	80	100.1%

(7) 평균 지급 이자

불법사금융업자에 지급한 평균이자는 현행 상한금리인 연 34.9% 이하가 10%에 불과했으며 본인이 지급한 이자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이 1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연 120~240%가 15%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 360%를 초과한다고 응답한 비중도 6.2%나 되었다.

〈표 99〉 평균 지급 이자

구 분	응답수	응답률
월 2.9%이하 (연 34.9%이하)	8	10.0%
월 2.9%초과~3.25% (연 34.9%초과~39%)	11	13.8%

월 3.25%초과~3.66% (연 39%초과~44%)	8	10.0%
월 3.66%초과~4.08% (연 44%초과~49%)	10	12.5%
월 4.08%초과~10% (연 49%초과~120%)	9	11.3%
월10%초과~20% (연 120%초과~240%)	12	15.0%
월 20%초과~30% (연 240%초과~360%)	4	5.0%
월 30%초과 (연 360%초과)	5	6.2%
모름	13	16.2%
계	80	100.0%

(8) 피해 후 취한 행동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피해를 입은 후 취한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복이 두려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중이 32.8%로 예상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신고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67%로 나타났다. 신고한 기관으로는 경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협회, 지자체 및 금융감독원, 변호사 및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나타났다.

〈표 100〉 피해 후 취한 행동

구 분	응답수	응답률
경찰에 신고했다	16	23.9%
지자체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9	13.4%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신고했다	14	20.9%
변호사 및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을 받았다	6	9.0%
보복이 두려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22	32.8%
계	67	100.0%

(9) 향후 이용 의향

불법사금융업자를 앞으로도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 가능하다면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32.5%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이용횟수를 묻는 질문에 43.4%가 2회 이상 불법사금융업자를 이용하고 있어 등록 대부업 등 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이용률은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분	응답수	응답률
경찰에 신고했다	16	23.9%
지자체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9	13.4%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신고했다	14	20.9%
변호사 및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을 받았다	6	9.0%
보복이 두려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22	32.8%
계	67	100.0%

부록

대부업법 연혁

대부업법의 제정 및 개정
대부업법의 관리 · 감독체계

제1장 대부업법의 제정 및 개정

1. 대부업법의 제정

19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철폐되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며 생계 등을 유지하였지만 이는 점차 한계에 봉착하였다. 고금리 사금융 시장은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하며 세력을 확장하였고 사금융업자는 고금리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서슴지 않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어 사회적 약자인 사금융 이용자를 사실상 보호하지 못하였다.

2002년 5월 금융감독원에서 사금융업자와 사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및 사금융 이용자 피해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대부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각계에 전파하였다. 이윽고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2002년 7월 31일)하였다. 동년 10월 26일에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만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으며, 이자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상한이자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행위(폭력, 협박 등) 시에는 형사 처벌 사항을 두어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표 102>와 같다.

대부업법 제정 이후 국회 등은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 개정과 감독 체계 개편 등을 실시했으나 최근 지나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로 인해 대부업의 양성화와 시장의 자금공급기능이 외면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계가 적은 차별규제는 완화해나갈 뿐만 아니라 대부업자에 대한 지나친 영업 규제를 현실화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전한 대부 자금을 공급하고 불법사채업자와 차별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표 102〉 대부업법 주요 내용

항목	개정 조문	개정 내용
대부업 등록	대부업법 제3조	－ 대부업 등록 의무화(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
계약서 관련	대부업법 제6조	－ 계약서 교부 의무화(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금액 · 이자율 · 변제기간 · 변제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 교부)

이자율 제한	대부업법 제8조	－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금전대부 시 3천만원 이내(1회 대부원금 기준)의 경우 연 66% 초과 금지
채권추심	대부업법 제10조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추심 시 폭행 · 협박 행위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부업법 제18조	－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시도지사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검사 및 관리 · 감독	대부업법 제12조, 13조	－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 가능 － 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위반 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가능

2. 2005년 개정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와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부업의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5월 31일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는 기존 등록을 갱신토록 규정했으며, 8월 31일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계약관계서류와 이자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을 명시화 하였다. 개정된 법령과 시행령은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된 주요 내용은 <표 103>과 같다.

〈표 103〉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조문	개정 내용
대부업 등록 대부업 등록	대부업법 및 시행령 제2조	－ 등록면제 규정 삭제(대부를 업으로 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대상)
	대부업법 제3조	－ 등록 유효기간제도 도입(3년마다 갱신)
계약서 관련 계약서 관련	시행령 제4조	－ 계약관계서류 명시
	대부업법 제6조	－ 대부계약서 항목에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추가 － 계약관계서류 보관 의무 추가(계약체결일부터 2년간 보관)
명의 대여	대부업법 제5조의 2	－ 명의대여 등의 금지 추가
이자율 제한	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이자율 규제 적용대상 상한(1회 대부 원금액 기준 3천만원) 삭제 － 간주이자제외비용 명시
대부조건 게시	시행령 제6조	－ 대부조건 게시 항목 추가(영업소의 주소, 전화번호, 대부업 등록 지방자치단체 명칭, 대부중개업자인 경우 중개업자란 사실)

광고	대부업법 제9조 제9조의 2	－ 대부조건 광고 시 필수기재사항 추가 －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금지
채권추심	대부업법 제10조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관련 전문 개정

3. 2007년 개정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4일 시행령을 개정하고 2007년 12월 21일에는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대부업법 목적 조항 중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으로 변경하고, 이자율 상한을 하향조정했다. 개정된 법령과 시행령은 각각 2008년 3월 22일,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된 주요 내용은 <표 104>와 같다.

<표 104>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조문	개정 내용
이자율 제한	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이자율 연 49%로 인하
채권추심	대부업법 제10조	－ 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에 체포, 감금을 추가 － 채무변제를 위한 금전 차입 강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대납 강요,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금지
대부업 검사권	대부업법 제12조	－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자에 대한 직권검사조항 신설
	대부업법 제16조	－ 시·도지사 수시로 대부업자의 영업실태 조사 의무, 결과는 매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제출

4. 2009년 개정

대부중개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업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21일 대부업법을 개정, 2009년 4월 21일과 8월 5일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부중개업 등록 제도를 신설하고, 대부업자 등의 상호와 광고에 관한 규제 등

을 신설하였다. 대부중개업 등록제 신설로 대부업법의 명칭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9년 2월 6일에 추심관련 조문인 제 10조가 삭제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표 105>와 같다.

<표 105>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조문	개정 내용
대부업 등 등록	대부업법 제1조, 제2조	－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화
	대부업법 제3조의 2 시행령 제2조의4	－ 등록갱신 관련 사항 신설
	대부업법 제3조의 3	－ 폐업 및 등록취소 시 등록증 반납 의무
	대부업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변경등록 예외조항 신설(경미한 사항)
교육	대부업법 제3조의 4 시행령 제2조의5	－ 대부업 등 등록 및 갱신 시 교육 의무화
상호 및 광고	대부업법 제5조의2, 제9조, 제9조의3 시행령 제3조의2, 제6조의2	－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 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의무 사용 － 대부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규제 신설
계약 관련	대부업법 제6조의2, 제7조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3	－ 중요사항 자필기재 의무화 － 5백만원 이상 대부계약 체결 시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관련 증명서 징구
채권추심	대부업법 제9조의 4 제10조	－ 미등록대부업로부터의 채권 양수·추심 금지 － 채권추심행위 금지 관련 조문 삭제
협회	대부업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근거 마련
이자율	대부업법 제11조	－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 이자율 적용
실태조사	시행령 제7조의3	－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 의무
벌칙	시행령 제7조의4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신설

5. 2010년 개정

이자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면서 2010년 1월 25일에는 대부업법이, 7월 21일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고 이자율 상한이 연 44%로 인하되었고 연체이자율이 대부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고려되어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등에 연체이자율을 명시하도록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표 106>과 같다.

〈표 106〉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조문	개정 내용
대부업 등 등록	대부업법 제3조, 제4조 시행령 제2조의6	－ 등록 시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 － 고정사업장 미보유 시 등록 제한
	시행령 제3조	－ 변경등록 예외조항 추가(출자총액이 5/100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
계약 관련	대부업법 제6조, 제9조 제7조의2	－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대부계약서에 기재 의무화 － 제3자 명의의 담보 제공 시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 확인 의무 － 대부계약서 및 영업소 게시 사항에 연체이자율 추가
이자율	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이자율 연 44%로 인하
고용 제한	대부업법 제9조의5	－ 범죄단체 관련자 등 고용제한 사유 신설

6. 2011년 개정

2011년에는 6월 27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최고 이자율이 연 39%로 인하되었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광고 행위와 객관적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행위 등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11월 30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에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이 명시되었으며, 과잉 대부 금지 관련하여 변제능력 조사 대상이 기존의 5백만원 이상에서 3백만원으로 조정되었다. 11월 30일 개정된 시행령의 경우 일부는 공포된 즉시 시행되었으며 일부는 공포되고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표 107>과 같다.

〈표 107〉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조문	개정 내용
광고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3, 제11조의2	－ 광고 시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 광고표시 기준 구체화 － 광고용 전화번호 이외 전화번호로 광고 금지 － 등록번호 확인 가능한 시·도의 전화번호 표시 －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 가능한 표현 사용 금지 － 협회에 대부광고 자율심의 기능 부여

계약 관련	시행령 제4조, 제4조의3	－ 변제능력 조사대상을 5백만원 초과대출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에 “채무 및 보증채무 관련 증명서 발급 비용과 기한” 추가
교육	시행령 제2조의5	－ 교육사항에 “대부업자의 광고에 관한 방법” 추가
검사	시행령 제7조의2	－ 대부거래자수 1천명 이상, 대부잔액이 50억원이상인 법인을 금감원 직권검사 범위에 추가
이자율	시행령 제5조	－ 이자율 연 39%로 인하

7. 2012년 개정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고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도한 수준의 대부중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1일 대부업법을 개정하였고 개정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표 108>과 같다.

〈표 108〉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조문	개정 내용
대부업 등 등록	대부업법 제4조	－ 업무총괄사용인 등록 제한 규정 적용 － 채권추심법 위반 벌금형 시 2년간 제한 － 자진 폐업 시 1년간 제한
교육	대부업법 제3조의4	－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 변경 시 교육 이수 의무
업무총괄사용인	대부업법 제5조의3	－ 전 영업소 업무총괄사용인 설치 의무
대부조건 게시 및 광고	대부업법 제9조, 제9조의3 시행령 제6조의3	－ 게시사항에 대부업 등록증 원본 추가 － 광고 시 서민금융상품 오인 표현 금지
중개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1조의2 시행령 제6조의4	－ 미등록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 수수료 상한 마련

8. 2014년 개정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낮추고, 대통령령은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34.9%로 낮추도록 하며,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의 효력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이자율 상한의 대부계약 명시, 이자율 제한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 대부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4년 1월 1일 대부업법이 개정되었으며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대부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에게도 대부계약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이나 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시·도지사 등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법이 2014년 3월 18일 개정되었으며 2014년 9월 19일 시행되었다.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주요 내용은 <표 109>와 같다.

<표 109>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조문	개정 내용
대부계약 체결	대부업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2, 제6조 제6항	- 계약서상 최고이자율 명시 - 대부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에게도 서류 등의 열람이나 증명서의 발급 허용
배상책임	대부업법 제11조의3	-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 책임
실태조사	대부업법 제16조 제3항	- 대부업자 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행정처분 사실 공개	대부업법 제16조의2	-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처분 사실을 공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부업법 제9조의6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이자율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항, 부칙 제2조, 제6조 제3항 및 제5항	- 이자율 연 34.9%로 인하 - 일몰기한 2015.12.31.까지 연장

1. 대부업 관리 · 감독 체계 현황²³⁾

현재 대부업은 2002년에 제정된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 및 관리 운영되고 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대부업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경찰과 검찰이 불법 채권추심이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 단속 조사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표 110> 대부업 관리 · 감독 체계



23)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광역자치단체 및 금융감독원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 및 관련기관 보도 자료를 토대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 참조

2. 향후 대부업 관리 · 감독 체계

지금까지의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대부업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었다. 정책기관과 집행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왔으며 특히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만으로는 대부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2015년 중 내놓을 예정이다.